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03-01

201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10. 10

연구수행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원	백승덕(전쟁없는세상)
	박현민(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양여옥(전쟁없는세상)
	이용석(전쟁없는세상)

요 약

1. 연구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대체복무제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인권기구의 인권기준과 해외사례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분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대체복무제 도입관련 법안들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대체복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이 제도와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군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입영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수행할 당사자로서 대체복무제의 성격이 자신들의 양심과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서 인권보장과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진행된 논의들을 분석한다. 냉혹한 국제정치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제인권기준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기준을 대체복무제 도입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대체복무제 운영사례도 현황과 함께 국가별 제도적 특징이나 제도운영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역사적으로 검토했다.

2장에서는 또한 사법부의 최근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했다. 하급법원의 무죄판결은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영향을 끼친 판례들이라는 점에서 검토했다.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제시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취지는 제도 입법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참조할 기준으로서 검토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안들은 복무시기나 복무영역 등의 논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병역거부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는 대체

복무기간이나 복무형태 등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합하는 것을 중점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앞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하여 병역판정대상자 527명에게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병역거부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2009년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여호와증인 교단과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총 1856명의 병역거부자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당사자 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여론을 보충적으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에 관련이 깊은 전문가 집단으로는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계(헌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공법학회, 형사법학회) 그리고 사회복지학계(한국사회복지연구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군사회복지학회)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개별 학회에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 형태로 회원들의 설문 참여를 요청하여 전문가 370명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본 조사가 제시하려는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2장에서 국제인권기준이나 해외사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인권과 대안적인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세 가지 기준으로 공공성, 독립성, 형평성을 제시했다. 공공성은 사회적 필요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독립성은 군으로부터 심사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군복무자에 비해서 징벌적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형평성 논의가 군복무에 비해서 혹독한 복무조건을 요구하는 ‘고통의 경쟁’이었다면, 형평성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은 군복무와 대체복무 모두가 사회적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을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복무기간, 복무영역, 지원 및 심사 등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5장은 앞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대체복무 법안을 제시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제안했다. 법안은 「병역법 개정안」, 「예비군법 개정안」과 별도로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대체복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 연구보고서의 내용

가. 국내외 인권기준

유엔의 인권기구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체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유엔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인정은 선

언과 규약의 명문에서 형식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부정의에 맞서 침략전쟁을 방지하고 정당한 주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회원국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여해야 할 권리로 서 요구되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대체복무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그들이 행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징벌적인 성격을 지닌 권리침해로서 인정된다.

또한 국내 인권관련 기구 및 시민사회 의견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과 2018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이 국제인권기준의 대체복무제 도입취지와 비슷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복무기간은 군복무의 1.5배로 하고 합숙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가 안정될 시 복무기간과 복무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안은 만일 대체복무 지원자가 너무 많을 시에는 제도 도입 초기 신청인원 제한(연 1천 명 수준)을 통해 현역입영 자원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국내외 인권기구와 시민사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가 인권보장과 대안적인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서 ① 새로운 안보의 실현에 기여 ②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거부 당사자의 사회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 ③ 소수자를 포용하고 관용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다양성을 높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대체복무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심사의 곤란함은 복무기간이나 복무강도 등을 조절하여 해결하되 이 또한 징벌적인 성격을 지니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방의 의무를 고려하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확고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본 연구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병역거부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제도 도입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진행과정에서 병무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앞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하여 병역판정 대상자 527명에게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질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과 대체복무제의 심사방법, 복무기간, 복무형태, 복무영역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병역거부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2009년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여호와의증인 교단과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총 1856명의 병역거부자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그간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얻지 못했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대

상은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처벌을 받았던 3인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인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의 내용은 주로 병역거부 이유, 병역거부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수감 당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경험, 대체복무제 도입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주로 다루었다.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당사자 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여론을 보충적으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에 관련이 깊은 전문가 집단으로는 법조계(서울지방법변호사회), 법학계(헌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공법학회, 형사법학회) 그리고 사회복지학계(한국사회복지연구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군사회복지학회)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개별 학회의 협조를 얻어서 전문가 370명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에서는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으며(63.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58.2%). 또한 대체복무제가 군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56%),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대체복무를 설계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33.1%).

병역판정검사대상자집단은 대체복무 신청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의 비율이 46.3%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록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의사가 높았다. 입영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신청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복무분야를 선택하는 응답(세 가지 선택)에서는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구호 대응 지원’(54.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 업무 보조’(51%),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활동지원’(40.0%)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았다.

복무기간에서는 합숙의 경우 동일기간(38.8%), 출퇴근할 경우 2배(28.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긴 기간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무기간이 더 길어야 하는 이유로는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43.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 법률가 및 학계연구자 등 전문가

전문가들은 병역거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으며(54%), 대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98.1%) 매우 잘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64.9%나 되었다. 전문가집단은 종교에 따라 인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개신교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대체복무제가 군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63.5%), 전문가집단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대체복무를 설계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9.2%).

대체복무분야로는 치매 노인, 중증장애인의 사회복지분야 보조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76.2%). 그 다음으로는 안전사고 자연재해 지원(57.8%)과 국민건강 보호 증진 업무 지원(41.4%)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복무기간과 관련해서 합숙을 할 경우에도 육군병사의 2배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47.3%). 이와 같은 응답은 병역판정대상자집단이 합숙의 경우 육군 복무기간과 동일기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결과와 관련해서, 대체복무제도가 육군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를 선택한 응답이 전문가 설문조사결과에서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33.6%/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6.3%). 전문가들의 경우 입영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예상하여 복무기간을 길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실제 입영대상자들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의 경우 그와 같은 상대적 박탈감에 비해서 기본권 제약(43.5%), 업무의 강도(28.2%) 등 복무기간만이 아니라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욱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병역거부 당사자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던 당사자들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동기(중복선택 가능)로 종교적 사유(88.6%)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동기는 개인적 신념(61%)이었으며, 정치적 이념(1.2%)을 선택한 응답도 소수지만 존재했다.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는 대체복무제가 있었다면 신청했을 것이라고 답했다(96.1%).

병역거부 당사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74.9%)을 가장 많이 염려했다.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응답도 소수지만 그 뒤를 이었다(5.8%). 이와 같은 결과는 대체복무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병역거부 당사자들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참고’(36.2%),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21.5%),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18.3%)의 순서로 중요성에 대해 응답했다.

심사기관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 대부분이 ‘별도의 심사기구’(46.8%)와 ‘복무분야 관련 행정부처’(34.5%)를 선택했다. 반면 국방부 또는 병무청은 가장 낮은 선호도(1.8%)를 보였는데 이는 병역거부 당사자들이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심사를 맡는 것을 우려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체복무분야를 선택하는 응답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업무 지원’(60.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활동지원’(57%)이 많은 응답을 얻었다. 병역거부 당사자 설문조사결과에서 특징적인 점은 다른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52.9%)에 대한 높은 응답률이다. 이는 다른 업무 분야와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 중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익숙한 업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병역거부 당사자의 적절한 복무기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합숙의 경우 육군복무 기간과 동일 기간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결과와 대조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합숙의 경우 육군 병사의 1.5배 40.2%). 이와 같은 결과와 관련해서, 병역거부 당사자들이 육군 병사보다 더 긴 기간을 선택한 이유로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48.3%).

3. 연구보고서 결론

본 연구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대체복무제 검토 기준을 정리하고 복무 기간, 복무영역, 심사 및 관리·감독 등의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대체복무제 검토 기준으로는 국 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국내외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성, 독립성, 형평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대체복무기간

대체복무기간은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에 예외적으로 현역복무보다 기간을 길게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은 복무기간을 군복무에 비해서 길게 설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군복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 연구가 설문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의 1.5배 이내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의 1.5배 이내로 잡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키프로스의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의 약 1.3배로 줄였지만 유엔과 유럽연합에서 키프로스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오랜 처벌과 차별의 역사를 고려하여 이 역시 징벌적이라고 판단한 점을 참조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동등성을 원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복무분야

복무분야는 사회서비스지원 분야, 교정시설 업무보조, 비전투군복무 등 세 가지 분야를 검토했을 때 가장 적합한 분야는 사회서비스지원 분야라고 판단한다. 사회서비스 분야가 공공성의 면에서 가장 적합하여 해외에서도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분야라는 점, 국가적·사회적 필요가 반영된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는 점, 사회서비스 업

무에 대한 고정된 성역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 교정시설 등에서 국가행정을 보조하는 업무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 당시에 수행하면서 겪었던 교정업무 보조의 문제점을 답습하거나 공익근무제도가 사회복무제도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전투군복무는 징벌적인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고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합하다.

사회서비스지원 분야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무제도의 평가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서비스분야의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고 제도도입 초기에 병역거부자도 포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군대와 비슷한 합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좀 더 폭넓게 복무분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 분야는 여러 분야의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동일한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대체복무분야를 한 가지로 시작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 분야를 개발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대체복무 신청 및 심사

대체복무 심사 및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대체복무 지원이 군입대 전부터 전역 후 예비군훈련 단계 중 언제라도 가능해야 한다는 점, 독립된 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성과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심사에서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의 양심이 언제 형성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어긋난다. 현역복무를 모두 마친 후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차별적인 처사가 된다는 점에서 신청 시기를 한정하는 것은 여러 모로 모순적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양심을 심사하는 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되 군관계자가 과잉으로 대표성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사위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과반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심사는 서류와 대면 심사를 병행하되 제도가 안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심사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대체복무 인권보호관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지키려는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대체복무 인권보호관제도

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병역거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인터뷰(FGI) 결과를 분석해보면 수감 중 교정시설에서 수행한 사실상의 대체복무에서 상당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만일 지금처럼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될 위험이 크다. 대체복무자가 기관의 관리 담당자와 위계 관계에 놓임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도적 장치로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체복무 인권보호관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준해서 도입한다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검토결과와 함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추가 행정조치를 제안했다. 본 연구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신청에 대한 정보고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자의 대체복무 전환신청 방법, 예비군훈련의 대체복무 등의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하였다. 보고서의 5장에 실린 대체복무 법안은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과 함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대체복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규정들을 명시하였다.

목 차

요 약	i
표목차	xi
그림목차	xii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

제1절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5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16
제3절 무죄 판결문 및 헌재 결정문 검토	27
제4절 국회 발의 「병역법」 개정안 검토	31

제3장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조사개요	37
제2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분석 결과	39
제3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50
제4절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분석 결과 요약	57
제5절 소결	64

제4장 대체복무 도입 방안 연구

제1절 대체복무제 검토 기준	66
제2절 각 쟁점별 검토 및 입법 방향 제시	68
제3절 필요한 추가 행정조치	103

제5장 대체복무법 시안

제1절 대체복무법 시안에 대한 해설	111
-------------------------------	-----

제2절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 및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 . .	115
---	-----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132
------------------------	-----

제2절 전망과 과제	134
----------------------	-----

부록

참고문헌	137
----------------	-----

설문지	140
---------------	-----

표목차

표2-1 해외 대체복무제 운영현황	17
표2-2 연도별 병역거부 무죄판결	28
표2-3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 및 대체복무법안 목록	31
표2-4 17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비교	33
표2-5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비교	36
표3-1 조사도구 구성	38
표3-2 병역거부자 FGI 질문 목록	63
표4-1 20대 국회 발의 대체복무제 법안의 복무기간 규정	69
표4-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과 합숙복무 시 적절한 복무기간 간 상관관계	74
표4-3 대체복무 분야와 업무 선호도 집단 간 비교	81
표4-4 분야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체복무 분야 선호도	81
표4-5 20대 국회 발의된 법안 중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정리	92
표4-6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각 그룹별 선호도	94
표4-7 사유별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99
표4-8 군인권보호관 관련 발의 법안 비교	100
표4-9 정보고지 의무 명시 법안	105
표4-10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 전환신청 명시 법안	110
표4-11 예비군훈련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	108
표4-12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109

그림목차

그림4-1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병역판정검사 대상자)	70
그림4-2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병역판정검사 대상자)	71
그림4-3	대체복무제도가 육군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택한 이유	71
그림4-4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전문가)	72
그림4-5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전문가)	72
그림4-6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병역거부 당사자)	73
그림4-7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전문가)	73
그림4-8	병역거부 신청 시기 각 그룹별 선호도	90
그림4-9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각 그룹별 선호도	95
그림4-10	심사 방식에 대한 각 그룹별 선호도	96
그림4-1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인지도(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04
그림4-1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인지도(전문가 집단)	10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종교적 신앙이나 윤리적·정치적 신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징병제 시행과 동시에 나타났다. 1950년대 중반 여호와와 증인 신자들이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 공식적인 기록에 나타난 첫 번째 양심적 병역거부¹였다면 한국전쟁 중에 전쟁을 피해서 산골 등지로 숨거나 망명을 떠난 사람들의 선택은 비공식적인 양심적 병역거부로 간주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매년 400~700명의 청년들이 병역을 거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왔다.

국내외 인권기구는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면서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이와 같은 권고는 2017년 6월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17차 회의에 제출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에 다시 수록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설립 초기부터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에 머물던 사회적 논의내용을 한걸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입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안 5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총 8건의 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논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만 초점이 과도하게 맞춰져왔다. 특히, 2008년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백지화 발표와 2011년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예외 없는 처벌대상이 되면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성격이

1 “교리따라 입대 않겠다고 「여호와와 증인」 신도 병역기피로 공판에”, 경향신문, 1957.07.14.

한편,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여호와 증인 신도가 국군에 징집되었지만 전투 참가를 거부하여 군사법정에서 3년 형을 받았다.

나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속적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해온 집단들이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결정 이후에는 징벌적인 성격을 지니는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포장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70년 넘게 처벌하면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이들의 여론전은 파급력이 클 수 있다. 대체복무제 논의과정에서 군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은 병역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체복무 처우를 가혹하게 만든다.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대체복무제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인권기구의 인권기준과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분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대체복무제 도입관련 법안들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마련에 참조할 것이다.

대체복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 되려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이 제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군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입영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점은 사회적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수행할 당사자로서 대체복무제의 성격이 자신들의 양심과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 본 조사는 이러한 목적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서 인권보장과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본 조사의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진행된 논의들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다룬 논의들은 국제인권기준으로서 유엔 인권기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참조한다. 하지만 유엔 인권기구와 병역거부에 관한 입장과 권고안을 다루는 자료들은 병역거부권

을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문서들을 시계열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을 제한하고 대체복무제를 최대한 한정적으로 도입하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남북대치 등 한국 안보환경의 특수성을 내세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이나 대체복무제는 군사적 대치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의 자유만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이상주의로 치부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기준이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국제법의 한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큰 힘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사례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국가들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기간 중에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확대적용해 온 국가들이 적지 않다. 또한 유엔인권기구는 이상주의로만 결정을 내리기에는 세계 각지의 군사적 대치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매우 현실적인 국제정치의 장이다. 따라서 냉혹한 국제정치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제인권기준으로 자리를 잡은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면 대체복무제의 보다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대체복무제 도입취지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적에서 해외의 대체복무제 운영사례도 현황과 함께 주요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 특징이나 제도운영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2장에서는 또한 사법부의 최근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한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급법원의 무죄판결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우나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영향을 끼친 판례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서 선행 법적검토로서 참조할 수 있다.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취지는 입법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참조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검토결과들은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 기준점들을 제시하여 각각의 법안이 지닌 특성들이 더욱 분명하도록 돕는다.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안들 역시 이전의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하여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간 사회적 쟁점이 된 사안들의 변화를 파악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어떠한 논의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병역거부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분석했다. 여론조사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활용된 사회조사방법이다. 그러나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의 조사는 목적과 방법론의 면에서 적절성을 의심받고 있다.

본 조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는 대체복무기간이나 복무형태 등 대체복무제 운

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합하는 것을 중점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앞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하여 병역판정대상자 527명에게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병역거부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2009년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여호와와의증인 교단과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총 1856명의 병역거부자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당사자 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여론을 보충적으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에 관련이 깊은 전문가 집단으로는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계(헌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공법학회, 형사법학회) 그리고 사회복지학계(한국사회복지연구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군사회복지학회)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개별 학회에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 형태로 회원들의 설문 참여를 요청하여 전문가 370명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본 조사가 제시하려는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2장에서 국제인권기준이나 해외사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인권과 대안적인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세 가지 기준으로 공공성, 독립성, 형평성을 제시했다. 공공성은 사회적 필요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독립성은 군으로부터 심사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립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복무자에 비해 차별이나 징벌적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다. 기존의 형평성 논의가 군복무에 비해서 혹독한 복무조건을 요구하는 ‘고통의 경쟁’이었다면, 형평성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은 군복무와 대체복무 모두가 사회적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을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복무기간, 복무영역, 지원 및 심사 등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5장은 앞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대체복무 법안을 제시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제안했다. 법안은 「병역법 개정안」과 별도로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대체복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

제1절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외 인권기구의 인권기준 검토

1) 유엔 인권기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장과 권고안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인정의 강화

유엔의 인권보호기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합법적인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1966년 채택된 자유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 명시되었다. 이들 규정은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보장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유엔 인권위원회(Commision on Human Rights)와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980년대 후반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1989년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비롯된 권리임을 인정하면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에 상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제공할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대체복무가 원칙적으로 공익에 부합하고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 형식으로서 비전투적 이거나 민간의 성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헌장(Magna Carta)’이라고 불리는 77호 결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종교적·도덕적·윤리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나오는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규정된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합법적인 권리행사임을 확인했다(장복희 2006).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80년대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실행을 위해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과 개인청원사건(Individual Communication)의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1980년대 말까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1985년 자유

권규약위원회는 개인청원사건이었던 *L. T. K v. Finland*에 대해서도 자유권규약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유권규약 제8조 3항 (c) (iii)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면서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를 강제노동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80년대까지 이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예외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일반논평 22을 발표한 이후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일반논평 22는 “자유권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백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살상을 동반하는 의무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가 제18조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General Comment 22, para 11). 1999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개인청원사건이었던 *Westerman v. Netherlands*를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자유권규약 18조로부터 도출하는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심사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했던 전력이 있던 지원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다뤘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네덜란드의 기준이 자유권규약 18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앞서 *L. T. K. v. Finland*에서와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적인 권리로서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은 유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오도록 했다. 2006년 ‘대한민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최종 견해’를 통해서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이후 한국에 대한 유엔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이 청원한 개인청원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보상을 포함해서 유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했다(CCPR/C/88/D1642-1741/2007; CCPR/C/104/D/1853-1854/2008). 그 이후 이어진 개인청원사건(CCPR/C/101/D/1642-1741/2007; CCPR/C/104/D/1853-1854/2008)을 거치면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보다 확고해졌다. 이들 사건의 다수견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하는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18조 제3항의 비례원칙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²

2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과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3항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

2006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인권의제를 다루는 중심기관이 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심의에서 총회에 제출한 ‘대한민국에 대한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재확인했다. 2012년 2차 인권상황정례검토와 2017년 3차 인권상황정례검토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전과기록을 말소하며,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 후에도 많은 차별을 겪는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크로아티아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 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셀 수 없는 불이익에 직면하여 비유적으로 '종신형(Life Sentence)'을 사는 상황과도 같으며 즉시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대한변호사협회 2017). 유엔은 이처럼 한국 정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의 기초 : 반식민주의와 반군사주의³

유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서 인정하려고한 시도는 유엔창설 초기부터 있었다. 자유권규약의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8조와 18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약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자유권규약 8조를 통해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면서 징병제를 이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미국 대표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와 레바논 대표 찰스 말리크(Charles Malik)는 강제노동 금지에서 징병제를 예외로 두는 대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은 부결되었다. 필리핀 대표 멘데즈(Mendez)가 18조(당시 16조)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1항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해 정의한다면, 제3항은 일종의 비례원칙으로서 이러한 자유의 제한조건을 다루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1항의 자유에 내재하는 절대적 권리로서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다는 2008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절대적 권리로 본다면 대체복무제도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유엔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정에서 반식민주의와 반군사주의 운동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Jeremy Kessler(2013)를 주로 참조했다. 2006년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의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하여 자유권규약 18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 자유권규약위원 루스 웨지우드(ruth wedgwood)는 해당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웨지우드의 소수의견은 자유권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레미 케슬러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게 된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아있는 문서이론(the living instrument doctrine)’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유엔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과정은 국제인권기준을 국제규약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한정해서 이해할 때 간과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들, 예를 들면 다른 유엔인권기관들의 결정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특징적인 판례들, 국제적이거나 국가적 수준에서 변화해온 사회적/정치적 환경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 것은 베트남전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과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이어진 뒤였다. 1960년대 들어서 미국의 베트남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반전운동은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그리스도의 평화국제위원회(Pax Christi),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등 반전운동 단체들은 군사적 갈등들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쳤다. 한편, 반전운동과 반식민운동 사이의 대립도 나타났다. 공산주의 진영과 아프리카 지역의 활동가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복무 거부’와 ‘조국방어 등 정당한 이유에 따른 전쟁참가’를 구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유엔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는 논의는 소비에트 진영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해서 진행되지 못했다.

유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었다. 남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 대한 포르투갈의 흑백분리 정책에 대항하는 반아르트헤이트 운동은 무장투쟁과 함께 포르투갈 군대로부터 탈영하거나 입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1973년 유엔은 「아파르트헤이트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Apartheid)」을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아파르트헤이트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가담한 자에게 개인적으로 국제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개인들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들에서 징집 정책들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도록 강제하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1978년 유엔 총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군대나 경찰력에 복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아파르트헤이트 시행을 보조하는 것을 양심에 따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보호시설이나 통행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아파르트헤이트와 관련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세계인권선언 18조에 근거하여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총회 결의안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은 아파르트헤이트에 한정되는 개념이었지만 이후에 더 일반적인 권리선언들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속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책 현황을 조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82년 오스비온 에이데(Asbjørn Eide)와 차마 무반가-치포요(Chama Mubanga-Chipoya)가 제출한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근거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1978년 유엔총회에서 인정된 한정된 권리를 아파르트헤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침략적 전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 에이데와 무반가-치포요는 ‘양심’을 개개인이 이와 같은 전쟁에 저항하는 목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로 재해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로서 인정을 할 때 개인이 폭넓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보장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면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와 침략전쟁을 방지하는 주권보호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Asbjorn Eide and Charna L. C. Mubanga-Chipoya 1985).

1984년 인권위원회는 에이데와 무반가-치포요의 보고서를 승인하고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의 보고서는 개별 국가들의 주권행사 역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진영 국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서구의 간섭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1987년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명시하는 언급을 유보한 뒤에야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결의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특정한 체제에 대한 권리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실천으로서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80년대 말 냉전이 해체되면서 유엔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89년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병역거부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당한 실행으로서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이의 권리”로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서문을 유엔 총회의 1978년 반아파르트헤이트 결의안에 헌정하고, 민족해방운동이 환기시킨 주권의 중요성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기반으로 인정했다(1989/59).

1989년 채택된 결의안의 관점은 이후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유엔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한편에선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개인들의 권리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민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권리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대체복무제의 합리성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77호 결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제공되어야 할 대체복무제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이전까지의 결의안들이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금지나 망명권 보장 등의 선언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1998년 결의안(1988/77)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헌장(Magna Carta)’이라고 불릴 만큼 권리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제공해야 할 대체복무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998년 결의안은 징병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할

때 ① 각 병역거부 이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② 비전투적이거나 민간업무 성격이어야 하고 ③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면서 ④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러한 기준은 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채택한 이후의 결정들과 최종견해들에서 재확인되었다.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은 1999년 Foin v. France 사건에서 더욱 정교한 논리를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폭넓게 인정하여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에 비해서 두 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의 부담이 상당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가 대체복무제의 기간을 군복무에 비해서 더 길게 규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복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복무의 특수한 성격이나 특별한 훈련의 필요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objective and reasonable criteria)일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프랑스의 경우 ‘두 배의 복무 기간이 개인의 신념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논의에만 근거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프랑스에게 청원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래에 유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바꾸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위원회에서 이후에 채택한 결정과 최종견해들은 특별한 훈련의 필요성이나 업무의 특수한 성격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2003년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의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에 비해서 각각 1.7배와 2배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적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2008년 한국의 병역거부자 388인이 청원한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원한다면 민간대체복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성격이 징벌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인권 존중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CCPR/C/106/D/1786/2008).

2) 국내 인권관련 기구 및 시민사회 의견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중요한 인권의제로 다뤄왔다. 특히 2005년 10월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단체 및 기관의 입장 등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이후로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인정하고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이보람 2018).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채택한 권고에서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대

체복무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안은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77호를 참조하여 ① 대체복무의 인정 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와 절차를 마련 ② 구제활동이나 환자수송, 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복무영역 ③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④ 합숙 복무형태를 제도 도입 초기의 제도운영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가 안정이 된다면 차츰 기간단축과 복무형태의 변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와 같은 기준은 최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결정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인권위는 국회에 제출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대법원에 제출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의견에서도 심사 절차 마련, 공익적 복무영역, 1.5배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합숙 복무형태 등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도가 안정될 시 복무기간과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2017년 6월 국회에 발의된 세 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대체복무심사기구와 관련하여, 각 개정안이 대체복무 심사를 판단하기 위한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의 기구를 두고,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체복무 심사와 재심사 기관의 분리, 대체복무심사기구와 대체복무심사기구의 장 및 위원들의 업무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등을 주문했다. 대체복무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세 건의 개정안이 현역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대체복무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인권위의 권고안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대체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세 건의 개정안이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의 1.5배 이상(이철희안의 경우 2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길게 하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국가인권위 2017).

인권위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이후에 국회에 발의된 네 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 건의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도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 중 김학용안을 제외한 법률안들이 종교적 사유 외의 개인의 양심, 신념 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김학용안은 ‘종교적 신념’으로 한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정종교 교인만이 아니라 기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심사기구와 관련해서는 모든 개정안이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모두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 개정안은 심사와 재심사기관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대체복무심사기관을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사위원의 자격도 특정 부처나 분야에 관계된 자로 한정

하지 않고, 특히 대체복무 신청자의 상당수가 특정 종교인일 것을 고려하여 종교단체 관계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는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복무영역과 관련해서는 이종명안과 김학용안이 비전투군복무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와 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김학용안을 제외한 모든 개정안이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육군복무 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김학용안은 공군 복무기간의 2배인 3년 8개월(총 44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긴 복무기간은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징벌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 인권기구들로부터 복무기간에 대한 지적 및 권고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합숙여부와 관련해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를 합숙 형태와 출퇴근 형태를 열어두는 다른 개정안들과 달리 이종명안은 예외 없이 합숙 형태만 규정하고 있어서 복무기관의 운영부담과 대체복무의 영역과 내용 등의 범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국가인권위 2018).

시민사회안

2001년 한국에서 최초로 불교신자 오태양이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2002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결성되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후로 다양한 사상·신념 및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졌지만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병역거부의 이유보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차별에 더 집중되었다.

병역거부 운동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예외 없이 처벌 받고 구속되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를 위한 호소에 집중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병역거부 운동 역시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병역거부 운동에 오랫동안 연대해왔던 5개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이하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참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안하는 취지로 발표되었다.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오던 보수정당과 단체들은 군복무보다 2배이상 길고 난이도가 높고 힘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⁴ 시민

4 2018년 8월 14일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발표하여 바른군인권연구소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은 시민사회안의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다음

사회안은 이러한 요구가 ‘징벌적 대체복무제’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달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다.

시민사회안이 제시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사회의 대체복무제 기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서 합리적 대체복무제의 기준은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었다. 2018년 시민사회안은 복무분야, 심사 및 운용, 복무기간, 신청인원 제한, 대체복무 지원시기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안은 복무분야로 사회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복무분야를 제시한다. 세부 기준으로는 ① 안보의 개념을 넓혀 위기관리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영역 ② 업무 난이도나 강도를 고려했을 때 입영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영역 ③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복무분야로는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이 제시되었다.

심사 및 운용의 기준으로는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를 군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되는 것을 제시한다. 국제인권기준은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기구가 군이나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심사의 공정성과 관리·감독할 기관이나 복무 분야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안은 대체복무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또는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할 경우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조항을 개정하여 손쉽게 현재의 병력자원 관리업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복무기간의 기준으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에 비해서 1.5배 이내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국내외 인권기준이 현역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한 한국의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배 복무기간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응답한 조사결과도 근거로 삼았다. 만일 현역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하려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염려된다면 제도 도입 초기 신청인원 제한(연 1천 명 수준)을

날인 29일 “금번 헌법재판소 일부 판결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개인의 주관적 가치 등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권의 본질적 가치체계의 근본인 양심으로 격상시켜 심리한 법전문가로서의 기본을 상실한 판결”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인정에 대한 권고안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자유권규약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단체가 제시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은 단순설문조사결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려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모색하는 본 연구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안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해 현역입영 자원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안은 대체복무 지원이 언제나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이 그 본질상 언제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고, 현역입영대상자 뿐만 아니라 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리상 모두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국내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법학논문

2018년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어 반복되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를 다룬 선행연구들 역시 병역거부의 합법성 여부를 다루는 법학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러한 조건 때문으로 보인다(문재태 2017; 신상준 외 2017; 류지영 2016; 장영수 2015; 한인섭 2015 등). 양심적 병역거부의 합법성 여부와 관련한 연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행위인지, ‘국방의 의무’에 의해 제한될 필요는 없는지 등의 법리적 검토를 주로 다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적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논의의 중심은 대체복무제의 성격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제공해야 할 대체복무제의 성격과 도입방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합법성에 비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대체복무제 연구

이재승의 ‘바람직한 대체복무제’(2013)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고 동시에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해서 형평성과 인도성을 충족시키는 제도의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 운영방법을 모범사례로 참조하고 그리스의 대체복무제 운영방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도의 실질적 운영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국제인권기준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독일의 대체복무제 경험을 참조하여 병역거부 신청에서부터 대체복무 수행과 권리보호 및 징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참조할 내용이 많다. 그러나 제도를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험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수요나 여러 당사자에 대한 여론조사 등 한국 현실에 대한 사회조사가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진석용이 병무청의 용역연구과제로 수행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2008)가 진행한 복무가능 시설에 대한 대체복무자 수요조사 등의 사회조사 방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사가 수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사회복무제가 정착되

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의 조사결과가 지녔던 현실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여론조사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다룬 사회조사는 여론조사였다. 특히 2011년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선제조건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제시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8년 국방부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백지화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던 것도 여론조사의 역할을 크게 만들었던 배경이다. 하지만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대표성의 문제, 정보에 기반을 둔 의견의 제한, 조사결과와 비밀관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론장 형성에 오히려 해가 된다(김춘석 2013; 이영희 2018).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병역기피자 양산, 병역이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등 여러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위험은 오직 가능성으로서 근거 없이 주장될 뿐 사회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검토하는 연구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대현 등의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양심적 대체복무 선택율 추정’(2008)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대체복무 지원자의 규모를 예측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포커스그룹 토론을 통해서 군복무의 여러 속성 중 복무 기간이 복무 지원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을 27개월, 36개월, 45개월로 정하고 이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이나 해군 등을 피설문자들에게 선택지로 제시하여 단 하나의 복무 형태를 고르라고 했다. 청주시내 거주 중인 대학교 1학년 남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설문의 결과를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론은 대체복무기간이 4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체복무 기간이 육군의 1.5배인 27개월일 경우 전체 현역입영대상자의 5%인 15,650명이 대체복무를 지원하는 반면 36개월일 경우 1.3%인 4,069명, 45개월일 경우 0.3%인 939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매년 750명 정도 발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45개월 이상으로 해야만 대체복무 지원자의 규모가 현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규모와 비슷하다.

이 연구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대체복무제의 성격에 따른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해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를 설계하면서 대체복무 지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너무 단순화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입영대상자들의 복무방식에 대한 선택을 두고 복무기간만을 일차원적으로 고려하는 공리주의적 접근으로는 군 복무 선택에서 기본권 박탈, 사회적응 곤란 등

기간 못지않게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1. 해외 대체복무제 운영 현황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제공하는 대체복무제는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개별국가마다 대체복무를 지칭하는 개념이 ‘대안적인 복무(alternative service)’, ‘대체복무(substitute service)’, ‘대안적인 민간복무(alternative civilian service)’, ‘민간복무(civilian service)’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만큼 그 성격도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Dick Marty 2001). 구체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관점에 따라서 대체복무 도입시기, 심사절차, 병역거부 인정범위 및 대체복무 신청허용시기, 대체복무 관할 기관 및 복무영역, 대체복무 기간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 러시아, 아르메니아처럼 병역을 여전히 주된 복무로 두고 대체복무를 예외적인 복무로 보는 경우 대체복무제가 한정적인 성격을 보이는 반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처럼 대체복무의 사회적 가치를 크게 인정하는 경우 대체복무제 역시 폭넓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복무 도입시기는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온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냉전 체제에서 ‘양심의 자유’를 더 강조했던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는 베트남전과 68혁명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덴마크(1917년)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으며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시기에 대한 반성을 담아서 헌법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했다. 이와 반대로 동유럽 국가는 1990년대 이후가 되어서 대체복무제를 매우 한정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러시아(1993년)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1996년), 아르메니아(2004년)는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이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심사와 관련한 특성에도 반영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유로 종교적 신앙뿐만 아니라 윤리적·정치적 신념을 인정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종교적 신앙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병역거부 인정범위에 한정을 두는 정책을 폐지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반면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심사를 형식상 서류제출로 간소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허용시기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서 입영대상자들

비롯해서 현역복무 중이나 그 이후에 예비역인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복무를 관리하는 관할기관 역시 다른 특성들처럼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관점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례는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국가들에서 발견된다. 이들 국가들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국방부의 관리·감독에 저항해서 대체복무까지 거부하여 다시 수감되어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권고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전체방위(Total Defence)를 구성하는 군복무, 민방위복무, 민간복무 중 입영대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관할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처럼 국방부가 관할하는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집단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할 경우 어떠한 복무의무에서도 면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복무기간과 관련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의 대체복무기간은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1.5배를 넘기지 않았다. 대만,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은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국가다. 반면 그리스, 러시아, 세르비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1.5배로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되었고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등은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에 비해서 1.5배를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다음 <표2-1>는 해외 대체복무제 운영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징병제 시행 당시의 최종운영상황을 반영했다.

표2-1 해외 대체복무제 운영현황

	병역거부권 인정시기	심사절차	병역거부 인정범위 및 대체복무 신청허용시기	관할기관 및 복무영역	대체복무 기간 및 군복무 기간
그리스	199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 제정	-국방부에 신청 -심사위원회가 신청 심사 -심사위원: 교수 2인, 장교 2인(병무/보전)	-종교적 신앙 및 철학적·도덕적 확신 모두 인정 -2000년 수정헌법 비종교적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화 -징집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입영 전까지(1개월) -전시 병역거부권 인정 안됨(비전투 군복무 수행)	-국방부 관할 -공공영역에서 수행 -비전투 군복무도 제 공함	-대체복무 15개월 -군복무 9개월

남아프리카공화국	1957년 「국방법」 개정	-국방부에 신청 -1983년 이후로 종교적거부위원회 (Board for Religious Objection)에서 심사를 진행	-종교적 신앙만 인정 -입영 전까지	-국방부 관리 -민간 복무는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 -비전투 군복무도 제 공함	-대체복무 6년 -비전투 군복무 4년 -군복무 4년
노르웨이	1965년 「개인적 신념사유에 의한 병역면제에 관한 법」 제정	-법무부에 신청 -신청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인정 (2001년 이후 개인면담 이루어진 적 없음) -2011년 12월 31일 이후 대체복무제 폐지되어 병역거부자는 군복무 면제	-인정범위에 제한이 없음 -신청허용시기에 제한이 없음 -군복무자가 신청할 경우 4주 이내 군에서 제대함	-법무부에서 관리 -군사시설이나 군사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간영역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도 수행됨 -많은 수의 병역거부자들이 종교교 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VOKT)에서 대체복무를 수행 -예비군의 경우 전시 민간인 구호 목적으로 군사훈련을 제외한 응급처치, 자기방어, 후방병참관리에 대한 훈련을 매년 2주간 실시	-대체복무 13개월 -군복무 12개월
대만	-2000년 「병역법」 개정	-주관기관의 보고에 의해 행정원이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종교적 신앙만 인정 -신체검사 후 소집일까지	-내무부 산하 역정서에서 관리 -경찰역, 소방역, 사회역, 환경보호역, 교육서비스역, 문화서비스역 등 16개 영역	-대체복무 4개월 -군복무 4개월
덴마크	1917년 「대체복무제법」 제정	-내무부의 병역거부 관리국에 지원서 제출 -종교적·윤리적 사유는 신청만으로 인정	-종교적·윤리적·정치적 사유 인정(순전히 정치적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허용시기에 제한 없음	-내무부에서 관리 -병원, 사회사업과 문화기관들과 같은 정부기구 및 평화·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수행	-대체복무 4개월 -군복무 4개월

독일	1949년 헌법에 명시	-지방병무청을 거쳐 연방민간복무청에 신청 -거의 모든 신청이 자동적으로 승인	-인정범위에 제한이 없음 -신청허용시기에 제한이 없음 -전쟁 동안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됨	-연방민간복무청에서 관리 -주로 병원, 장애인 간호 등과 같은 사회 복지기구 -드물게 NGO에서 수행 -해외에서 11개월간 환경활동이나 사회 봉사를 한 경우 대체복무를 한 것으로 간주 -예비군 의무 없음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에는 대체복무자들도 무제한의 대체복무의무를 짐	-대체복무 9개월 -군복무 9개월 -2011년 징병제 폐지
러시아	1993년 헌법에 명시	-국방부 징병위원회에 신청 -서면으로 설명된 사유서와 계획서를 포함해야 함 -개인면담 진행 후 통과여부 결정	-인정범위에 제한이 없음 -입영 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국방부 관리 -비전투 군복무와 군부대 밖에서의 민간 활동을 제공함 -군부대 밖의 민간활동도 상당수가 군부대에서 합숙을 요구함	- 민간 대체복무 21개월 - 비전투 군복무 18개월 - 군복무 12개월
세르비아	-2003년 「민간복무법」 제정	-지방병무청에 신청 -국방부 소관의 심사위원회(변호사, 신학자, 심리학자, 법률고문, 국방전문가)에서 심사 -모든 지방병무청에 하나씩 설치됨 -심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함	-인정범위에 제한이 없음 -복무기간의 1/3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가능	-국방부 관리 -병원, 요양시설, 문화시설, 장애인 시설과 구호시설 같은 정부시설 -NGO에서 일부 수행 -예비군 복무는 하지 않음 -전시에는 병영 내 비전투 군복무에 소집될 수 있음	-대체복무 9개월 -군복무 6개월 -2010년 징병제 폐지

스웨덴	1920년 「통합방위복무법」 제정	-국방부에 신청 -1991년 이후 신청 절차에서 개인면담은 사라짐 -군복무 시작 전 또는 입영대상자가 된 것을 인지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만으로 자동적으로 인정	-인정범위에 제한 없음 -신청허용시기에 제한 없음	-국방부 관리 -입영대상자는 전체 방위(Total Defence)를 구성하는 군복무, 민방위복무, 민간복무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음 -민방위복무는 화재 예방, 구호활동, 사회봉사, 철도 및 도로 유지업무 등을 포함함	-대체복무 7.5개월 -군복무 7.5개월
스위스	1996년 「민간복무법」 제정	-경제부의 중앙민간복무 당국에 신청 -2009년 4월부터 사유서만 제출하면 신청	-인정범위에 제한 없음 -신청허용시기에 제한 없음	-경제부에서 관리 -사회복지, 보건부문, 환경보호 같은 공익에 봉사하는 어떠한 공적/사적 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음 -대체복무가 완료된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특별민간복무’(extraordinary civilian service)의 책임을 짐 -특별민간복무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만 소집됨	-군복무 기간의 1.5배 -군복무 중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남은 복무기간의 1.1배 복무 -비전투 군복무를 선택할 경우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을 복무
아르메니아	2004년 「대체복무법」 제정	-국방부에 신청 -심사위원회는 신청서와 함께 개인면담을 한 후 결정 -신청이 기각되면 10일 이내에 공화국징병위원회(국방부)에 상소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각되면 1개월 이내에 법정에 상소할 수 있음	-인정범위에 제한 없음 -입영 전 1개월	-국방부 관리 -비전투 군복무와 군부대 밖에서의 민간활동을 제공함 -대체복무자들은 정부가 정한 복장을 입어야 함 -정신병원, 고아원, 진료소 등	-민간 대체복무 42개월 -비전투 군복무 36개월 -군복무 24개월

오스트리아	1974년 헌법에 명시	-내무부에 신청 -1991년 이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인정	-인정범위에 제한 없음 -입영대상자의 경우 병역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영 전 2일까지 -예비군의 경우 소집 후 3년 이내	-내무부 관리 -병원, 사회복지기관, 응급 구조기관 등 -적십자사 등 NGO -해외에서 12개월 동안 평화업무, 사회복지업무 등을 수행하면 대체복무로 인정 -대체복무가 완료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응급지원 같은 비전투활동인 ‘특별시민복무’를 위해 소집될 수 있음(실제로 소집된 적은 없음)	-대체복무 9개월 -군복무 6개월 -2015년 징병제 폐지
우크라이나	1996년 헌법에 명시	-노동사회정책부 지역사무소와 대체복무위원회에 신청 -정부명단에 포함된 교파의 책임자가 서명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함 -통상 출석심사는 하지 않음	-‘교리상 무기사용을 금지하는 종교단체 명단’(결의안 2066/1999)에 명시된 제7안 식일교, 침례교, 개혁주의 재림교, 여호와의 증인, 카리스마 기독교 등의 신자만을 인정 -소집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001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종교적 신념까지 포함하는 비차별적 병역거부 인정을 권고함	-노동사회정책부 관리 -보건, 사회복지, 자치단체 사업과 같은 정부기관 -적십자사 -지방정부에서 거리 청소부와 건설노동자들로 고용되고 근로조건이 가혹하고 임금이 낮음(신념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복무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	-대체복무 27개월 (대학졸업자는 대체복무 18개월) -군복무 12개월 (대학졸업자는 9개월)
프랑스	1963년 「병역법」 개정	-심사절차 없음 -입영대상자는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인정범위에 제한 없음 -입대 전까지만	-사회복지기관, 박물관, 대학 등 공공기관 -‘사회적이거나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들도 포함 -정부는 해당기관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복무가능단체의 목록을 제공	-대체복무 24개월 -군복무 12개월 -2001년 징병제 폐지

편 란 드	1931년 「병역 법」개 정	-국방부에 신청 -신청은 거의 자동 적으로 승인됨	-인정범위에 제한 없음 -신청허용시기에 제한 없음	-노동부가 관리 -정부기관, 공공기 관, 보건복지기구, 학교, 도서관, 문화 기관 등 공공영역 -노동부가 장소의 배 당을 책임지지만 대 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의 부족으 로 대부분 스스로 복 무장소를 찾음 -평시 예비군 훈련 의무 없음	-대체복무 약 12개월 -군복무 6개월
-------------	--------------------------	-----------------------------------	--------------------------------	--	-----------------------------

출처: 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2017) 및 War Resisters' International과
각국 국방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국가의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한 역사적 검토

병역거부 인정범위의 확장

서구에서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권리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바로톨로메 학살 이후 프랑스에서 낭트칙령을 통해 신교도들이 프랑스 전국 도처의 피난소와 독립적 생활구역에서 자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소극적인 인정이었다면 유럽적 국제질서 안에서 신교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약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존을 인정하는 잠정합의(Modus Vivendi)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근대적 징병제 실시 초기에 소수 종교에 대한 관용의 전통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되곤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려는 국가들은 초기에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만을 인정하려고 하지만 점차 그 범위를 비종교적 신념까지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르웨이의 경우 1815년 퀘이커교도가 처음 공개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이후 소수 종교 출신 병역거부자들이 연이어 처벌을 받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1902년 육군참모총장이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반면 비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이전보다도 훨씬 엄해졌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청년들이 병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비종교적인 병역거부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1922년 노르웨이 의회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진지한 종교적 확신이나 다른 진지한 양심의 기반들(serious religious conviction or on other serious grounds of conscience)’에 기초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법을 제정했다(Nils Petter Gleditch and Nils Ivar Agoy 1993).

서독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운영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범위를 한정하려는 경향이 컸다. 1949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래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논쟁은 주로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범위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국방부와 집권 여당이었던 기독교민주연합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 조항의 악용 가능성과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만 천착한 반면 야당이었던 사회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개인의 자유와 양심의 문제에 집중했다. 전자는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이 예외적인 ‘관용의 표지’라고 보면서 그 범위를 특정 종교 분파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자는 나치 시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을 상기하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가 냉전체제 하의 소비에트 진영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했다면 후자는 군대에서 나타나게 될 비민주성을 우려했다.

1956년 제정된 「병역법」은 ‘양심의 이유로 국가들 간의 모든 무기 사용에 반대하고, 그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전쟁 복무에 반대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 대신에 연방군 외부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범위를 열어두었다. 이 당시 대체복무제는 복무기간이 군복무에 비해서 1개월 밖에 더 길지 않았던 대신에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대단히 엄격했다. 정부는 국방부가 주관하던 심사위원회(Prüfungsausschuss)와 심의국(Prüfungskammer)에서 이루어지는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이러한 대체복무 신청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병역거부권 인정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려고 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장의 발언권이 대단히 컸고 기독교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던 정당 소속 위원들이 신청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향이 컸다. 엄격한 심사절차는 베트남 전쟁과 68혁명으로 인해 정치적인 병역거부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를 징병대상자 중 1% 이하로 묶어두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1968년 전후로 정치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신청자들이 증가하자 심사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비율이 57~66년 64%(심사위원회)/87%(심의국)에서 67~71년 19%(심사위원회)/58%(심의국)으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 시기에는 신청자가 심사 과정 이후 자살하거나 병역거부자에 대한 상담단체가 형사처벌을 당하는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불거졌다. 1984년 서독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와 심의국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국을 신설하고, 면접심사 방식을 서류심사 방식으로 간소화했다(문수현 201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범위를 종교적 신앙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는 투쟁의 결과로 그 자체의 모순을 드러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소승불교 신자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관련해서 불거진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60년부터 백인남성

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실시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소수의 평화주의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비전투 군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인 인정을 했다. 1970년대 들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흑백분리정책)와 나미비아, 앙골라에 대한 침공이 국제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매우 증가했다. 가톨릭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집단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고 나서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범위에 이들 종교들을 포함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1983년 수정된 국방법은 국가에 등록된 종교집단에 속해 있고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여 민간 대체복무도 제공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양심’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정책은 즉시 도전장을 받게 되었다. 수정된 국방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범위를 병역거부자의 ‘신앙(belief)’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양심의 범위를 다신교를 포함해서 신에 대한 믿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1984년 소승불교 신자였던 데이비드 하트만(David Hartman)이 아파르트헤이트와 나미비아 등에 대한 침공에 반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범위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하트만은 자신도 신앙에 기초하여 병역을 거부했지만 신을 믿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 병역거부심사위원회(The Board for Religious Objection)는 하트만의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1983년 제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에서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가 신을 믿지 않는 불교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1986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경전과 교리를 보여줄 수 있다면 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다. 병역거부심사위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종교적 신앙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 사상과 신념을 모두 포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Annette Seegers 1993).

복무기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제도운영 초기에 대체복무자에게 군복무에 비해서 더 긴 기간을 복무하도록 요구하다가 점차 그 기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서독,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운영되었거나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도 대체복무제 운영 초기에는 군복무에 비해 1.5배인 복무기간을 두고 있었다.

병역거부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보다 길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독의 경우 심사의 적절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1984년에 대체복무국을 신설하고 심사절차도 면접심사를 제외하여 간소화하는 대신에 대체복무기간을 16개월에서 20개월로 늘렸다. 당시 군복무가 15개월이었기 때문에 대체복무

는 군복무에 비해서 1/3 이상 긴 기간으로 설정된 셈이었다. 군복무는 대체복무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더 강하고 예비군훈련 의무도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 지원자들이 실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함으로써 자신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기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문수현 2013).

프랑스의 경우는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두어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경향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프랑스는 징병제를 국가적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제한을 크게 두려는 경향이 있었다. 1963년 드골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예를 들면 징병통지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병역거부소견을 제출해야 한다거나 병역거부 사유로 종교적 신앙만 인정하며 모든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제한하는 기준이 높았다. 1970년대 들어서 심사에 탈락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도 거부하면서 병무행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다.

1983년 사회당 정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반영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규제를 풀고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핵심적인 변화는 심사절차의 간소화와 대체복무기간의 증가였다. 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샤를 에르뇌(Charles Hernu)는 이와 같은 정책의 취지를 “행위에 의한 증명(preuve par l’acte)”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을 심사하고 측정하는 것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는 2년 동안의 군복무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행위라는 것이다(Assemblée Nationale, May 17, 1983:1077). 정부가 제안한 대체복무제 수정안은 통과되어 신념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기준들이 사라진 대신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기간의 두 배인 24개월로 정해졌다(Michel L. Martin 1993).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채택한 “행위에 의한 증명”이라는 기준은 이후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수정 권고를 받게 된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Foin v. France 사건에서 프랑스의 대체복무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오로지 지원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방법이 된다는 논의에만 근거하기 때문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프랑스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2001년부터 평시 징집을 중단했기 때문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지 못했다.

관할기관 및 대체복무 영역

대체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관할기관과 복무영역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범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을 최소화하려는 정당이나 단체가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미치면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은 ‘개인의 자유의사’라기보다 ‘양심적 필연성’으로 한정되었다. 즉,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병역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

는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개인이 인생 전체에 일관되게 표현하는 신념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범위는 특정 종교 분파로만 한정하게 되고, 병역 자체에 대한 거부는 처벌하되 무기를 다루는 의무만을 거부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비전투 군복무를 요구하는 방안이 힘을 받게 된다.

1956년 당시 서독의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려는 관점에서 대체복무 영역을 비전투 군복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6년 도입된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비군사적인 민간복무와 함께 비전투 군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의 관리·감독을 맡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1968년을 전후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었다. 서독 정부는 1973년 대체복무 영역에서 비전투 군복무를 제외시키고 1984년 대체복무 관할기관을 국방부에서 가족청·소년여성노인부로 이전시켜 대체복무제를 군사적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노력했다(Jurgen Kuhlmann and Ekkehard Lippert 1993).

같은 기간 동독에서 운영했던 대체복무제는 서독의 사례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동독은 1962년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62년부터 1964년 사이에 매년 200~400명의 청년들이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 동독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처벌을 당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개신교에 대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인민군 내에 ‘건설병(Bausoldat)’을 설치했다. 건설병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대체복무를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비전투 군복무제도였다.

동독의 건설병은 비공식적으로나마 소비에트 진영에서 유일하게 대체복무가 허용된 사례였다. 그러나 건설병은 민간영역이 아니라 군부대 내에서 복무하는 비전투 군복무였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 권리로서 보장받지 못한 채로 비공식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를 통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건설병으로서 군사시설의 건설에 투입되는 것을 거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았고, 지원절차가 불투명해서 건설병에 지원한 뒤로 신청 결과를 7~9년 동안 기다려야 했다. 또한 건설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일반병으로 입대한 다른 병사들의 적대감과 멸시,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직속상관들이 자행하는 다양한 방식의 괴롭힘과 차별이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권형진 2011). 동독 정부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와 군사주의를 강화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동독 체제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을 오히려 강화하는 정치적인 실수로 평가받는다(Wilfried Bredow 1993).

3절 무죄 판결문 및 헌재 결정문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대학입시, 사법시험 예상 문제에 단골로 꼽혔고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장(場)에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찬반이 부딪혔다. 법원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장이었다.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의 법리가 하급심에서부터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치열하게 다투졌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은 그렇게 치열했던 법리 논쟁의 결과물이다. 이번 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가운데 대체복무제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간략한 사법 역사를 정리해보겠다.

1. 무죄판결 사례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가 병역거부자 3명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한국 사법사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었다. 3명 중 1명은 예비군 거부자였다. 이정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 거부는 양심을 지키는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작위 의무로부터의 해방과 양심 실현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라며 3명의 행위를 「병역법」 88조 1항에 명시된 입영을 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던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대법원은 2004년 7월 15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선고를 내리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26일 「병역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7년 10월 2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이형걸 판사가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린 후 2014년 말까지 무죄 선고는 없었다. 이 기간 동안 2011년 8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대한 결정이 한 차례 더 이뤄졌는데, 2004년과 마찬가지로 「병역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2015년 5건, 2016년 7건, 2017년 44건, 2018년(8월말까지) 47건으로 급증했다. 대부분이 1심 재판이었고 2016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과 2018년 8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을 통틀어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서울동부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표2-2 연도별 병역거부 무죄판결 (1심, 2심 모두 포함)

연도	무죄 선고 횟수	재판부 수	특이점
2004	3	1	최초의 무죄 판결, 예비군거부 1건
2007	1	1	
2015	6	3	8년 만의 무죄 판결
2016	7	4	항소심 첫 무죄 판결
2017	44	26	항소심 1건, 예비군거부 2건
2018(8월 말 까지 집계)	47	21	항소심 8건, 예비군거부 3건, 현재 결정 이후 19건

자료제공:여호와의증인 홍보부

2.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그간의 사법적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5조의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병역법」 88조 1항의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본 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가운데 대체복무와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국방의 개념과 공익성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문을 통해서 대체복무제의 효과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① 새로운 안보의 실현에 기여 ②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거부 당사자의 사회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③ 소수자를 포용하고 관용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다양성을 높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리고 않고 있다.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을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협의 종류가 다양해진 현대의 안보 개념은 군사적 위협 중심의 과거 전통적 안보개념과는 다름

-국가 안보에서 점점 더 포괄적인 안보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음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대신에 새롭게 중요해져 가는 안보 영역에서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면 넓은 의미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함

위의 내용은 국방과 안보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시에 대체복무제의 영역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대체복무제 또한 넓은 의미의 국방, 즉 사회 안보를 지키는 영역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의 성격을 공익 관련 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공익은 공동체의 안보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오는 일로 규정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의 안보 실현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효과에도 주목한다.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거부 당사자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 복무할 수 있게 됨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다수의 입장과 다른 소수를 포용하고 관용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다양성을 높여 결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2) 침해의 최소성 원칙

병역거부자 심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현행 「병역법」 5조의 병역종류조항⁵은 모두 군사훈련을 포함하고 있어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입법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 실현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즉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양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기준의 하나인 침해의 최소성 원칙은 대체복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병역거부자들의 양심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

5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3) 대체복무 심사에 관한 쟁점들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이 한국 사회 내에서 찬반으로 강하게 나뉜 까닭은 안보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가 과연 잘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 때문이기도 했다. 병역거부를 가장한 병역기피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개병제를 바탕으로 한 전체 병역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제의 운영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제안과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병역기피자 양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음

-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만들면 됨
- 심사의 곤란함은 대체복무 기간이나 난이도를 조절하여 극복할 수 있음
- 악용 방지를 위한 수단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이 되거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됨

제도적 보완, 특히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현실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다.

-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
- 대체복무를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자세히 소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
-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사회 등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사
-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뿐만 아니라 대면심사를 통하여 신청인·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
- 신청인·증인·참고인 등의 자료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 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종전의 결정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양심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 등 양심 심사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또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가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양심 심사의 곤란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기간을 현역보다 길게 하거나, 강도를 현역복무와 같거나 그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 설계

그러면서도 제도 악용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너무 지나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거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원칙과 이런 조치들은 대체복무제의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국회 발의 「병역법 개정안」 검토

2000년대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과 수감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회의 관련법 개정작업도 계속되어 왔다. 2004년 대법원 유죄판결-헌법재판소 합헌결정으로 사법부에서의 논란이 일단락되며 제시된 입법권고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임종인 전 의원의 주도로 「병역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되었다. 2004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은 총 12건으로, 「병역법 개정안」이 11건, 별도법안이 1건이다. 17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5건의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3건, 이후 5건(김학용 2건)이 발의된 상태로 현재 총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표2-3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 및 대체복무법안 목록

제안회기	제안일자	의안명	발의자
17대	2004.9.22.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임종인의원 등 22인
17대	2004.11.19.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18대	2011.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1인
18대	2011.9.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 등 10인
19대	2013.7.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2인
20대	2016.1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20대	2017.5.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20대	2017.5.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대	2018.8.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대	2018.8.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25인
20대	2018.8.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1인
20대	2018.8.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등 11인
20대	2018.8.20.	「대체복무역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1. 20대 국회 이전에 발의된 법안 비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큰 법안

17대 국회(2004년~2008년)에서는 임종인·노회찬 전 의원이, 18대 국회(2008년~2012년)에서는 김부겸·이정희 전 의원이, 19대 국회(2012년~2016년)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각각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별 차이는 없다.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규정한 점, 합숙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는 복무형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복무분야를 정한 점,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대상에서 제외한 점, 심사기구는 국방부나 병무청 관할에 둔 점 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법안 간 차이보다 공통점이 큰 이유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존재하지 않아 면제 또는 일종의 특혜로 보는 오해가 팽배한 상황에서 수십년간 예외없이 처벌받아온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국민감정과 인권을 고려한 복무기간과 형태

군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복무보다 긴 기간을 설정했지만, 해외사례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참고해 복무기간은 육군의 1.5배를 넘지 않는다. 합숙복무를 원칙으로 삼은 것도 출퇴근 형태의 복무가 현역복무에 비해 특혜라고 보여질 것을 우려한 규정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노회찬안을 임종인안과 비교하며 두 안 모두 국민감정을 배려해 합숙을 규정하고 있지만, 합숙시설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현행 대체복무자들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퇴근 복무를 하고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숙을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⁶을 냈다. 대체복무 종료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있는데, 임종인안과 김부겸안은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대상 규정인 제44조는 개정하지 않았지만 입법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시근로소집 대상에는 포함(53조)되었으나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이나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항(83조)도 명시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범위 영역 등 확대

첫 번째 법안인 임종인안에서는 복무 전에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규정만 존재하지만, 그 다음 발의된 법안인 노회찬안에는 현역복무 중과 예비군 중에도 신청가능(부칙제5조)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김부겸안은 17대 임종인안을, 이정희안은 17대 노회찬안을 받아 발전시킨 형태로, 18

6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兵役法中改正法律案 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2004.12.

대에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두 법안 차이가 그대로 존재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주당 전해철안에는 이전 두 법안에서 차이가 있던 부분 중 더 확대된 형태가 반영되었다. 법안 간의 차이를 보였던 신청시기는 복무 전 뿐만 아니라 복무 중, 예비군 중까지 포함되며 사실상 제한없이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고, 사회복지관련 업무에서 공익관련 업무까지 포함되며 복무분야도 확대되었다. 병력동원소집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반영되었다. 이정희안에 추가된 징병검사 실시전에 병역의무자에게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는 고지의무도 전해철안에 포함되었다.

제대로 된 논의없이 임기만료폐기

17대부터 꾸준히 법안은 발의되어왔으나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임종인의원실 주최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부겸안, 이정희안은 상임위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 19대에 와서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⁷⁾에 안전으로 상정되고 국방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발제하기도 했지만, 법안발의자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인지 별다른 언급이 되지는 않았다. 법안이 발의된지 2년이 지난 2015년 7월에 전해철의원실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는 그해 7월 초 헌법재판소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면서 다시 국회로 관심이 쏠렸기 때문일 것이다.

표2-4 17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종인안	노회찬안	김부겸안	이정희안	전해철안
제안회기	17대	17대	18대	18대	19대
제안일	2004.09.22.	2004.11.19.	2011.07.01.	2011.09.14.	2013.07.18.
법안형태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고지의무	X	X	X	O	O
신청시기	복무전O 복무중X 예비군X	복무전O 복무중O 예비군O	복무전O 복무중X 예비군X	복무전O 복무중O 예비군O	복무전O 복무중O 예비군O
관할부처	병무청	국방부/병무청	병무청	국방부/병무청	병무청
복무형태	합숙(예외허용)	합숙(예외허용)	기숙(예외허용)	합숙(예외허용)	합숙(예외허용)
복무기간	육군1.5배	육군1.5배	육군1.5배	육군1.5배	육군1.5배
만료후 예비군	규정없음(취지는제외)	기간동일 대체복무	규정없음(취지는제외)	기간동일 대체복무	기간동일 대체복무
전시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

7 제321회국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2013.12.23.

복무분야	사회복지관련 업무	사회복지관련 업무 소방·의료· 재난구호 등의 공익관련업무	사회복지관련 업무	사회복지관련 업무 소방·의료· 재난구호 등의 공익관련업무	사회복지관련업무 소방·의료·재 난구호 등의 공익 관련업무
------	--------------	---	--------------	---	--

2.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비교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9월 기준 총 8건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19대에 법안발의를 했던 전해철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한 첫해인 2016년에 법안을 발의했고, 2017년에는 박주민의원과 이철희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전에 발의한 적이 없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며 8월 한 달간 5건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⁸

달라진 검토의견

현재결정 이전에 발의된 세 건의 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전해철안의 경우 19대와 같은 내용으로 20대에서 발의했는데, 국방위원회의 검토내용이 달라졌다. 2013년에는 국민의 정서와 현역의 사기를 감안하여 현역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없이 합숙복무를 원칙으로 하고, 현역의 2배 수준의 기간이 적절하다⁹고 했지만, 2016년에는 국민 정서와 타병역이행자와의 균형, 유엔의 기준과 해외사례를 고려해 현역의 1.5배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고, 복무특성상 24시간 종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합숙을 하는 것이 좋으나 합숙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야간 교대를 전제로 출퇴근 복무도 고려할 수 있다¹⁰는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복무 심사기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또는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복무보다 길게 하더라도 제도가 정착되면 군 복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¹¹을 표명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017년 9월에 열린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는 「병역법 개정안」 3건(전해철안, 박주민안, 이철희안)과 「예비군법 개정안」 2건(박주민안, 이철희

8 이전에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김학용의원은 「병역법 개정안」과 함께 별도법안의 형태로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해서 총 2건의 법안을 발의함.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구병희, 2013.12. 16쪽

10 「병역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박철규, 2016.12. 21-22쪽

11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 2017.6.27.

안)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며 의견을 개진하던 김종로·이종명·김학용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군으로부터의 독립성 차이

20대 이전 법안들이 차이보다 공통점이 컸다면, 최근 발의된 5건을 포함한 20대의 법안 8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복무분야로 이전 법안들의 합의지점인 사회복지 또는 공익관련 업무로 명시한 전해철안, 박주민안, 이용주안이 있고, 이철희안과 김종로안은 이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업무에 신체적 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추가했다. 이종명안과 김학용안에는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발굴 등 군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가 새롭게 등장했다. 재해복구 등 공익관련 업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나 김학용안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는 제외되었다. 이종명안은 부대 내 비집중업무를 포함해 복무기관으로 대체복무부대가 있다. 박주민안과 이철희안은 심사와 관리를 국방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복무분야 관할부처 간의 소통을 고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고, 나머지 5건의 안은 국방부나 병무청에 두도록 했다.

기간과 범위의 차이

전해철안, 박주민안, 이용주안은 입대 전부터 복무 중, 예비군 중에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하나, 나머지 4건의 안은 입대 전으로만 한정했다. 복무기간은 최근에 발의된 법안일수록 길어져 육군 현역병의 1.5배에서 2배, 김학용안은 공군 복무기간의 2배인 3년 8개월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김학용안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체복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오랜기간 논의하며 확립해온 ‘양심의 자유’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해서 적용한 것이다.

관점의 차이가 법안의 차이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간에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대체복무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된다.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찬반수준에 머물러있던 시기에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제안한 법안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병역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제안된 법안에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2017년 9월 국방위원회 회의록¹²을 살펴보면 국방위 의원들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김학용의원은 “병역의무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고, 김종로의원은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방부가 잘 알

12 제354회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2017.9.19. 53~55쪽.

아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명의원은 군복무를 다른 수단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되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학용안은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 개병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형평성은 물론 적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따른 병역 거부 풍조의 확산이나 병역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법안들은 군복무자와의 형평성과 제도의 악용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전 법안끼리 경합하며 확대된 범위나 영역이 포함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극적으로 인정해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표2-5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비교

	전해철안	박주민안	이철희안	김종로안	이종명안	이용주안	김학용안
제안일	2016.11.15.	2017.05.31.	2017.05.31.	2018.08.10.	2018.08.14.	2018.08.17.	2018.08.20.
정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
법안형태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별도법안
고지의무	O	O	O	X	X	O	X
신청시기	복무전O 복무중O 예비군O	복무전O 복무중O 예비군O	복무전O 복무중X 예비군X	복무전O 복무중X 예비군X	복무전O 복무중X 예비군X	복무전O 복무중O 예비군O	복무전O 복무중X 예비군X
관할부처	병무청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방부	병무청	병무청	병무청
복무형태	합숙(예외허용)	합숙(예외허용)	합숙원칙	합숙 또는 출퇴근	합숙원칙	합숙(예외허용)	합숙(예외허용)
복무기간	육군1.5배	육군1.5배	육군2배	육군2배	육군2배	육군2배	3년8개월 (공군2배)
만료후 예비군	기간동일 대체복무	기간동일 대체복무	기간연급없음	기간연급없음	기간연급없음	기간동일 대체복무	연급없음
전시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	연급없음
복무분야	사회복지관련업무 소방의료재난구호등 공익관련업무	사회복지관련업무 소방재난구호등 공익관련업무	사회서비스지원업무 소방 재난복구구호 등 신체적정신적난이도높은업무	사회서비스지원업무 소방 재난복구구호 등 신체적정신적난이도높은업무	지뢰제거등 평화증진업무 전사자유해발굴 보훈병원지원업무 사회서비스업무 재난복구구호 등 신체적정신적난이도높은업무	사회복지관련업무 소방의료재난구호등 공익관련업무	지뢰제거 전사자유해발굴등 전쟁예방평화통일증진업무 보훈병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사업 지원업무 재해재난예방복구구호공익사업 등

제3장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여론조사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활용됐던 사회조사방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상당기간 찬반수준에 머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과도하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사회적 소수자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단순한 호감도 조사로 머물면서 방법론상의 부적절함을 드러냈고 오히려 사회적 차별을 강화해온 면이 있다.

한편,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병역이행대상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체복무제의 기간, 형태, 난이도 등의 기준이 논의될 때 군복무자와의 형평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대체복무제가 군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이행대상자들이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병역이행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 검토하는 사회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의는 감정적인 대결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의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 찬반을 묻는 식의 조사는 생산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진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중점에 둔 설문조사를 기획하였다. 이것이 본 연구가 기존의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연구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하겠다. 본 조사는 병역이행을 앞둔 당사자들 중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군복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의 입영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성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7월 16일까지 연구원 2인이 구조화된 설문지와 조사대상자 리스트를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나, 연구용역 기간 중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박탈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형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7월 25

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중간보고회를 통한 논의를 반영하여 대체복무제 설계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보강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직접방문을 택하였고, 조사원 전원이 점검하는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여 8월 1일 설문지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기준).

표3-1 조사도구 구성

구성	설문문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연령, 거주지, 학력, 종교 등
군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견해	문항 1~3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문항	문항 4~8
대체복무제 설계 관련 문항	문항 9~18

애초에 본 연구진은 서울지역을 포함 4곳의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1,000명 이상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앞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의 진행과정상 발생한 난점으로 인해 비례할당 표본추출법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병역판정대상자 1년 32만명을 기준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pm 4\%$ 를 확보하려면 500명이 필요하다는 계산법을 참고삼아서 목표인원을 500명으로 정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앞에서 설문을 진행하였고, 날씨관계상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었다. 좀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고 응답자에게는 음료수를 제공했다. 총 527명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조사대상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한정하는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추가로 실시하였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제외한 집단은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수집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설문조사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면 응답자가 직접 접속하여 설문을 완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조사에 비해서 응답자의 익명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비용절감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응답자의 편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집단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전문가 집단으로는 법조계(서울지방법변호사회), 법학계(헌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공법학회, 형사법학회) 그리고 사회복지학계(한국사회복지연구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군사회복지학회)를 선정하였다. 법학계의 경우, 「병역법」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학회를 선정하였다. 사회복지학계를 전문가 집단에

포함시킨 이유는 대체복무제의 설계와 관련해서 다양한 복무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별 학회에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 형태로 회원들의 설문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 370명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졌다. 2008년 11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백지화 발표 이후 2009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출소한 사람들(약 5,000명 추산)을 대상으로 삼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에서도 이들을 선별한 까닭은 사법적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대와 상상을 했다가 무산되었던 세대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설문지는 여호와의 증인 교단과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배포하였으며 총 1856명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으로는 모아폼Moaform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조사에서의 중복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기기에서는 1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동일한 질문을 물었지만 집단에 따라서 문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모든 응답자들에게 본 연구목적으로만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실제 개별 사례는 익명 처리되어 분석되었다. 회수된 질문지와 온라인 설문 모두 데이터 코딩과 크리닝을 통하여 별도의 원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빈도분석 및 일부 서열변수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과 통계산출 과정에서 사회조사 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제2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배경변수	항목	빈도(명)	비율(%)
연령	18세	2	0.4
	19세	492	93.4
	20세	8	1.5
	21세	9	1.7
	22세	2	0.4
	23세	2	0.4
	24세	11	2.1
	25세	1	0.2

학력	고등학교중퇴이하	5	0.9
	고등학교 졸업	279	52.9
	전문대 졸업(재학 포함)	53	10.1
	대학교 졸업(재학 포함)	183	34.7
	대학원 이상	7	1.3
거주지	특별시, 광역시	406	77.2
	시	114	21.7
	군(도 단위 및 광역시 단위 군 모두 포함)	6	1.1
종교	없음	363	68.9
	불교	26	4.9
	개신교	93	17.6
	천주교	44	8.3
	기타	1	0.2

주: 거주지 무응답 1사람, 종교란의 기타 응답자 중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없었음.

2.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개별 문항 분석

1. 당신은 군복무/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복무 이행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69.8%)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30.3%)이 비해 2배 이상의 많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부담이 없다	50	9.5
별로 부담이 없다	109	20.8
약간 부담이 된다	215	41.0
매우 부담이 된다	151	28.8
합계	525	100.0

주: 무응답 2명

2. 병역 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3가지 선택)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경력단절 및 자기계발 제한’(63.9%), ‘부족한 봉급 및 경제활동 제한’(38.4%), ‘열악한 생활환경과 사생활 미보장’(35.5%)의 순서로 병역 이행에 부담이 되는 이유를 답하였다. 그밖에도 ‘권위적 병영문화’(34.7%), ‘고된 작업과 위험한 훈련’(31.8%), ‘가족 및 지인과의 단절을 포함한 통신제한’(31.8)도 3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이다.

구분	빈도(명)	비율(%)
경력단절 및 자기계발 제한	225	63.9
부족한 봉급 및 경제활동 제한	135	38.4
육설, 구타, 성폭력 같은 가혹행위	65	18.5
권위적인 병영문화	122	34.7
고된 작업과 위험한 훈련	112	31.8
열악한 생활환경과 사생활 미보장	125	35.5
가족 및 지인과의 단절을 포함한 통신제한	112	31.8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	47	13.4
군대 자체에 대한 거부감	78	22.2
기타	15	4.3

주: 질문에 대한 대답을 3개씩 고른 항목들은 비율의 합이 100%를 넘기 때문에 따로 합계를 내지 않았다.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정적(63.7%)이라고 답한 비율이 긍정적(36.3%)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부정적	122	24.4
약간 부정적	196	39.3
약간 긍정적	147	29.5
매우 긍정적	34	6.8
합계	499	100.0

주: 무응답 28명

4.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58.2%)고 답한 비율이 안다(41.8%)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대체복무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당사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몰랐다	162	30.9
잘 몰랐다	143	27.3
조금 안다	176	33.6
매우 잘 안다	43	8.2
합계	524	100.0

주: 무응답 3명

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과반에 가까운 인원(46.3%)이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단순히 보면 대체복무제가 도입 되면 입영대상자들이 대체복무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 인식의 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인지의 정도를 묻는 질문과 교차 분석을 통해 입체적으로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다.(본 보고서 48~50쪽 참고)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없다	117	22.2
별로 없다	165	31.4
조금 있다	188	35.7
매우 강하다	56	10.6
합계	526	100.0

주: 무응답 1명

6. 대체복무제가 군복무자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56%)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44%)보다 많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아니다	63	12.0
별로 아니다	168	32.0
약간 그렇다	224	42.7
매우 그렇다	70	13.3
합계	525	100.0

주: 무응답 2명

7.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병역판정 대상자들은 대체복무제가 제도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45.8%)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염려되는 점이 없음	109	21.5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대체복무가 또 다른 처벌로 작용할 수 있음	55	10.9
젊은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음	51	10.1
군복무자가 줄어들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23	4.5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음	232	45.8
군복무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	34	6.7
기타	2	0.4
합계	506	100.0

주: 무응답 21명

8. 대체복무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정한 심사절차(33.1%), 업무강도(20%), 복무기간(19%)의 순서로 고려사항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	169	33.1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97	19.0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강도	102	20.0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	56	11.0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	23	4.5
군복무자의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병행 추진	61	12.0
기타	2	0.4
합계	510	100.0

주: 무응답 17명

9. 대체복무 신청은 언제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49.6%)가 적절하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	261	49.6
입대 후 복무 1/3 시점까지	113	21.5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	150	28.5
기타	2	0.4
합계	526	100.0

주: 무응답 1명

10. 심사하는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적합한 심사방식으로는 신청서,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대면심사까지 포함한 방식이 절반 정도의 비율(48.7%)로 가장 많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합리적인 범위에서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이 길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	89	16.9
신청서 심사 (예: 병역거부 사유서 등)	90	17.1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예: 종교단체 또는 평화단체 가입증명서, 보증인 제도 등)	87	16.5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	256	48.7
기타	4	0.8
합계	526	100.0

주: 무응답 1명

11. 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과 국방부가 동등한 비율(26.6%)로 나왔으며,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도 그에 준하는 비율(25.7%)의 응답율을 보였다.

구분	빈도(명)	비율(%)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 (예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등)	135	25.7
복무분야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부처 (예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09	20.7
심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	140	26.6
제도설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	140	26.6
기타	2	0.4
합계	526	100.0

주: 무응답 1명

12.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3가지 선택)

법률 전문가(58%)와 군 관계자(56.1%), 4급 이상 공무원(52.1%)이 차례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계 전문가 또한 과반 이상의 응답률(51.7%)이 나타났다.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가 가장 낮은 응답률(21.9%)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구분	빈도(명)	비율(%)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	304	58.0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정치학·사회학·심리학·역사학·철학·법학 등을 전공한 학계 전문가	271	51.7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체복무기관 관계자	224	42.7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115	21.9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대체복무제 관련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273	52.1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계자	294	56.1
기타	12	0.2

주: 무응답 1명, 초과응답 2명 제외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3가지 선택)

일순위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구호 대응 지원’(54.3%)이 두 번째 순위로 ‘사회복지 분야 업무 보조’(51%)가 꼽혔으며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활동지원’(40.0%)이 세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기타 응답자의 상당수가 ‘지뢰제거’라고 답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37명 중 30명).

구분	빈도(명)	비율(%)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구호·대응 지원	285	54.3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예방활동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소독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176	33.5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내 학습활동, 이동, 취식 등 활동 지원	210	40.0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활센터,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	152	29.0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 지원서비스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268	51.0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지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업무	128	24.4
산림방재, 대기, 하천, 해양 오염방지 등 환경정화 및 보호, 감시업무 지원	140	26.7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157	29.9
기타	37	7.0

주: 응답 1명, 초과응답 1명 제외

14. 대체복무에 적합한 복무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체복무에 적합한 복무형태로는 기타 항목을 제외한 합숙, 출퇴근,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가 모두 고르게 나타났다. 병역판정 대상자들은 군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합숙 복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통념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합숙 복무	166	31.6
출퇴근 복무	176	33.5
배치된 기관의 필요 또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합숙 또는 출퇴근 복무	183	34.8
기타	1	0.2
합계	526	100.0

주: 무응답 1명

15.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이라는 응답(38.8%)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 논의 중인 1.5배와 2배를 기준으로 보자면, 1.5배를 이하를 선택한 사람이 81.6%로 2배를 선택한 사람 16.4%보다 5배 가량 많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199	38.8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111	21.6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109	21.2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84	16.4
기타	10	1.9
합계	513	513

주: 무응답 14명

16.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합숙 복무에 비해 육군병사의 1.5배, 2배를 답한 비율이 각각 2.5%, 12% 더 증가하였다.

구분	빈도(명)	비율(%)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134	26.1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99	19.3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122	23.7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146	28.4
기타	13	2.5
합계	514	100.0

주: 무응답 13명

17. 육군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숙 복무, 출퇴근 복무 모두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복무로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 대상에서 제외)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므로(43.5%),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이므로(28.2%),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16.3%)의 순서로 응답율이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군복무에 비해 국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이므로	19	4.9
군복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09	28.2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므로	168	43.5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63	16.3
대체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위한 기간 고려	20	5.2
기타	7	1.8
합계	386	100.0

주: 합숙 복무와 출퇴근 복무 모두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복무로 응답한 사람은 120명이고, 무응답자 21명을 포함하여 141명이 분석에서 제외

18. 대체복무 이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과반 이상의 응답자(52.3%)가 ‘예비군 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예비군훈련까지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설계	151	29.8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 수행	265	52.3
민방위로 편입	89	17.6
기타	2	0.4
합계	507	100.0

주: 무응답 20명

2) 문항 간 교차 분석

(1) 종교에 따른 교차 분석

질문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가 없는 사람(68.95)들의 대답이 평균값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종교들 사이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 정도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순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왔다. 개신교는 유일하게 부정적인 의견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체복무 신청 의향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 인지 정도

	전혀몰랐다		잘몰랐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없음	121	33.3	90	24.8	120	33.1	29	8.0	3	0.8	363	68.9
불교	4	15.4	9	34.6	11	42.3	2	7.7	0	0.0	26	4.9
개신교	23	24.7	29	31.2	34	36.6	7	7.5	0	0.0	93	17.6
천주교	14	31.8	15	34.1	10	22.7	5	11.4	0	0.0	44	8.3
기타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0.2
합계	162	30.7	143	27.1	176	33.4	43	8.2	3	0.6	527	100.0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인식 정도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없음	85	23.4	135	37.2	96	26.4	24	6.6	23	6.3	363	68.9
불교	6	23.1	8	30.8	10	38.5	2	7.7	0	0.0	26	4.9
개신교	24	25.8	34	36.6	25	26.9	6	6.5	4	4.3	93	17.6
천주교	7	15.9	19	43.2	15	34.1	2	4.5	1	2.3	44	8.3
기타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0.2
합계	122	23.1	196	37.2	147	27.9	34	6.5	28	5.3	527	100.0

종교에 따른 대체복무 신청 의향

	전혀없다		별로없다		조금있다		매우강하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없음	87	24.0	113	31.1	124	34.2	38	10.5	1	0.3	363	68.9
불교	2	7.7	8	30.8	10	38.5	6	23.1	0	0.0	26	4.9
개신교	16	17.2	29	31.2	38	40.9	10	10.8	0	0.0	93	17.6
천주교	12	27.3	14	31.8	16	36.4	2	4.5	0	0.0	44	8.3
기타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0.2
합계	117	22.2	165	31.3	188	35.7	56	10.6	1	0.2	527	100.0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교차 분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인지도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대체복무 신청 의향은 인지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병역거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대체복무를 할 의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일수록 대체복무를 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해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잘못 신청하거나 잘 모르고 신청하는 사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도에 따른 병역거부 인식 정도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혀 몰랐다	28	17.3	59	36.4	52	32.1	13	8.0	10	6.2	162	30.7
잘 몰랐다	22	15.4	63	44.1	38	26.6	11	7.7	9	6.3	143	27.1
조금 안다	57	32.4	64	36.4	42	23.9	6	3.4	7	4.0	176	33.4
매우 잘 안다	14	32.6	9	20.9	15	34.9	4	9.3	1	2.3	43	8.2
무응답	1	33.3	1	33.3	0	0.0	0	0.0	1	33.3	3	0.6
합계	122	23.1	196	37.2	147	27.9	34	6.5	28	5.3	527	100.0

인지도에 따른 대체복무 신청 의향

	전혀없다		별로없다		조금있다		매우강하다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혀몰랐다	29	18.0	47	29.2	63	39.1	22	13.7	161	30.6
잘몰랐다	22	15.4	53	37.1	53	37.1	15	10.5	143	27.2
조금 안다	47	26.7	56	31.8	60	34.1	13	7.4	176	33.5
매우 잘 안다	17	39.5	8	18.6	12	27.9	6	14.0	43	8.2
무응답	2	66.7	1	33.3	0	0.0	0	0.0	3	0.6
합계	117	22.2	165	31.4	188	35.7	56	10.6	526	100.0

(3) 병역거부 인식 정도에 따른 교차 분석

병역거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대체복무 신청 의향이 높고, 대체복무 기간이 짧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정도에 따른 대체복무 신청 의향

	전혀없다		별로없다		조금있다		매우강하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 부정적	59	48.4	29	23.8	21	17.2	12	9.8	1	0.8	122	23.1
약간 부정적	31	15.8	81	41.3	75	38.3	9	4.6	0	0.0	196	37.2
약간 긍정적	16	10.9	39	26.5	73	49.7	19	12.9	0	0.0	147	27.9
매우 긍정적	5	14.7	6	17.6	9	26.5	14	41.2	0	0.0	34	6.5
무응답	6	21.4	10	35.7	10	35.7	2	7.1	0	0.0	28	5.3
합계	117	22.2	165	31.3	188	35.7	56	10.6	1	0.2	527	100.0

인식 정도에 따른 대체복무 기간 선호도(합숙복무시)

	육군병사 (18개월)		공군병사 (22개월)		육군1.5 (27개월)		육군2배 (36개월)		무응답		기타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 부정적	28	23.0	19	15.6	35	28.7	38	31.1	0	0.0	2	20.0	122	23.1

약간 부정적	71	36.2	50	25.5	45	23.0	24	12.2	5	2.6	1	10.0	196	37.2
약간 긍정적	69	46.9	30	20.4	25	17.0	14	9.5	3	2.0	6	60.0	147	27.9
매우 긍정적	19	55.9	7	20.6	2	5.9	4	11.8	2	5.9	0	0.0	34	6.5
무응답	12	42.9	5	17.9	2	7.1	4	14.3	4	14.3	1	10.0	28	5.3
합계	199	37.8	111	21.1	109	20.7	84	15.9	14	2.7	10	1.9	527	100.0

(4) 대체복무 신청 의향에 따른 교차 분석

대체복무 신청 의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체복무 기간이 짧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병사 (18개월)		육군병사 (18개월)		공군병사 (22개월)		육군1.5 (27개월)		무응답		기타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혀 없다	27	23.1	20	17.1	34	29.1	32	27.4	2	1.7	2	20.0	117	22.2
별로 없다	55	33.3	36	21.8	37	22.4	31	18.8	4	2.4	2	20.0	165	31.3
조금 있다	89	47.3	43	22.9	32	17.0	17	9.0	4	2.1	3	30.0	188	35.7
매우 강하다	27	48.2	12	21.4	6	10.7	4	7.1	4	7.1	3	30.0	56	10.6
무응답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합계	199	37.8	111	21.1	109	20.7	84	15.9	14	2.7	10	1.9	527	100.0

제3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체응답자는 총 370명으로 법조계(80.5%), 사회복지학계(14.6%), 법학계(4.9%)의 구성을 띤다. 전체적으로 법조계가 과대대표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 연령대는 30대(44.3%), 40대(31.1%), 50대(63%)가 대부분이며 소수이지만 20대, 60대, 70대도 있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73.5%)이 여성(26.5%)보다 많았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52.2%)이며 그밖에 개신교(25.9%), 천주교(14.6%), 불교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1. 개별 문항 분석

3가지를 답변하도록 요구했는데, 전문가들은 군복무가 입대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경력단절 및 자기계발 제한’에 가장 많이 답변(77%)했다. ‘가혹행위’와 ‘권위적인 병영문화’도 41.9%의 선택을 받았다.(3가지 선택)

구분	빈도(명)	비율(%)
경력단절 및 자기계발 제한	285	77.0
부족한 봉급 및 경제활동 제한	93	25.1
욕설, 구타, 성폭력 같은 가혹행위	155	41.9
권위적인 병영문화	155	41.9
고된 작업과 위험한 훈련	100	27.0
열악한 생활환경과 사생활 미보장	138	37.3
가족 및 지인과의 단절을 포함한 통신제한	81	21.9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	60	16.2
군대 자체에 대한 거부감	39	10.5
기타	4	1.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 수준은 ‘긍정적’(54%)이 ‘부정적’(45.9%)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부정적	77	20.8
약간 부정적	93	25.1
약간 긍정적	123	33.2
매우 긍정적	77	20.8
합계	370	100.0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절대 다수가 (98.1%)가 잘 안다고 답변하였다.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몰랐다	1	0.3
잘 몰랐다	6	1.6
조금 안다	123	33.2
매우 잘 안다	240	64.9
합계	370	100.0

대체복무제가 군복무자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63.5%)이 그렇지 않은 사람(36.5%)보다 많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아니다	61	16.5
별로 아니다	74	20.0
약간 그렇다	125	33.8
매우 그렇다	110	29.7
합계	370	100.0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염려되는 점으로는 과반 이상(58.4%)이 병역기피자의 양산을 우려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염려되는 점이 없음	19	5.1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대체복무가 또 다른 처벌로 작용할 수 있음	87	23.5
젊은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음	13	3.5
군복무자가 줄어들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2	0.5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음	216	58.4
군복무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	32	8.6
기타	1	0.3
합계	370	100.0

대체복무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공정한 심사절차’(29.2%),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강도’(27%),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21.9%) 순서의 응답율이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	108	29.2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81	21.9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강도	100	27.0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	26	7.0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	15	4.1
군복무자의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병행 추진	39	10.5
기타	1	0.3
합계	370	100.0

대체복무 신청의 허용 시점으로는 입대 전까지가 가장 높은 비율(79.2%)을 차지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	293	79.2
입대 후 복무 1/3 시점까지	25	6.8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	40	10.8
기타	12	3.2
합계	370	100.0

대체복무 지원자를 심사하는 적합한 방식에 대한 답변으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에 추가하여 대면심사를 포함한 것(68.9%)이 가장 많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합리적인 범위에서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이 길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	66	17.8
신청서 심사 (예 : 병역거부 사유서 등)	18	4.9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예 : 종교단체 또는 평화단체 가입증명서, 보증인 제도 등)	24	6.5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	255	68.9
기타	7	1.9
합계	370	100.0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 기관으로는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이 43.8%로 가장 많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 (예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등)	162	43.8
복무분야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부처 (예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30	8.1
심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	88	23.8
제도설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	82	22.2
기타	8	2.2
합계	370	100.0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심사 자로는 ‘법률 전문가’가 77.3%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 결과는 법률가와 법학계가 과대대표된 집단임을 감안해서 살펴봐야 할 듯하다. (3가지 선택)

구분	빈도(명)	비율(%)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	286	77.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정치학·사회학·심리학·역사학·철학·법학 등을 전공한 학계 전문가	205	55.4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체복무기관 관계자	117	31.6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135	36.5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대체복무제 관련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141	38.1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계자	205	55.4
기타	21	5.7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로는 치매 노인, 중증장애인의 사회복지분야 보조(76.2%), 안전사고 자연재해 지원(57.8%), 국민건강 보호 증진 업무 지원(41.4%) 순서로 나타났다.(3가지 선택)

구분	빈도(명)	비율(%)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구호·대응 지원	214	57.8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예방활동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소독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153	41.4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내 학습활동, 이동, 취식 등 활동 지원	92	24.9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활센터,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	75	20.3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282	76.2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지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업무	37	10.0
산림방재, 대기, 하천, 해양 오염방지 등 환경정화 및 보호, 감시업무 지원	97	26.2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119	32.2
기타	41	11.1

대체복무에 적합한 복무형태로는 ‘기관의 필요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서 합숙 또는 출퇴근’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48.1%).

구분	빈도(명)	비율(%)
합숙 복무	164	44.3
출퇴근 복무	26	7.0
배치된 기관의 필요 또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합숙 또는 출퇴근 복무	178	48.1
기타	2	0.5
합계	370	100.0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은 육군병사의 2배(47.3%)가 가장 많았고 1.5배 이하는 47%가 나왔다.

구분	빈도(명)	비율(%)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26	7.0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30	8.1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118	31.9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175	47.3
기타	21	5.7
합계	370	100.0

합숙 복무에 비교했을 때,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 1.5배가 19.5%가 줄어든 반면 2배는 18.1% 늘어났다. 특이점으로 기타가 16.2%나 되는데 대부분 2배를 초과한 기간을 제시하였다.

구분	빈도(명)	비율(%)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8	2.2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14	3.8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46	12.4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242	65.4
기타	60	16.2
합계	370	100.0

대체복무제도가 육군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택한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 (45.6%)이 군복무에 비해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군복무에 비해 국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이므로	5	1.4
군복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34	9.4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므로	164	45.6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121	33.6
대체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위한 기간 고려	20	5.6
기타	16	4.4
합계	360	100.0

주: 무응답 10명

대체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73%로 가장 많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예비군훈련까지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설계	52	14.1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 수행	270	73.0
민방위로 편입	42	11.4
기타	6	1.6
합계	370	100.0

2. 문항 간 교차 분석

1) 종교에 따른 교차 분석

전문가 조사 응답자중 약 절반(52.16%) 정도에 해당하는 종교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평균값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 정도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복무 기간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순으로 짧은 기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인식 정도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기타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없음	35	18.1	54	28.0	62	32.1	42	21.8	0	0.0	193	52.2
불교	6	22.2	10	37.0	7	25.9	4	14.8	0	0.0	27	7.3
개신교	24	25.0	21	21.9	29	30.2	22	22.9	0	0.0	96	26.0
천주교	12	22.2	8	14.8	25	46.3	9	16.7	0	0.0	54	14.6
합계	77	20.8	93	25.1	123	33.2	77	20.8	0	0.0	370	100.0

종교에 따른 대체복무 기간 선호도

	육군병사 (18개월)		공군병사 (22개월)		육군1.5배 (27개월)		육군2배 (36개월)		기타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없음	13	6.7	15	7.8	62	32.1	94	48.7	9	4.7	193	52.2
불교	1	3.7	2	7.4	8	29.6	15	55.6	1	3.7	27	7.3
개신교	8	8.3	8	8.3	28	29.2	44	45.8	8	8.3	96	26.0
천주교	4	7.4	5	9.3	20	37.0	22	40.7	3	5.6	54	14.6
합계	26	7.0	30	8.1	118	31.9	175	47.0	21	5.7	370	100.0

2) 나이에 따른 교차 분석

60대 이상이 병역거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며 50대 이하로는 나이가 많을 수록 병역거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복무 기간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30대의 경우 기타 의견이 많았고 기타의견은 주로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육군의 2배가 넘는 아주 긴 대체복무 기간들이 주를 이뤘다.

나이에 따른 병역거부 인식 정도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20대	3	27.3	2	18.2	2	18.2	4	36.4	11	3.0
30대	38	23.2	44	26.8	53	32.3	29	17.7	164	44.3
40대	15	13.0	32	27.8	41	35.7	27	23.5	115	31.1
50대	14	22.2	9	14.3	26	41.3	14	22.2	63	17.0
60대	7	43.7	5	31.3	1	6.3	3	18.8	16	4.3
70대	0	0.0	1	100.0	0	0.0	0	0.0	1	0.3
합계	77	20.8	93	25.1	123	33.2	77	20.8	370	100.0

나이에 따른 대체복무 기간 선호도

	육군병사 (18개월)		공군병사 (22개월)		육군1.5배 (27개월)		육군2배 (36개월)		기타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20대	1	9.1	0	0.0	6	54.6	4	36.4	0	0.0	11	3.0
30대	7	4.3	11	6.7	45	27.4	86	52.4	15	9.2	164	44.3
40대	10	8.7	11	9.6	36	31.3	55	47.8	3	2.6	115	31.1
50대	8	12.7	5	7.9	27	42.9	22	34.9	1	1.6	63	17.0
60대	0	0.0	3	18.8	3	18.8	8	50.0	2	12.5	16	4.3
70대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0.3
합계	26	7.0	30	8.1	118	31.9	175	47.3	21	5.7	370	100.0

제4절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분석 결과 요약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요약

전체응답자는 2008년 말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 이후 2009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1,856명으로 연령 분포는 21세~40세까지다(모집단의 약 37% 수준). 응답자의 99.1%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명(0.9%)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9.2%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재학 포함)이 19.8%, 대학교 졸업(재학 포함)이 18.8%의 비율로 나타났다.

병역거부 동기를 묻는 질문은 복수 응답을 가능하게 했다. 어떤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양심이 때로는 중첩되어 형성되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동기 기타 중 71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사유’보다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설명하고자 한 경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교적 사유’로 분류할 수 있다. 71건을 살펴본 결과 ‘종교적 사유’를 선택했을 경우에 맹목적인 신앙심을 가진 사람으로 비취질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종교적 사유	1645	88.6
정치적 이념	22	1.2
개인적 신념	1132	61.0
기타	73	3.9

개별문항 분석 - 본인이 수감될 시기에 대체복무제가 있었다면 신청했을까요?

응답자의 절대 다수(96.1%)가 대체복무제를 신청했을 것이라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아니다	6	0.3
별로 아니다	12	0.6
약간 그렇다	55	3.0
매우 그렇다	1783	96.1
합계	1856	100.0

개별문항 분석 - 대체복무제가 군복무자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자의 대부분(87.3%)이 대체복무제가 군복무자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아니다	68	3.7
별로 아니다	166	9.0
약간 그렇다	527	28.3
매우 그렇다	1095	59.0
합계	1856	100.0

개별문항 분석 -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74.9%)을 가장 많이 염려하였다.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에 대해 우려하는 응답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10.9%)나 전문가(23.5%)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염려되는 점이 없음	241	13.0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대체복무가 또 다른 처벌로 작용할 수 있음	1390	74.9
젊은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음	58	3.1
군복무자가 줄어들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0	0.0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음	107	5.8
군복무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	16	0.9
기타	44	2.4
합계	1856	100.0

개별문항 분석 - 대체복무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참고’(36.2%),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21.5%),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18.3%)의 순서로 중요성에 대해 답했다.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참고’ 응답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4.5%)나 전문가(4.1%)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구분	빈도(명)	비율(%)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	399	21.5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244	13.1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강도	79	4.3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	339	18.3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	671	36.2
군복무자의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병행 추진	62	3.3
기타	62	3.3
합계	1856	100.0

개별문항 분석 - 대체복무 신청은 언제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다수(76.9%)가 입대 전까지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	1427	76.9
입대 후 복무 1/3 시점까지	39	2.1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	330	17.8

기타	60	3.2
합계	1856	100.0

개별문항 분석 - 대체복무 지원자를 심사하는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많이 선택된 심사방식은 대면심사를 포함한 것(4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33.4%)가 차지했다.

구분	빈도(명)	비율(%)
합리적인 범위에서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이 길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	193	10.4
신청서 심사 (예 : 병역거부 사유서 등)	130	7.0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예 : 종교단체 또는 평화단체 가입증명서, 보증인 제도 등)	619	33.4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	890	48.0
기타	24	1.3
합계	1856	100.0

개별문항 분석 -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구(46.8%)와 복무분야 관련 행정부처(34.5%), 두 가지를 뚜렷하게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방부 또는 병무청은 가장 낮은 선호도(1.8%)를 보였다. ‘국방부 또는 병무청’을 선택한 비율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6.6%)나 전문가(22.2%) 설문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 (예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등)	869	46.8
복무분야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부처 (예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641	34.5
심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	268	14.4
제도설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	33	1.8
기타	45	2.4
합계	1856	100.0

개별문항 분석 -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3가지 선택)

군 관계자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았다(12.5%). 병역판정검사 대상자(56.1)나 전문가(55.4%) 설문조사 결과와는 대조되는 응답률이다.

구분	빈도(명)	비율(%)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	1411	76.0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정치학·사회학·심리학·역사학·철학·법학 등을 전공한 학계 전문가	728	39.2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체복무기관 관계자	1535	82.7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344	18.5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대체복무제 관련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1276	68.8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계자	232	12.5
기타	42	2.3

개별문항 분석 -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3가지 선택)

사회복지 시설 운영업무 지원(60.1%)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활동 지원(57%)에 이어서 교정 시설 행정업무 지원(52.9%)이 선호되는데,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의 경우에는 다른 업무 분야와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익숙한 업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빈도(명)	비율(%)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구호·대응 지원	587	31.6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예방활동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소독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217	11.7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내 학습활동, 이동, 취식 등 활동 지원	1057	57.0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활센터,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	1115	60.1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814	43.9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지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업무	215	11.6
산림방재, 대기, 하천, 해양 오염방지 등 환경정화 및 보호, 감시업무 지원	545	29.4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982	52.9
기타	36	1.9

개별문항 분석 - 대체복무에 적합한 복무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반수 이상의 인원(59.3%)가 기관의 필요나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복무 형태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구분	빈도(명)	비율(%)
합숙 복무	229	12.3
출퇴근 복무	514	27.7
배치된 기관의 필요 또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합숙 또는 출퇴근 복무	1100	59.3
기타	13	0.7
합계	1856	100.0

개별문항 분석 -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육군 병사의 1.5배’가 40.2%,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32.9%의 순서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610	32.9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339	18.3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747	40.2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113	6.1
기타	47	2.5
합계	1856	100.0

개별문항 분석 -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육군 병사의 1.5배’(39.2%), ‘육군 병사의 2배’(25.1%)의 순서로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구분	빈도(명)	비율(%)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389	21.0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226	12.2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727	39.2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465	25.1
기타	49	2.6
합계	1856	100.0

개별문항 분석 - 육군 병사보다 긴 기간을 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체복무제도가 육군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택한 이유로는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라는 답변이 48.3%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구분	빈도(명)	비율(%)
군복무에 비해 국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이므로	6	0.4
군복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44	3.1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므로	368	25.7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691	48.3
대체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위한 기간 고려	250	17.5
기타	71	5.0
합계	1430	100.0

개별문항 분석 -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수행한 사람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거나 민방위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44.3%와 42.4%로 비슷하게 나왔다.

구분	빈도(명)	비율(%)
예비군훈련까지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설계	216	11.6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 수행	823	44.3
민방위로 편입	787	42.4
기타	30	1.6
합계	1856	100.0

2. 양심적 병역거부자 FGI 조사 개요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 1856명 중 99.1%가 여호와의증인 신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특정한 종교 신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보편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바 대체복무제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특정 종교 신자가 과잉대표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설문조사상에서는 과소대표되고 있는 비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체적인 양상 등을 알아보고자 했다. 설문조사만으로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현재 여호와의증인 신자로 대표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수치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다양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FGI의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수감생활을 망라하였지만 특히 대체복무 영역, 대체복무제도 하에서 복무자의 인권보장 방안, 예비군 대체복무,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인 질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3-2 FGI 질문 목록

문항구성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
② 병역거부 당시 주변의 반응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③ 수감생활 당시 겪은 어려움
④ 대체복무제 설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⑤ 대체복무제의 군사적/비군사적 복무분야의 기준에 대한 의견
⑥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차별 경험 여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한 전망

조사대상자는 평화운동 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소개로 알게 된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중에

서 다양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이들 4명을 선정했다. 3명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선정했고 1명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로 선정했다.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A	B	C	D
나이	36	32	32	30
직업	대학원생	문화예술계	영업직	무직
병역거부 사유	정치적 사유 (대학생 운동권)	정치적 사유 (아나키즘)	종교적 사유 (기독교 평화주의)	종교적 사유 (기독교 평화주의)
병역거부 시기	2011년 11월	2010년 11월	2013년 10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구속년월	2012년 2월	2011년 2월	2014년 4월	해당없음
석방년월	2013년 4월	2012년 4월	2015년 7월	해당없음
기타				군 제대 후 예비군 병역거부

FGI는 9월 14일에 서울 모처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조사 횟수는 1회였다. 질문과 답변을 명확하게 주고 받기 위해 관련 활동을 하는 전문가 1명을 보조로 배석했다. 또한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을 한 뒤에 녹취록을 작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동기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하였지만 답변하는 대상자의 이야기의 흐름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대상자의 개입도 허용하였기에 순서를 고집하지 않고 개방형 질문으로 물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FGI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본문에서 별도로 인용하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5절 소결

병역판정대상자집단에서는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으며(63.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58.2%). 반면, 전문가집단은 병역거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으며(54%), 대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98.1%) 매우 잘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64.9%나 되었다. 전문가집단은 종교에 따라 인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개신교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병역이행의 부담요인으로서는 ‘경력단절 및 자기계발 제한’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집단은 ‘육설, 구타, 성폭력 같은 가혹행위’와 ‘권위적인 병영문화’를 꼽은 반면, 병역판정대상자집단은 ‘부족한 봉급 및 경제활동 제한’과 ‘열악한 생활환경과 사생활 미보장’을 꼽았다.

대체복무제가 군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전문가63.5% 병역판정56% 병역거부자87.3%), 전문가집단과 입영대상자집단은 공통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

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집단은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74.9%). 전문가와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들은 대체복무를 설계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고(전문가29.2% 병역판정33.1%), 병역거부자들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특징이 있다(36.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집단은 대체복무 신청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의 비율이 46.3%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잘 모를수록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의사가 높았다. 입영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것이 대체복무로 과도한 인원이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집단은 대체복무가 있었다면 신청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96.1%).

신청시기로는 입대 전까지가 가장 많았고, 심사방식으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심사기관은 독립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심사위원으로는 전문가집단과 병역판정대상자집단에서 법률 전문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순서로 전문가집단은 학계전문가와 군 관계자를, 병역판정대상자집단은 군관계자와 관련부처 공무원 순서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집단은 대체복무기관 관계자를 1순위로 꼽았다.

대체복무분야로는 난이도 높은 사회복지분야와 소방·재난·구호 대응분야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복무형태는 배치된 기관의 필요 또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합숙 또는 출퇴근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복무기간에서는 각 집단간 차이가 크다. 전문가집단은 합숙과 출퇴근에 상관없이 육군복무기간의 2배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병역거부자집단은 합숙과 출퇴근에 상관없이 1.5배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했다. 병역판정대상자집단은 합숙의 경우 동일기간(38.8%), 출퇴근할 경우 2배(28.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긴 기간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무기간이 더 길어야하는 이유로는 전문가집단과 병역판정대상자집단은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병역거부자집단은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더 길게 복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세 집단이 일치했다(전문가 73% 병역판정 52.3% 병역거부자 44.3%).

그동안 실시되어온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우려된 바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모색하는 데 여론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로 참고하고, 인권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작업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4장 대체복무 도입 방안 연구

제1절 대체복무제 검토 기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져왔지만 그에 관한 논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여부로 국한되어왔다.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논의의 이러한 양상은 더욱 고착되었다. 2007년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발표로 인해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백지화되면서 사회적 논의는 10년이 넘게 합법성 여부로 제한되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도입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러한 권리가 ‘인류 보편의 이상’과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서 현대 안보개념은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주목하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사고하던 과거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탈피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대안적인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대체복무제가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는 소극적인 자유 보장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이라는 취지를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안적인 안보개념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국방의 의무와 인권보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준은 원칙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와 시민사회에 제출된 대체복무제에 대한 안을 검토하거나 대안적인 안을 마련할 때 구체성의 면에서 한계가 있다. 본 조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입각하여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보장과 대안적인 안보에 대한 보장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1. 공공성: 사회적 필요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대체복무제는 공익에 부합하며 기존의 국방 영역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범죄나 일가족 자살 등 사회적 공공성이 약해지면서 사회적 분리와 격차가 조장하는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안보(security)의 어원이 ‘불안-걱정(cura)’이 ‘없음(se)’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영역의 업무는 대안적인 안보 업무라고 볼 수 있다.

대체복무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시민들의 사회적 필요가 나타나는 영역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영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더불어 살 수 있을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이를 통해 국가 행정권력의 집중과 확대에 의한 전제적 통치와 시장의 자유방임적 이윤추구가 야기하는 위험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2. 독립성: 군으로부터 독립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그간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부차적인 권리로 밀려났던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군사적 업무에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운영에서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의 관리와 감독을 맡는다면 대체복무 업무 자체가 군사적 성격을 가진 군사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국방부나 여타의 군사조직이 대체복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형식적인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체복무자가 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를 나르거나 군부대의 유지와 보수를 하는 업무에 투입된다면 군사적인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는 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군과 계약한 민간단체를 통해서 군사적인 업무에 기여하게 되는 것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양심을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대체복무 업무가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인 독립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3. 형평성: 징벌이 아닌 대체복무의 기능을 고려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형평성은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검토 기준이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대체복무의 처우와 강도가 군복무에 비해서 혹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군복무자들 사이에서도 부대나 보직에 따라서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맞출 수 없는 것

이 현실이다.¹³ 대체복무의 업무와 성격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군복무에 비해서 혹독한 조건을 최우선 기준을 삼는 것은 군복무자들의 인권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고통의 경쟁’에 불과하다. 군복무와 대체복무가 제각각 사회적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하는 형평성은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군복무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주목한다. 최근의 군인권 정책은 군복무 기간과 처우 등을 개선하여 ‘군복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역시 이와 같은 군인권 정책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대체복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제2절 각 쟁점별 검토 및 입법 방향 제시

1. 대체복무 기간

1) 현재 제안되는 대체복무 기간

(1) 국회 발의 법안에서 제시하는 분야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대다수(8건 중 7건)는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에 비해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경우만 대체복무기간을 육군의 2배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발의된 법안 중 대다수(4건 중 3건)는 대체복무기간을 육군의 2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이 공군의 2배인 3년 8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

13 군복무자들 간에도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은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이전에도 군인권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이미 제기되었다. 2018년 3월 국방부에서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어났다.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소장은 라디오 프로그램 대담에 출연해서 전방과 후방의 불평등을 이유로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에 반대했다. 서울과 대구 등 후방에선 외출 후에 갈 곳이 많은데 전방에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현정의 뉴스쇼] 軍 일과 후 외출 "군대는 감옥 아냐" vs "나라는 누가 지켜"', CBS, 2018.3.29. 한편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시범시행한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일과 후 외출제도를 이용을 한 병사들은 육·해·공군 13개 부대에서 1만3500여명(1일당 587명)이었다. “많이 바뀌었네” 평일외출에 스마트폰도…요즘 병영풍경”, 뉴스1, 2018. 9.25.

복무 관련 법안의 복무기간만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1 20대 국회 발의 대체복무제 법안의 복무기간 규정

	전해철안	박주민안	이철희안	김중로안	이종명안	이용주안	김학용안
발의일	2016년 11월 15일	2017년 05월 31일	2017년 05월 31일	2018년 08년 10일	2018년 08월 14일	2018년 8월 17일	2018년 8월 20일
복무기간	육군 1.5배	육군 1.5배	육군 2배	육군 2배	육군 2배	육군 2배	3년 6개월 (공군 2배)

지금까지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서 복무기간을 군복무에 비해서 길게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군복무에 비해서 대체복무기간을 1.5배~2배 가량 길게 설정한 최우선적인 이유는 군복무자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완화해주기 위한 형평성 고려라고 짐작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에서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77호를 참조하여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군복무의 1.5배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제도 도입 초기에는 1.5배로 하되 제도가 도입되어 안정되면 복무기간과 조건을 점차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복무기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시민사회안’은 대체복무기간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에 비해서 1.5배 이내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국내외 인권기준이 현역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5배 복무기간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근거다. ‘시민사회안’은 만일 현역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하려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염려된다면 제도 도입 초기 신청인원 제한(연 1천 명 수준)을 둘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2) 여론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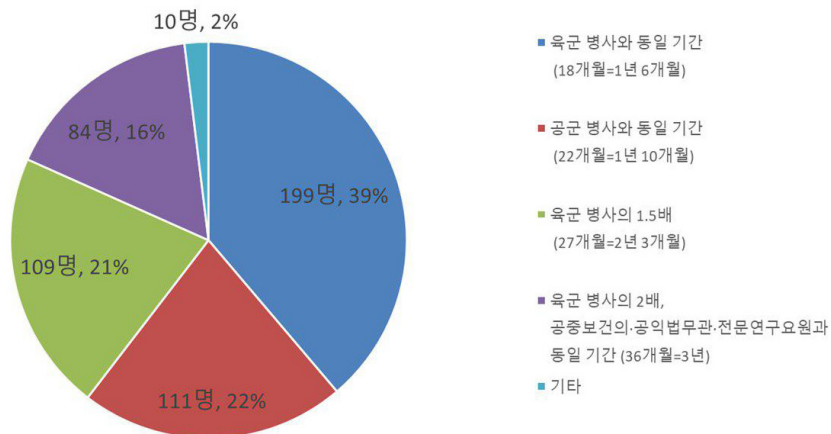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입영대상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가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정대현 등(2008)은 포커스그룹 토론을 통해서 군복무의 여러 속성 중 복무기간을 군 복무방식 지원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로 제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2017)의 인권보고서는 2001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과

반수의 응답자가 '복무기간이 주는 피해'를 기피의 이유로 응답한 결과를 인용하여 복무기간이 대체복무가 군복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요소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본 조사보고서가 병역판정검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응답자(38.8%)가 합숙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대체복무기간으로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18개월=1년 6개월)”을 선택했다.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22개월=1년 10개월)”을 선택한 응답자도 전체의 21.6%, “육군 병사의 1.5배(27개월=2년 3개월)”를 선택한 응답자 21.2%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합숙복무가 아니라 출퇴근복무를 할 경우는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36개월=3년)”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큰 비율(28.4%)을 차지했다. 이는 복무기간 만크이나 합숙여부 등 복무조건이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림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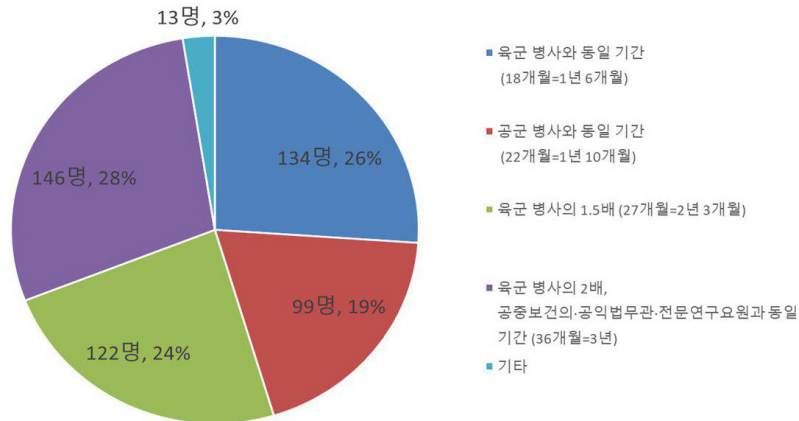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주: 무응답 14명

그림4-2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병역판정검사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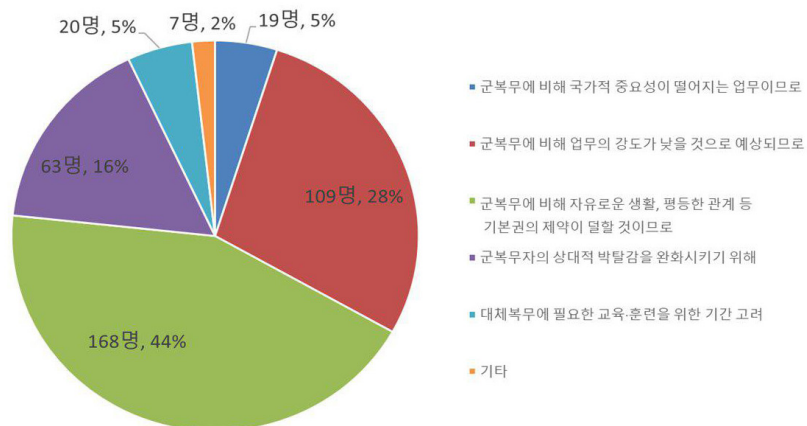


주: 무응답 13명

입영대상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복무기간만큼이나 복무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은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드러난다.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더 길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자들 중 절반 가까운 43.5%는 그 이유로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므로”를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군복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가 28.2%를 차지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기본권 보장, 업무강도, 합숙여부 등 복무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림4-3

대체복무제도가 육군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택한 이유



합숙 복무, 출퇴근 복무 모두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복무로 응답한 사람은 120명이고, 무응답자 21명을 포함하여 141명을 분석에서 제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의 응답은 전문가 집단이나 병역거부 당사자들의 설문조사결과와 대조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의 경우 절반 가까운 응답자(47.3%)가 합숙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으로 “육군 병사의 2배(36개월=3년)”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31.9%)가 “육군 병사의 1.5배(27개월)”을 선택했다. 반면 “육군병사와 동일기간”을 선택한 응답자는 7.0%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설문조사결과에 비해서 매우 긴 복무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복무기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육군 병사의 2배(36개월=3년)”를 선택한 응답자가 과반을 넘는 65.4%로 나타났다.

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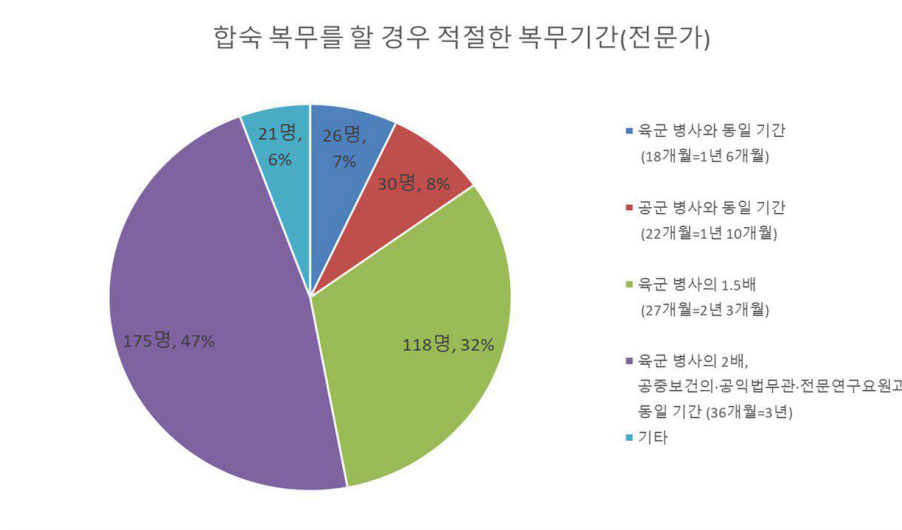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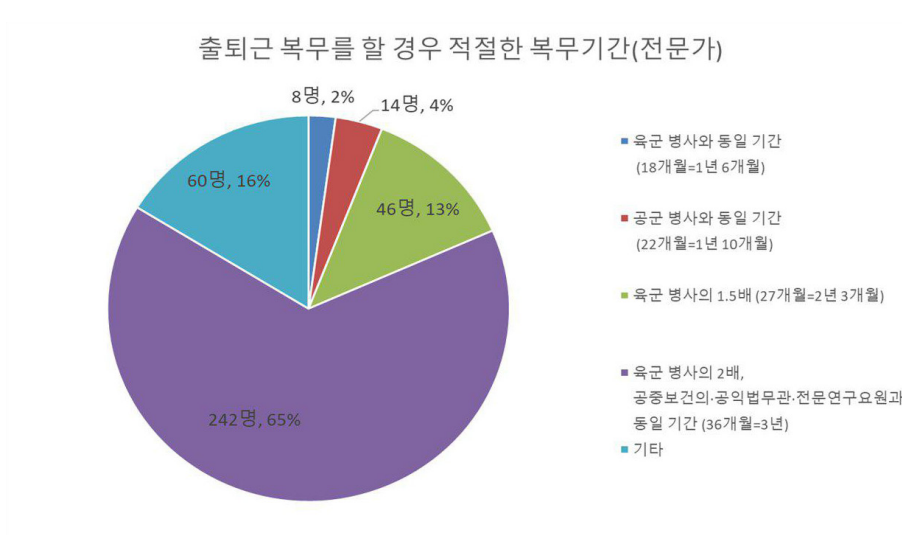


그림 4-5



병역거부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역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 비해서 긴 복무기간이 적절하다고 선택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병역거부 당사자들 중 가장 많은 응답자(40.2%)가 “육군 병사의 1.5배(27개월)”를 선택했다.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18개월)”은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32.9%)을 얻었다.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에서도 “육군 병사의 1.5배(27개월)”는 가장 많은 응답(39.2%)을 얻었다. 다만 병역거부 당사자들은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육군 병사의 2배(36개월=3년)”(25.1%)를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18개월)”(21.0%)에 비해서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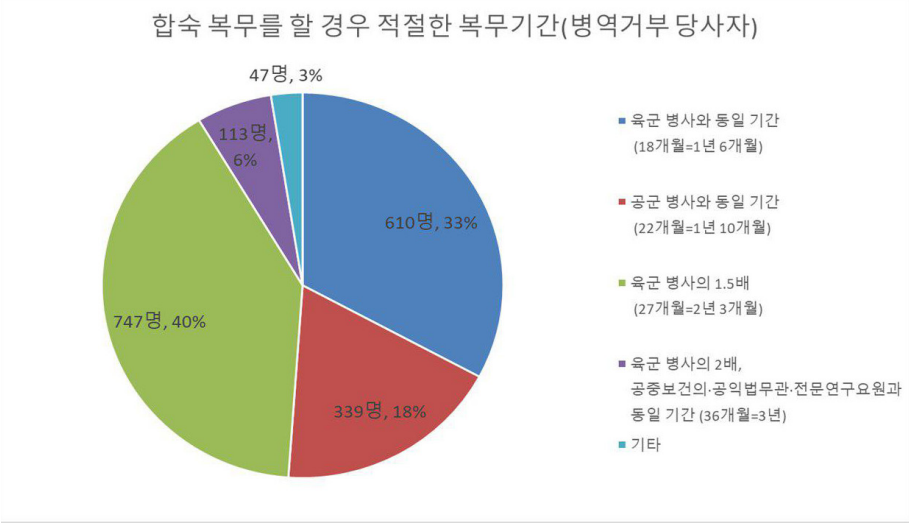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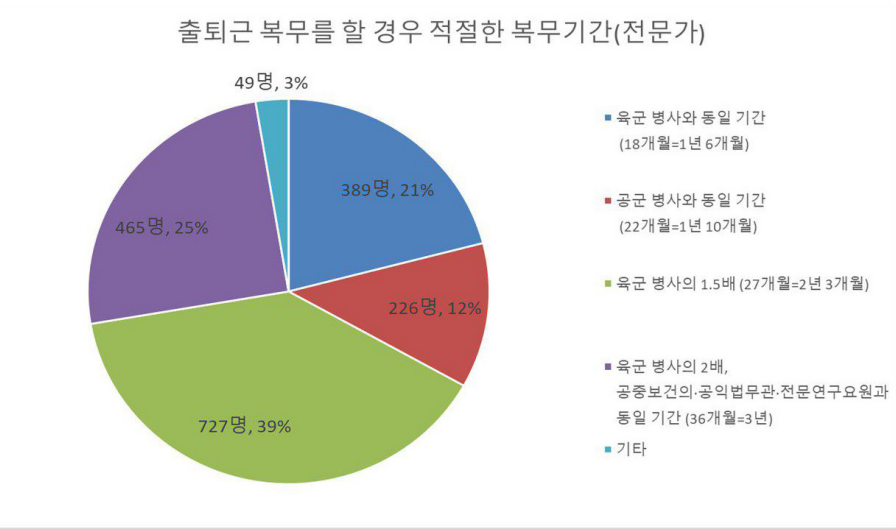


그림 4-7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 비해서 전문가 집단과 병역거부 당사자들이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흥미로운 결과다. 한편, 이처럼 대조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와 관련해서 육군 병사보다 긴 기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문항의 응답 역시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병역거부 당사자들의 설문조사결과에서 육군 병사보다 긴 기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를 선택한 응답이 33.6%와 48.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의 경우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를 선택한 응답이 16.3%로 나타나서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가나 병역거부 당사자들이 군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예상하여’ 이를 대체복무기간으로 상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복무기간이 아니라 복무 중에 겪게 될 자유로운 생활이나 평등한 관계 등의 기본권 제약에 관심을 더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나 병역거부 당사자들이 군복무자들의 ‘예상된 상대적 박탈감’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체복무기간을 길게 산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정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대체복무기간이 아니라 기본권 제약 등 복무환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더 긴 대체복무기간을 선택하고,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더 짧은 복무기간을 선택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으로 “매우 부정적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대체복무기간으로 군복무기간의 2배(36개월)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1.5배(27개월)를 선택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으로 “매우 긍정적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대체복무기간으로 군복무기간과 동일한 18개월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공군의 복무기간과 같은 22개월을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했다.

표4-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과 합숙복무 시 적절한 복무기간 간 상관관계

		합숙복무기간					전체
		18개월	22개월	27개월	36개월	기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	매우 부정적	28	19	35	38	2	122
	약간 부정적	71	50	45	24	1	191
	약간 긍정적	69	30	25	14	6	144
	매우 긍정적	19	7	2	4	0	32
전체		187	106	107	80	9	489

상관관계 분석결과 Somers의 d 값이 -0.220, Kendall의 타우-c 값이 -0.209로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과 합숙복무 시 적절한 복무기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3) 내용 및 쟁점 정리

유엔 산하 국제인권기구들은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대체복무제가 징별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989년 인권위원회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에 상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대체복무가 원칙적으로 공익에 부합하고 징별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 형식으로서 비전투적이거나 민간의 성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989/59). 1998년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헌장(Magna Carta)’이라고 불리는 77호 결의에서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별적인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1998/77).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1999년 *Foin v. France* 사건에서 대체복무기간을 단지 신청자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두 배로 설정한 것은 징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대체복무제의 기간을 군복무에 비해서 더 길게 규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복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복무의 특수한 성격이나 특별한 훈련의 필요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objective and reasonable criteria)일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3년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의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에 비해서 각각 1.7배와 2배인 것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별적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CCPR/CO/79/RUS;COPR/CO/77).

2006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제출된 보고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긴 경우에, 그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로 대체복무 업무가 군복무 업무에 비해서 덜 부담스럽거나, 군복무의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반면에 대체복무의 근무시간은 고정되어 있다거나, 대체복무의 생활환경과 주거조건이 군복무에 비해서 낫다는 식의 기준들이 고려될 수 있다(E/CN4/2006/51). 1984년에 독일에서 대체복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1/3 이상 길게 다시 증가시켰을 때 독일 정부가 것처럼 더 긴 복무기간의 근거로 군복무가 대체복무에 비해 업무강도가 강하고 예비군훈련 의무도 있음을 제시했던 것도 참조할 수 있는 사례다(문수현 2013; Jurfen Kuhlmann and Ekkehard Lippert 1993). 이와 반대로 프랑스에서처럼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두 배나 길게 요구하면서 복무의 특수한 성격, 특별한 훈련의 필요, 업무시간의 강도와 유동성, 복무환경과 주거조건, 예비군 업무 등과 같은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책에는 징별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은 복무기간을 군복무에 비해서 길게 설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 법안은

군복무자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1.5배~2배가량 길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하는 형평성은 대체복무자가 군복무자와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복무제의 성격이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군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복무기간 단축을 논의할 때도 핵심적인 정책 목표가 ‘군복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체복무기간 역시 형평성을 맞추어서 ‘대체복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의 1.5배 이내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2005; E/CN4/2006/51))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의 1.5배 이내로 잡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는 1.7배나 2배 등의 대체복무기간을 지닌 경우에 대해서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2배나 그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과 시민사회안의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1.5배 이내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복무기간을 ‘1.5배 이내’로 명시할 경우 국제인권기준에서 합리적인 대체복무기간으로 받아들이는 최대치에 기준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추후에 대체복무제가 안정되어감에 따라서 대체복무기간을 줄여나갈 때도 법안에 명시한 기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시민사회안이 제시하듯이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의 ‘1.5배 이내’로 원칙을 삼되 기간은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편이 적절하다.

한편, 대체복무기간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더욱 보장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키프로스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의 1.5배를 넘는 식으로 징벌적인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유엔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권고를 받아왔다(E/CN.4/DEC.1997/121; Conclusion XVI-Vol. 1(2002)) 키프로스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권고를 반영하여 2007년에 군복무를 25개월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민간복무를 34개월(군복무의 1.36배)로 줄였다. 그러나 유럽사회권위원회에는 이러한 규정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단순한 차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이러한 처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도 이러한 차별적 처우가 언급되자 키프로스 정부는 2016년 군복무를 24개월에서 14개월로 축소하고 민간복무를 최대 19

개월로 축소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키프로스의 경우 군복무는 합숙인 반면에 민간 복무는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10개월에 가까운 차이는 징벌적인 규정으로 간주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온 역사가 오래된 만큼 차별적인 시선이 뿌리가 깊다. 국제인권기준이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의 1.5배 이내라고 제시할 때 ‘군복무의 1.5배’라는 수치는 최소한의 인권보호선이지만 한국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에서 이것은 마치 고정적인 기준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에서 1.5배 이내로 권고안을 발표해도 언론매체에서는 이를 “국가인권위 1.5배 바람직”과 같은 제목과 함께 이러한 기준을 마치 고정적인 것처럼 보도한다. ‘군복무의 1.5배’가 인권보장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선이지만 이것이 마치 합리적인 기준처럼 보도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과 카프로스 사례를 참조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동등성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소결론

국회에 발의된 전해철, 박주민 의원의 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의 1.5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기준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다. 반면에 이철희, 김중로, 이종명, 이용주, 김학용 의원안은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나 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대체복무자의 진정성만을 시험하려 한다는 점에서 징벌적인 성격이 명확하다. 대체복무기간은 군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너무 길게 규정하지 않는 대신에 대체복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복무자 개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안처럼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의 1.5배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현역복무와 동등한 복무로서 인정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규정은 현역복무에 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만일 합숙 등 대체복무형태가 현역복무와 비슷하다면 굳이 ‘군복무의 1.5배’에 맞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복무를 위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거나 대체복무가 현역복무보다 편하게 여겨져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인원이 실제로 급증하는 등의 근거가 분명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에 예외적으로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복무기간에 비해서 예외적으로 길게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안에는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복무자에 준한다는 원칙과 함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에는 복무기간을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체복무 영역

1) 현재 제안되는 대체복무의 분야들

(1) 국회 발의 법안에서 제시하는 분야

사회서비스지원분야

-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업무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
-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
- 소방·재난·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
- 보훈병원에서의 지원 업무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제대군인 지원 업무

군 관련 분야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사자유해 등의 조사·발굴 업무

(2)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분야¹⁴

- 치매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의무소방 영역¹⁵

(3) 국방부안

14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 부대 내 비전투복무로 지뢰제거, 전사자유해발굴 등을 제시하였으나 법안에서 제시하는 분야에 이미 포함되어있어 추가하지 않음. 시민사회안에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2장 1절 참고.

15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2018.7.19.

- 국방부는 2007년 병역이행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 범주에 포함하여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차이를 두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장애인 목욕수발, 정신적 심리적 불편을 수반하는 치매노인 수발, 위험도가 높은 전염병이나 안전사고 관련 업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기자회견을 통해 교도소, 소방, 사회복지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대체복무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

(1) 기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체복무 분야 선호도

그동안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관련한 여론조사는 찬반을 위주로 한 조사가 중심이라 구체적인 복무분야까지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07년 국방부가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도에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부터 대체복무의 분야를 묻는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2008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진행한 전문가 의식조사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근무가 76.3%로, 공공기관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¹⁶. 같은 해 병무청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장애인수발 등 높은 난이도 업무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수준은 27.1%로 위험도 높거나 국민협오시설 15.7%보다 높게 나타났다¹⁷.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7월 정례조사에서 대체복무 적정기간과 함께 대체복무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돌봄 등 복지시설이 42.3%로 가장 많았고 위험지역 경비, 화재감시 등 치안분야가 두 번째,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세 번째, 정신병원, 결핵 한센 등 특수병원 그리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그 다음 순이었다¹⁸.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 여론조사기관에

16 양로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 76.3% /일정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등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근무 12.5% /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 11.2% (2008년 11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2008.11.)

17 장애인수발 등 높은 난이도업무 55.3%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수준 27.1% /화재진압 등 위험도가 높거나 화장장 등 국민협오시설 15.7% / 모름.무응답 1.9% (2008년 11월 종교적사유 등에 대한 입영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리서치앤리서치, 2008.11.)

18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돌봄 등 복지시설 42.3% /위험지역 경비, 화재감시 등 치안분야 21.8%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9.7% /정신병원, 결핵 한센 등 특수병원 8.0% /교도소 등 교정시설 7.3% / 모름 무응답 8.8% (2018년 7월 정례조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례조사, 2018.7.)

의뢰한 조사는 여러 영역의 선호도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지뢰제거, 전사자유해발굴, 보훈병원 도우미에 대해 각각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¹⁹되어 여론이 선호하는 영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10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련 업무 중 난이도가 높은 분야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대체복무 분야 선호도

여론을 파악하기위해 실시한 설문시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조사했다. 가장 폭넓게 사회서비스분야를 포괄하고있는 사회복지제도의 기본분야(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행정)를 바탕으로 난이도를 고려하여 8개의 구체적인 항목을 구성하여 분야와 업무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비전투복무는 군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병역거부자그룹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선택가능한 분야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항목에서 제외했다. 기타의견으로 지뢰제거를 제안한 응답자도 일부 존재했다.

설문 세부항목

- ①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구호·대응 지원
- ②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예방활동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소독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 ③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내 학습활동, 이동, 취식 등 활동 지원
- ④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활센터,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
- ⑤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 ⑥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지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업무
- ⑦ 산림방재, 대기, 하천, 해양 오염방지 등 환경정화 및 보호·감시업무 지원
- ⑧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 ⑨ 기타

19 부대 내 비전투복무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 민통선 내 지뢰제거 찬성 63.9%, 반대 25.4% 잘모르겠다 10.7%, 참전용사 유해발굴 찬성 78.9% 반대 14.2% 잘모르겠다 6.9% / 민간영역 복구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 국가보훈병원 도우미 찬성 45.7%, 반대 27.4%, 잘모르겠다 15.9% (대체복무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공정, 2018.8.)

표4-3 대체복무 분야와 업무 선호도 집단 간 비교

선호도	입영대상자	전문가	병역거부자
①소방·재난·구호대응 지원	1순위	2순위	5순위
②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4순위	3순위	7순위
③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	3순위	6순위	2순위
④사회복지시설업무지원	6순위	7순위	1순위
⑤높은 난이도 사회복지분야 보조	2순위	1순위	4순위
⑥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	8순위	8순위	8순위
⑦환경정화·보호·감시업무 지원	7순위	5순위	6순위
⑧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5순위	4순위	3순위

대체복무 분야에 대한 각 집단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입영대상자집단은 소방·재난·구호 대응 분야가 1순위, 2순위는 높은 난이도의 사회복지분야, 3순위는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분야로 나타났고, 전문가집단은 1순위로 높은 난이도의 사회복지분야, 2순위로는 소방·재난·구호 대응 분야, 3순위는 국민건강보호·증진 분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는 난이도 높은 사회복지분야와 안전분야가 서로 순서만 다르다.

병역거부자집단의 선호도는 이 두 집단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순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업무지원 분야, 2순위는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분야, 3순위는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분야로 나타났다. 병역거부자집단은 대체복무제가 있다면 복무했을 당사자로,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감당시의 경험이나 사회복지제도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있어 어떤 업무를 맡게될지 구체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자살예방관련 분야가 가장 낮은 이유는 사회적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전문영역이라 구체적인 업무를 떠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체복무 시행시 복무분야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체복무 분야 선호도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표4-4 분야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체복무 분야 선호도

고려지점 “분야”-선호도 교차분석	입영대상자	전문가	병역거부자
①소방·재난·구호대응 지원	1순위	5순위	5순위
②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5순위	6순위	7순위
③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	3순위	2순위	1순위
④사회복지시설업무지원	4순위	4순위	2순위
⑤높은 난이도 사회복지분야 보조	2순위	1순위	3순위

⑥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	7순위	7순위(공동)	8순위
⑦환경정화·보호·감시업무 지원	6순위	3순위	6순위
⑧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8순위	7순위(공동)	4순위

입영대상자집단은 안전과 복지분야를 선호하는 것은 차이가 없으나 교정시설 행정지원 분야가 가장 후순위로 밀려났다. 전문가집단은 난이도 높은 사회복지분야를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전체와 같았고, 안전과 건강보다는 교육과 환경분야의 선호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집단에서도 교정시설 행정지원 분야는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났다. 병역거부자집단은 전체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교정시설 행정지원 분야보다 난이도에 상관없이 사회복지 관련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3) 각 분야별 검토

(1) 사회서비스지원 분야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간영역에 맡겨두어서는 해소되기 어려운 여러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내에서 여러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다.

가) 세부 분야 및 복무기관

세부분야

-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
-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지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업무
-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활센터,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
-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예방활동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소독 등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업무 지원
-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보훈병원 도우미
-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내 학습활동, 이동,

취식 등 활동지원

- 산림방재·녹지정화, 하천·해양·대기·토양 등 오염방지 등 환경정화 및 보호, 감시업무 지원
-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구호 및 대응업무 지원

복무기관

- 국공립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안심센터, 탈시설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공공의료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보훈병원 등 특수목적병원, 결핵·정신 등 특수질환병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국립검역소,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교육청, 특수학교, 소방서, 지자체 등

나) 사회적 필요성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가뭄, 폭염,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많아져 일상에서 안전과 삶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를 집중정비하고 재난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등 국가차원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치매환자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의 15%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치료와 간병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며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돌봄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인 고립 등으로 인한 동반자살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돌봄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노인 빈곤문제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인돌봄과 관련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세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핵심국정 목표로 삼고 이에 따른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선정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던 방식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적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와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경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관련 인력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나 제한된 자원과 인력의 한계로 서비스 수요와 공급 인력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검토

사회 문제로 인한 위험과 불안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분야는 수요가 있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국가적, 사회적 필요가 반영된 정책방향이 실현되기 위해 인적 인프라도 확충되어야하는 정책수요와도 맞는다. 사회서비스분야의 종사인력은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젊은 남성인력이 투입된다면 돌봄이나 양육에서 필요로 하는 육체적 노동을 지원할 수 있고 균형적인 성역할 모델을 탐색할 수 있는 등 좀더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확충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고(박문수 2009), 더불어 환자나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분야를 경험하게 되는 남성이 많아지면서 젠더 관계의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인 만큼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위한 준비과정이 필수적이다. 대상자의 특성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배경 및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을 경우 직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일수록 비숙련인력의 충분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문인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대체복무자가 인력난 해소와 비용절감의 관점에서 활용되었을 경우 전문인력의 충원을 방해하게 되어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사회복무제도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도록 특기와 적성을 적극 고려한 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완책이 병행된다면 대체복무자들이 사회서비스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2) 국가행정정보조 분야

가) 세부 분야 및 복무기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무보조,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 복무기관 :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정시설 등

나) 사회적 필요성

국방부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정분야를 복무기관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고, 교정분야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해 대체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²⁰.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때 기본적인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공무원이 다른 중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 이전에는 국가행정기관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자생적 수요가 아니라 방위병 폐지로 발생한 잉여자원 해소목적으로 도입된, 즉 복무분야의 필요가 아니라 공급하는 쪽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무분야와 관련된 별다른 교육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재정비와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사회복무제로 편입되었다. 공익근무요원은 기존 행정업무 분야에서 단순 경미한 업무보조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우선배치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박권구 2015; 김신숙·박형준 2016) 사회복무 분야 중 행정분야의 복무인원은 줄여나가는 추세이다.

다) 검토

행정정보조업무는 사회구성원을 직접 대면하는 사회서비스업무와는 달리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업무는 어떤 일든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하지만, 업무의 중요도나 정보접근, 보안 등의 문제로 실제 행정정보조업무로 할 수 있는 일은 복사, 물품운반·분류 및 정리, 청소, 정리정돈, 쓰레기 정리 등의 일이 대부분이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재소자를 대면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교정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FGI를 통해 교정시설

20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방부·법무부·병무청, 2018. 10.4.

에서 교도관을 보조하는 업무(보안과, 의무과, 구매, 영치, 소지 등)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행정보조업무에 대해 가진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재소자들의 인권증진이나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업무가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정행정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강화하게 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다음은 그에 해당하는 FGI 응답자의 답변이다.

A: 교도관 중에서도 인권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 재소자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병역거부수감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었다. 가석방을 위한 근무평점을 교도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대체복무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B: 사동소지는 모든 사동의 일이 끝나야 마무리가 되어서 실제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주말에도 쉴 수 없었다. 교도관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했다.

C: 지금 한국 교정의 기본마인드가 징벌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돕게 되는 것이다. 교도관과의 위계가 명확하고 권력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대체복무를 하며 만나도 그런 관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D: 교정시설 행정보조가 나온 맥락이 합숙이라는 복무형태를 정해놓고 감당가능한 분야를 찾아보니 나온 행정편의적인 것이고, 그런 시각 자체가 징벌적이다. 합숙이라고 해서 24시간 노동을 시키지 않도록 휴가나 휴식시간, 일과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고, 교도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도 필수다.

교정시설 행정보조의 업무가 실제로 재소자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군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3) 비전투복무 분야

가) 세부 분야 및 복무기관

- 세부분야 : 지뢰제거, 전사자유해발굴 등
- 복무기관 : 부대 내 복무 또는 외부의 별도 합숙시설

나) 사회적 필요성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고, 현재 남북 간 협의 중인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DMZ 내 6·25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문화재 공동연구, 남북관리구역 확대 등은 이곳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지뢰는 국가가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지만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폭우가 내리거나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비무장지대 근방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로 인한 지뢰폭발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DMZ 일대에 매설된 지뢰 숫자는 미확인 지뢰지대로 인해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있고,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에 남북한 도합 약 2백만발 정도로 추정된다(신영철 2013).

전사자 유해의 경우 남한지역 9만여 명, DMZ과 북한지역에 4만여 명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까지 DMZ 지역에서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유해발굴 전문인력을 증편할 계획이며 증편인력으로 민간 전문요원과 군무원을 채용할 예정²¹이다.

다) 검토

인도적 차원에서 지뢰제거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현재 지뢰제거는 합참의 군사작전 개념이고 전사자 유해발굴 업무 역시 국방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군사지역에서 복무할 수밖에 없어 군과의 연관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복무를 대체복무‘부대’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등 군으로부터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이 복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지뢰제거의 경우 필요성은 대두되었으나 지뢰제거를 위한 공병부대의 확대편성이나 지뢰제거장비의 확충 등이 현재 관할부처의 계획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은 정책목표의 방향이나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징벌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지뢰금지활동은 지뢰를 직접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으로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 이슈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뢰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뢰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충격을 감소시키고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뢰가 존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뢰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지뢰위험 및 안전교육, 지뢰에 대한 조사·표식·제거작업, 피해자 재활을 위한 복구지원, 비축된 지뢰폐기, 지뢰반대캠페인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활동으로 99년 오타와협약이라 불리는 대인지뢰금지조약(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금지·폐기에 관한 협약) 발효되었으나 한국정부는 가입하지 않았다. 지뢰제거업무를 지뢰금지활동으로 넓히고 국방부가 아닌 평화단체

21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DMZ 유해 공동발굴 위한 힘찬 발걸음, 2018.8.9.

등 NGO에서 대체복무를 하게하는 방안도 있으나, 지금 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추후에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비전투복무 분야를 포함한 법안²²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군복무자와의 형평성과 제도의 악용방지에 초점을 두고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대체복무제의 취지나 기준에 맞지 않다.

4) 소결론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가장 적합한 분야는 사회서비스지원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세부 분야로 사회복지와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선호도도 확인할 수 있다. 교정 시설 업무보조로 대표되는 국가행정보조 분야는 사회적 필요성이라기보다는 합숙을 전제로 하여 제안된 분야이고, 기존의 경험으로 인해 여러 문제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좀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비전투복무 분야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회서비스지원 분야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무제도의 평가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서비스분야의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고 제도도입 초기에 병역거부자도 포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군대와 비슷한 합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좀더 폭넓게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제도의 목적은 좋으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오봉욱·이전 2012),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복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회복무로 인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대체복무자 역시 꺼려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분야가 한 가지로 제한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분야와 난이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병역거부자들 모두가 동일한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무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는 지점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제도도입 초기에는 한 가지 분야로 시작하더라도 빠른시일 내에 여러 분야를 개발하고 확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대체복무 신청 및 심사

1) 현재 제안되는 대체복무 신청 기간

22 지뢰제거 등 비전투복무분야를 포함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2장 4절의 <표2-5> 참조

(1) 제출된 안 정리

가) 20대 국회 발의된 법안 정리

군 입대 전에만 대체복무 신청 가능

- 이종명안: 병역처분 90일 이내 대체복무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 신청(「병역법」 제43조의3)
- 김중로안: 병역처분 90일 이내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 신청(「병역법」 제33조의12)
- 김학용안: 병역처분 90일 이내 증빙자료 함께 제출, 지방병무청장이 5일 이내 위원회로 송달(제4조)
- 이철희안: 병역처분 90일 이내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에 신청(제33조의12),

군 입대 전, 군복무 중, 예비군 복무 중 어느 때나 대체복무 신청 가능

- 전해철안: 병역처분 90일 이내, 현역
- 박주민안: 병역처분 90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 신청,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도 가능(「병역법」 제33조의12)
- 이용주안: 병역처분 90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 신청,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도 가능(「병역법」 제33조의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 신청(「예비군법」 제3조의3)

나) 시민사회안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입영 전 뿐만 아니라, 복무 중, 그리고 복무를 마친 이후의 예비군 복무 중에도 대체복무 신청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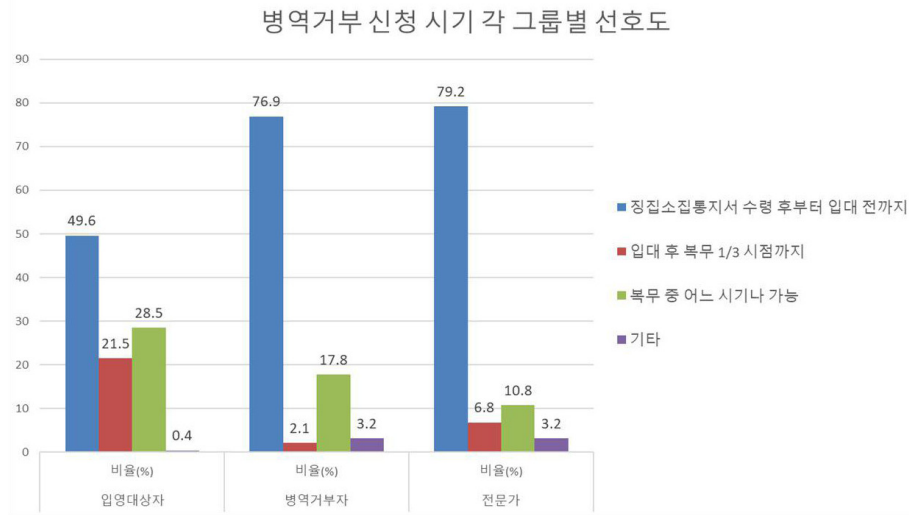
다) 국방부의 입장

-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2007년 9월 18일 발표): 현역 복무 중이거나 예비군 복무 중인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
- 2018년 6월 28일 현재 결정 이후: 언론 기사를 통해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²³

23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소방서 근무유력(종합), 연합뉴스, 2018.8.22.

(2) 설문조사 정리

그림4-8



모든 집단에서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만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큰 차이로 많이 나왔고,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해야 한다는 대답이 두 번째, 입대 후 복무 1/3 시점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적게 나왔다. 다만 입영대상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대 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낮고,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해야 한다는 응답과 입대 후 복무 1/3 시점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왔다.

(3) 쟁점 및 검토

군 복무 이전에만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의 주된 논거는 주로 복무 중 갑작스레 병역거부를 신청하는 이들의 양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고, 복무 중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현역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훼손될 것²⁴이라는 추측이다. 본 연구팀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군 입대 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비율 차이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를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누고

24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2016.11.16

있다.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명시하고 있는 바, 그 양심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가지고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에 자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병역거부의 양심이 언제 형성되었는지가 그 양심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논증한 침해의 최소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국가가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의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고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제기구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시기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유엔인권위원회, 유럽평의회 등은 군 복무 중에도 그 이후에도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독일,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이 시가와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년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법안들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부사관이나 장교 등의 병역거부를 신청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연구보고서 2장 1절에서 다루고 있는 1978년 유엔 총회의 반아파트헤이트 결의안이 통과되는 배경과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 즉 아파트헤이트처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를 명령으로 강요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군인들 개개인의 정당한 주권행사와 더불어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침략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병역거부의 권리는 징집병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식

(1) 제출된 안 정리

가) 20대 국회 발의된 법안 정리

표4-5 20대 국회 발의된 법안 중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정리

구분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설치	재심 신청 절차	심사방식
전 해 철 안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철학·종교학·심리학·법학·사회학 또는 정치학 등을 전공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4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앙위원회 7명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임명 임기4년, 연임 가능 -지방위원회 5인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임명	병 무 청 소속, 지방 병 무 청 소속	30일 이내 1회만 가능 재 심 위 는 60일 이내 결정	신 청 인, 증인, 참고인에게 증언, 진술, 검증, 조사 요구
이 철 회 안	4급 이상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정치학·사회학·심리학·종교학·역사학·철학·법학 등을 전공한 사람 4. 정신과 전문의 또는 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대체복무요원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5명 이내 위원장은 국무총리 임기3년, 두차례 연임 가능	국 무 총 리 소 속 대 체 복 무 사 전 심 사 위 원회	60일 이내 1회만 가능	신 청 자,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게 출석, 진술, 서류 제출 요구

박주민 안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정치학·사회학·심리학·종교학·역사학·철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국민안전처 또는 국방부의 4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9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 임기3년, 연임 1번	국무총리소속대체복무위원회	30일 이내 신청 90일 이내 결과통보	신청인, 증인, 참고인에게 증언, 진술, 검증, 조사 요구
이종명 안	1. 4급 이상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정치학·사회학·심리학·종교학·역사학·철학·법학 등을 전공한 사람 4. 정신과 전문의 또는 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3조의5)	15명 위원장은 병무청장 임기3년, 연임 불가 (제43조의5)	병무청소속대체복무심사위원회	60일 이내 1회만 가능	신청인,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게 출석, 진술, 서류제출 요구
이용주 안	1. 철학·종교학·심리학·법학·사회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33조의14)	25명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5명 이상의 소위원회 구성 재심위는 9명	병무청소속대체복무심사위원회 대체복무재심위원회	30일 이내 신청 재심사위원회가 90일 이내 결정 (복무중은 3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함

김학용 안	1.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4. 국방·안보 분야의 4급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15명 위원장은 병무청장 10명 이내의 분과 위위원회	병무청 소속 대체복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대체복무위원회	30일 이내 1회만 가능 재심 위는 60일 결정	신청인, 감정인, 증인, 참고인에게 출석, 진술, 서류 제출 요구
김종로 안	1. 4급 이상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정치학·사회학·심리학·종교학·역사학·철학·법학 등을 전공한 사람 4. 정신과 전문의 또는 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3조의14)	15명 위원장은 국방부장관 임기2년, 두차례만 연임가능 (제33조의14)	국방부 소속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	90일 이내 1회만 가능	심청인,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게 출석, 진술, 서류 제출 요구

(2) 설문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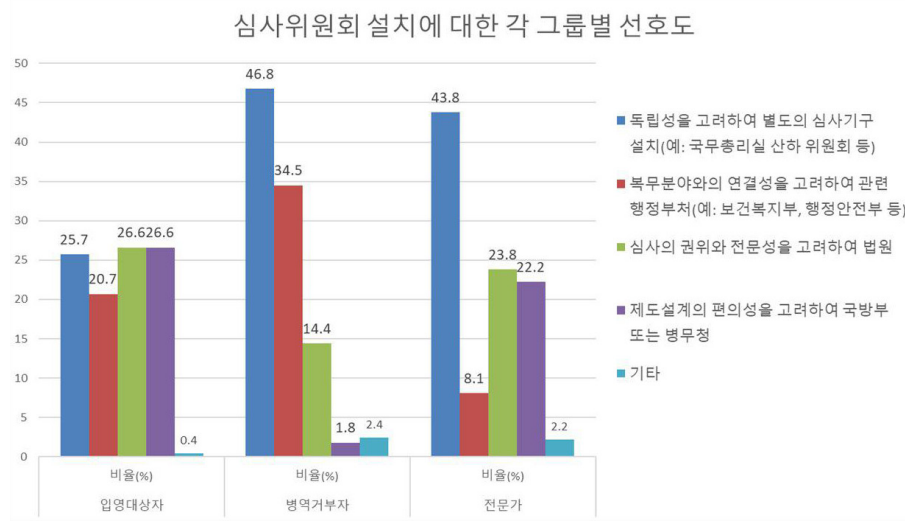
표4-6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각 그룹별 선호도

구분	입영대상자	병역거부자	전문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	1순위	2순위	1순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정치학·사회학·심리학·역사학·철학·법학 등을 전공한 학계 전문가	4순위	4순위	2순위
사회복지 시설의 장 등 대체복무기관 관계자	5순위	1순위	6순위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6순위	5순위	5순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대체복무제 관련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3순위	3순위	4순위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계자	2순위	6순위	2순위
기타	7순위	7순위	7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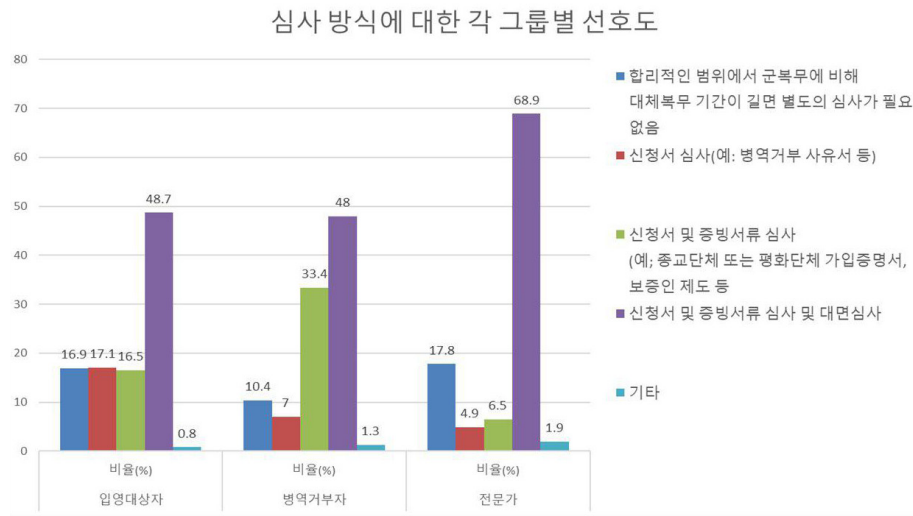
모든 그룹에서 법률전문가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학계전문가 선호도가 높았고, 병역거부자 그룹은 대체복무기관 관계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한편 군관계자가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에 입영대상자나 전문가 그룹은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지만, 병역거부자 그룹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여준다. 특히 기타 의견들을 보면 군관계자가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에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9



입영대상자 그룹은 각 답변에 대한 비율이 고르게 나왔다. 병역거부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별도의 심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는데,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체복무 관련 행정부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왔고, 병역거부자 그룹에서는 국방부나 병무청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낮게 나왔다.

그림4-10



심사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그룹이 대면심사까지 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입영대상자 그룹은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르게 선호도가 조사되는 반면, 병역거부자 그룹에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가 상당한 비율로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3) 쟁점 및 검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심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영역이 어디인지, 관리감독을 누가하는지를 함께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형성된다. ①심사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며 ②심사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지, ③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심사를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심사위원회 구성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4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정치학·사회학·심리학·종교학·법학·철학을 전공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 정신과 전문의 등이 여러 법안에서 중복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다. 양심을 판단하고 심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고려한 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우려해야 할 것은 군관계자가 과잉대표 되는 것이다. 비록 설문조사에서 입영대상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에서 군관계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지만, 병역거부자 그룹에서는 아주 낮은 수치로 최저 순위를 기록한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군입영과

깊은 연관이 있는 군관계자가 심사위원회에서 너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종교관계자, 특히 특정한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것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국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심사 과정이 종교 간의 다툼으로 비취질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교의 종단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자칫 병역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가 아닌 종교의 자유로만 여겨질 수도 있다. 또한 2장 3절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병역거부가 종교적인 문제로만 국한될 경우 보편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회의 남녀 비율이 크게 차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의 의무가 아니고,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남녀 성별의 차이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느 한 성별이 지나치게 많게 되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회 배치

심사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국방부 혹은 병무청 산하에 두거나 국방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 부처에 둘 수 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박주민안, 이철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방부나 병무청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병역거부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독립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심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왔고, 특히 병역거부자 그룹에서는 국방부 산하의 심사기구에 대해서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심사위원회가 국방부 산하로 가게 될 경우 병역거부 당사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제 기준 또한 군과 연관이 없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심사 방식

심사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별다른 심사 절차 없이 병역거부자임을 신고만 하면 인정받는 방식이 있다. 다음으로는 병역거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로 결정되는 방식, 마지막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대면 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심을 판단하고 심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칫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심사 방식 변화의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르메니아 등 비교적 최근에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일수록 복잡한 심사를 거치는 반면 독일 등 이미 오래 전에 대체복무를

를 도입한 국가일수록 심사를 단순화해가는 과정을 거쳐 별다른 심사 없이 신고만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운용한다. 제도 도입 초기의 우려와는 다르게 제도가 악용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더 폭넓게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병역거부 인정 범위

(1) 제출된 안 정리

가) 20대 국회 발의된 법안 정리

-종교적 사유와 개인적 신념을 모두 인정: 전해철안, 이철희안, 박주민안, 김중로안, 이용주안, 이종명안

-종교적 사유만 인정: 김학용안

(2) 쟁점 및 검토

병역거부자의 범위를 종교적 사유로만 한정짓는 것은 아직까지 크게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안이나 국방부의 입장도 이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김학용안을 제외하곤 모두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신앙이나 윤리적·정치적 신념 등 양심을 폭넓게 인정했다.

김학용 의원의 법안에서 병역거부 사유를 종교적 거부로만 한정한 까닭은 “개인의 양심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²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대체복무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제도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다. 또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표4-7 사유별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구분	계	'18.7.	'17	'16	'15	'14	'13	'12	'11	'10	'09
계	5,450	71	461	557	493	565	623	598	633	721	728
여호와의증인	5,413	67	460	555	490	564	615	597	627	715	723

25 김학용 "대체복무는 장기간·고강도로"…법 제정 추진, 연합뉴스, 2018.8.19.

기타 개인신 념	37	4	1	2	3	1	8	1	6	6	5
-------------	----	---	---	---	---	---	---	---	---	---	---

*자료출처: 병무청

여호와증인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소수지만 존재한다. 전쟁없는세상의 내부 상담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최소 79명이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다. 병역거부 사유를 종교적 사유로만 한정한다면 이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유엔 권고를 반복해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다면 누구를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논점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보고서 2장 3절에 소개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종교적 사유에만 국한할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그렇다면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 많은 국가들이 병역거부자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화시켜왔다는 역사적 맥락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4) 소결론

지금까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방식, 대체복무를 신청 가능한 시기와 병역거부자의 인정 범위를 두루 살펴보았다.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 안들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양심을 심사하는 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되 군관계자가 과잉으로 대표성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사위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과반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심사는 서류와 대면 심사를 병행하되 제도가 안착되어 가면서는 갈수록 심사 방식을 간소화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병역거부자의 범위를 종교로 한정짓지 말고 개인적인 양심과 신념까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4. 대체복무 인권보호관

1) 현재까지 발의된 군인권보호관 관련 법안

표4-8 군인권보호관 관련 발의 법안 비교

구분	백혜련안	김학용안	안규백안
법안 구분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법 률안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 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 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 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 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군인권특별보호관을 설치하고, 군인권 특별보호관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대 방문권·진술청취권 등의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군 관련 사건을 보다 엄정하 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 서 장병의 인권신장과 군에 대한 대국 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 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 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 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이 ‘제 복입은 시민’으로서 본원적으 로 가지는 기본권적 지위를 재 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 출에 기여하려는 것
인 권 보 호 관 설 치 부 서	군인권보호관의 위원장으 로 하여 국가인권위 내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으로 구성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국방부 소속, 직무 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 직속으로 군 인권보호처를 둔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 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 면, 국회의장 소속
인 권 보 호 관 의 자 격 요 건	상임위원 중 군 내 인권침해 방지과 군인등의 인권보 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인 을 국회가 선출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심리학·정신건강의 학·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여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 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 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 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 면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3. 국회군인권보호관 임명일 전 3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 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군 인권 보호의 역할과 책임 범위	1.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3.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개시 4. 군인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군인 등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군 내 인권침해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8.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그 밖에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업무와 권한 1. 군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외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고충사항에 대하여도 처리할 수 있도록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권한 범위를 넓히고, 그 밖의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이나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2. 인권침해사건 및 고충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부대방문권, 자료제출요구권을 부과하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군사상 보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함 관계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등 1. 군인 및 군무원의 인권보장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 등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2. 인권 침해사건에 관하여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고발 또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음 3. 군인권특별보호관으로부터 조치사항의 권고를 받은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그 이행여부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조치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 시킴 정기보고와 특별보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조사 및 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 매 분기별국회 및 대통령에게 정기보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보고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함	1. 군인이 군인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군인의 기본권침해 및 군인의 기본권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제 3.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 군인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총괄, 종합 및 조정 5. 군인의 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이행 실태의 확인 및 평가 6. 군인의 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7. 군인의 기본권상황에 관한 정기·불시 실태조사 8. 군인의 기본권보호 및 군인의 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 인권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10. 그 밖에 군인의 기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	--	---

2) 병역거부자 심층 인터뷰 분석

대체복무고충담당관에 대한 설문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한계상 대체복무고충담당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병역거부자 심층인터뷰에서는 감옥 안에서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한 출력을 통해서 대체복무 업무 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요소를 추정해볼 수 있다.

병역거부자 심층인터뷰

감옥생활을 한 A, B, C는 모두 교도관에 의한 부당한 지시나 감옥 생활 중 강압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이야기 한다. 다른 수감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등 수감자의 업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시킨다거나(A),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C) 등이 있다. 또는 작업장에서 국민의례를 강요하는 경우(B)처럼 개별 교도관이나 수감자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겪기도 한다. 특히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들은 감옥안에서 나이가 매우 어린 축에 속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부당한 요구를 상대적으로 쉽게 한다는 증언(A)도 있었다.

수감자와 교도관 사이의 위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A), 이런 부당한 위계 관계가 대체복무자와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특히 일각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에서는 우려가 더욱 컸다(C). 감옥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신고함을 언급하면서 대체복무자들에게도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B)했다.

한편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교정시설이라면 수감자들에게 인권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위험성도 제기되었다(A). 이를 대비해 대체복무자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3) 쟁점 검토

대체복무제 자체가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인권보호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하며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제도로서 예방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병역거부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대체복무자가 기관의 관리 담당자와 위계 관계에 놓임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도로서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약하나마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제도인 군인권보호관 관련 발의 법안을 살펴보았다. 세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에 두는 것과 국방부 혹은 국회의장 산하에 두는 것인데, 대체복무의 경우 셋 다 적극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인권위에 두는 경우 인권위를 확장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대체복무고충담당관 제도가 작동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대체복무의 경우 관련 정부 부처) 내에 두는 것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국회의장 산하에 두는 것은 독립성을 견지할 수는 있으나 실제 운용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 예상된다.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역할상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니 만큼 별도의 독립된 대체복무 위원회 아래 인권보호관 역할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대체복무 고충상담관은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참고하여 대체복무요

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과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의견 제시, 대체복무요원이 받는 징계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 대체복무 여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제3절 필요한 추가 행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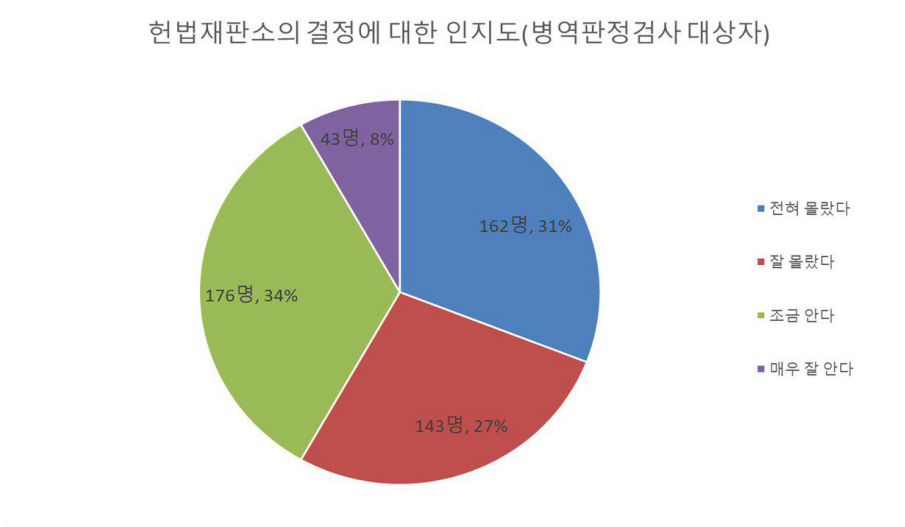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복무기간, 복무영역, 신청가능범위 및 심사위원회 구성방식 등의 사안들이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논의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현역복무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현역복무자들의 불만이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대체복무제가 도입 취지에 따라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검토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점들에서 다루지 않지만 제도운영에서 필수적인 행정조치들을 검토한다.

1.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신청에 대한 정보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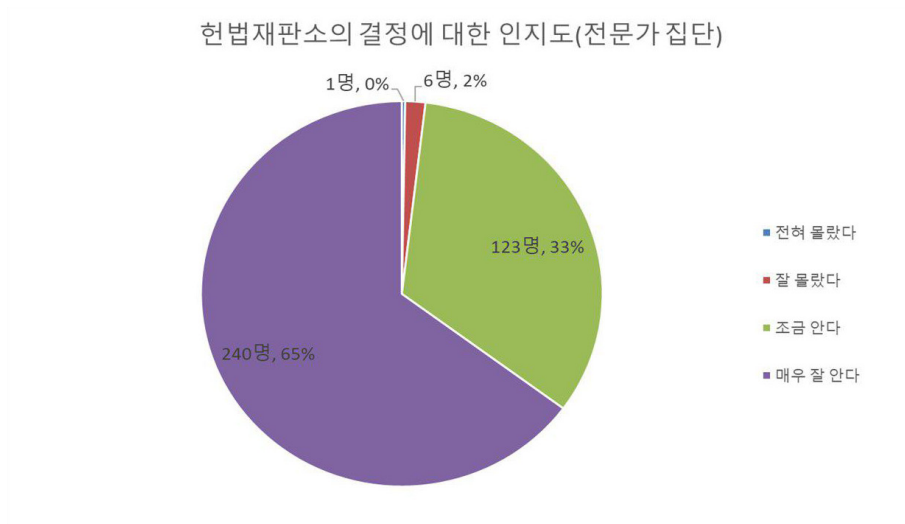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을 선택지를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온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나 대체복무제를 상당히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본 조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집단별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경우 ‘모른다’고 답을 한 비율(58.2%)이 ‘안다’고 답한 비율(41.8%)에 비해 훨씬 높았다. 특히 응답자의 1/3 가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전혀 몰랐다’(30.9%)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대 다수(98.1%)로 나타난 결과와 크게 대조된다.

그림 4-11



주: 무응답 3명

그림 4-12



이러한 결과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편견을 가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엔은 회원국 정부들이 병역의무자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신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2006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파라과이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의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파라과이 정부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

부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에 대한 정보가 국민 전체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CCPR/C/PRY/CO/2, para. 18).

유엔은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E/CN.4/RES/1998/77)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신청에 대한 정보고지의 중요성을 인정해왔다. 해당 결의안은 “병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를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에 접근가능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고지의 의무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현역복무 중이거나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병역이행자들에게도 해당된다(HR/PUB/12/1).

현재 한국의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관련 법안들 중 정보고지 의무를 명시한 사례는 총 3건(전해철안, 박주민안, 이용주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정보고지 의무 명시 법안

	신설 조항 내용
전해철안	제33조의11(대체복무 고지의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대체복무의 신청절차 및 기간 등 대체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박주민안	제33조의11(대체복무 고지의무) 제33조의13에 따른 대체복무위원회는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대체복무의 신청절차 및 기간 등 대체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용주안	제33조의11(대체복무 고지의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의 신청절차 및 기간 등 대체복무요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방병무청 혹은 대체복무위원회가 병역의무자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지사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병역의무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의 취지, 대체복무의 신청절차 및 기간 등 대체복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정보고지는 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하되, 병무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정보에 언제

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체복무에 대한 정보는 대체복무를 신청하도록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현역병으로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이 가질 수 있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자의 대체복무 전환신청 방법

본 조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제인권기준 등을 근거로 대체복무 신청가능시기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역복무자의 경우 군대에 속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체복무 신청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군인 역시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 중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자의 대체복무 전환신청을 명시하고 있는 사례는 총 3건(전해철안, 박주민안, 이용주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0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 전환신청 명시 법안

	신설 조항 내용
전해철안	제33조의12(대체복무의 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하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여야한다. ② 현역병(제21조·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현역병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이거나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을 말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주민안	제33조의12(대체복무의 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하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은 이를 제33조의13에 따른 대체복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② 현역병(제21조·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현역병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이거나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을 말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주안	제33조의12(대체복무의 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하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으로서 실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현역병(제21조·제25조에 따른 현역병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 신청을 할 수 있다.
------	---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자의 대체복무 전환신청을 명시하는 경우 대체복무 신청절차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현역병의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신청자가 병영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따라서 신청자의 신상 등이 부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칠 수 있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현역군인이 신청하는 경우 입대 이전에 신청한 대상자에 비해서 보다 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군복무 소집영장을 받은 입영대상자나 결원보충을 지원하여 입영대기 중인 자, 군사훈련의 소집을 통보받은 예비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병역거부법 제4조). 지방병무청은 현역병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체복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것이다.

현역병의 신청과 관련해서, 대체복무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가 군복무 대신에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이유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신청자의 병역거부 사유에 따라서 대체복무 여부만이 아니라 대체복무 분야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신청자가 군복무 당시에 병영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신청자가 대체복무를 결정하는 대신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예비군훈련의 대체복무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한 이후에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에게 요구되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다. 군복무 중에 종교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거나 스스로가 직접 체험한 군사훈련이나 병영의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어 예비군훈련거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비군훈련거부자는 징역에 처해지지 않지만 반복적인 고발과 재판, 그리고 누적되는 벌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곤란함을 겪게 된다.²⁶ 본 조사에서 시행한 FGI에서 인터뷰참가자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년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든 훈련이 편성될 때마다 다 고발이예요…… 2주나 3주에 한 번씩 경찰서 가야 되는 거죠.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법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예비군훈련거부자 D)

최근 하급심에서는 예비군훈련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최초로 무죄선고가 나온 이후 2017년 두 건, 2018년 세 건 등 예비군훈련거부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총 여섯 건이다.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1 예비군훈련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

	일시	무죄 선고 재판부
1	2004.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	2017. 1. 10.	청주지방법원
3	2017. 12.13.	서울남부지방법원
4	2018. 4. 10.	울산지방법원
5	2018. 4. 10.	울산지방법원
6	2018. 8. 22.	울산지방법원

출처: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홍보부 제공자료

국제인권기준은 예비군훈련거부자에 대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유엔의 경우 1998년 인권위원회가 결의안(E/CN.4/RES/1998/77)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범위에 예비군훈련거부자도 포함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결의안을 통해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Resolution 2013/24).

한편, 한국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예비군훈련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 신청을 인정하는 사례는 총 3건(전해철안, 박주민안, 이용주안)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복무전까지만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본 조사는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취지, 국내외 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 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양심이 언제 형성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양심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본 조사에서 시행한 FGI에서 인터뷰참가자의 경우 군복무 중에 병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26 “헌재 결정 이끈 ‘83건의 무죄선고’… 「예비군법」도 곧 판단, SBS, 2018.6.29.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신앙인으로 걸리는 지점이 많았어요. 군대에서의 삶이 개인을 수단화하고 집단적인 문화, 위계질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그들의 문화, 사람을 대하는 방식 등 그런 전체가 말예요. 몸으로 (그런 문화들을) 익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제 개인적 신념, 종교적 신념에 충돌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멈추는 것을 선언하는 계기는 예비군훈련이라는 남은 군사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하게 됐습니다.”(예비군훈련거부자 D)

이 인터뷰참가자의 경우 군복무 중에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군대문화가 심각하게 배치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병역에 대해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진 선택이 군복무 전에 대체복무를 신청한 병역거부자에 비해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예비군훈련의 경우 현역복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비군훈련거부자에게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한다고 해도 병역기피에 악용될 위험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예비역으로 편입된 병역이행자의 경우 예비군훈련 1~6년차 동안 매년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3박 4일까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비군 교육훈련시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2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구분			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시간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 x 2)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동원미지정자		2박 3일			
7~8 년차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한편, 예비군훈련거부자와 대체복무요원에게 예비군훈련에 해당하는 대체복무를 실시하게 한다면 합숙 등의 복무조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기간이나 강도를 일부러 길게 산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현행 예비군 교육훈련시간에 기계적으로 맞추어서 매년 2박 3일 정도의 동원훈련을 할 이유도 없다. 대체복무시설에서 예비군훈련을 대체하는 대체복무를 할 경우에 예비군훈련처럼 매년 조금씩 나누어서 산발적으로 복무를 하는 것은 훈련이나 실질적인 업무수

행에서 현실성이 매우 낮은 처사가 될 것이다.

예비군훈련거부자와 대체복무요원에게, 필요하다면 대체복무위원회가 예비군동원에 준하는 기간 동안 예비군훈련을 대체하는 훈련이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복무영역은 군사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에 기계적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게 복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예비군 교육훈련시간의 경우 1~6년차 동안 총 160시간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시 20일에 해당한다. 대체복무자의 경우 대체복무시설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복무기간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대체복무 신청자가 직접 대체복무시설을 탐색하고 복무방식을 협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가 가능한 시설의 명단을 확보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복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대체복무자에 대한 비상소집은 예비군처럼 전시나 비상사태에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복무자의 경우 재난복구나 긴급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주로 전시에 소집되는 예비군에 비해서 소집이 잦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제사회에서 금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소집으로 수행하게 되는 재난복구나 긴급사회서비스 역시 대체복무기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5장 대체복무법 시안

제1절 대체복무법 시안에 대한 해설

1. 법안의 유래와 목표

2000년 이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병역법 개정안」 또는 대체복무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이정희 의원안이, 19대 국회에서는 전해철 의원안이, 20대 국회에서는 전해철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이철희 의원이 각기 발의되었다. 현재에는 5-6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연구용역팀은 이러한 법안을 참조하였고, 그 사이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린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독립적인 시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병역법」 제5조 역종조항에 대체복무역을 규정하고, 「예비군법」에서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별도로 대체복무법을 제안하였다. 이 시안은 독자적인 법으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여타 개정안보다 많은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안은 기존의 「병역법」 상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규정을 다수 차용하였으며, 동시에 대체복무요원의 권리와 의무 부문을 명시하였다. 최근 군인의 인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법률(군인인권법)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군인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도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대체복무요원의 권리보장장치도 추가하였다. 이 시안은 광범위한 여론조사에 기초하여 관련자의 인권존중(징벌적 성격을 탈피한 제도), 복무영역의 다양성, 사회적 형평, 소수자의 사회통합을 고려하였다.

2. 법안의 주요내용

1)총칙

목적조항에서 이 법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병역이행자와의 형평을 달성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려고 한다는 점을 밝혔다(제1조). 이는 2006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개인통보 사건(CCPR/C/84/D/1321-1322/2004)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살린 것이다. 동시에 이 법에 입각한 대체복

무이행을 군복무이행으로 간주하고(제2조), 대체복무이행중 또는 대체복무 이행후에도 대체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법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하였다(제3조). 이러한 원칙을 부칙조항(제6조)에서 연금법에 반영하였다.

2) 대체복무위원회(제4조-제8조)

대체복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병무청 특히 지방병무청은 행정적 집행기구로 역할을 제한하였다. 대체복무요원의 판정 및 대체복무제도의 운영, 정책수립, 시설 지정, 제반사항을 결정할 기구로서 대체복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다. 다양한 사회적 복무영역을 발굴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간 업무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므로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체복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법률가, 민간단체의 피추천자,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9인의 위원을 임명하고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동시에 중요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재심사 사안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3) 대체복무신청 및 심사절차

병역판정검사시에 지방병무청은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제9조). 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신청기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소집이 유예되도록 하였다.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나 부사관, 장교나 예비군으로 편입된 사람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체복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체복무신청서, 병역거부 사유서,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표준양식을 정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이나 대체복무위원회가 웹사이트에 게시한다(제10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로 대체복무요원을 판정하도록 하였고, 의문이 있는 경우에 대면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였다(제11조).

위원회는 대체복무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친 후 인정, 기각, 각하의 결정을 한다.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 신청인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별도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제12조). 신청인은 전원위원회의 재심사후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3조). 대체복무요원으로 인정된 사람

은 즉시 대체복무역에 편입된다.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영역을 지정할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14조).

4) 대체복무시설 및 복무방식

대체복무영역은 사회복지 관련업무, 교정 소방 재난 구호 산림감시 환경감시 등 공익관련 업무 등 다양성을 반영하였다(제15조). 교정업무는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인하여 복역하였던 사람들이 수행해왔던 업무였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포함하였으나 교정업무는 대체로 죄수들에 대한 총기사용과 연관되어 있는데다가 재소자 관리업무가 고유한 국가사무인 점을 볼 때 사회적이고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는 대체복무 취지와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은 대체복무위원회가 지정한 대체복무시설에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한다. 대체복무시설은 대체복무시설의 근무와 관련하여 소양교육을 시행한다(제17조).

대체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복무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것도 예정하였다(제18조). 그것을 일률적으로 1.5배로 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정업무와 산림감시를 동일한 강도의 복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교정업무는 군복무보다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복무기간을 길게 정할 이유도 없다. 만일 대체복무영역을 교정에 국한시키고, 이를 현역군복무기간의 1.5배로 한다면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할 우려가 크다.

대체복무시설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지휘 감독한다. 시설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대체복무요원은 시설에서의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제20조). 그러나 그 경우에도 대체복무요원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요원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복무제를 허용하였다(제21조). 가정형편상 대체복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체복무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였다(제14조 제2항).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대체복무위원회가 예비군동원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 재난복구나 긴급사회서비스 등의 훈련이나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이행자에게 대체복무시설에 전시근로를 부과할 수 있다(제23조).

5) 대체복무요원의 권리와 의무

대체복무요원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지며, 이들의 자유도 원칙적으로 법률에

입각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제1항). 이는 군인복무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근로시간, 근로기준,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회적 권리, 보수, 의료 외출 외박 휴가, 고충처리 및 진정 등에 관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규정하였다(제24조 제2항). 이는 군인의 권리에 준하여 시행령과 대체복무위원회의 복무지침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해당직장에서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이 종사하는 복무영역이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복무영역의 재배치권을 규정하였다(제25조). 대체복무요원들이 근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의권을 규정하고, 대표위원제도를 두었다(제26조). 대표위원제도는 현재 공군부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에 준하는 대체복무요원 고충처리담당관제도를 두었다(제27조). 우선적으로 대체복무위원회 내부에서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인권보호관은 추가적인 보호기구로서 두터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대체복무요원 고충처리담당관은 대체복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고충처리담당관은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업무, 징계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의견제시, 대체복무시설 및 그 복무여건의 검토 및 의견제시,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침해 실태 및 고충처리 현황에 대한 정례 보고 업무를 담당하고,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면담조사, 징계절차에 대한 참여권, 대체복무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권을 보유한다.

대체복무요원은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복종의무, 동료의 권리 존중의무, 의견건의나 진정에 대한 방해금지, 영리활동이나 정당활동 금지, 정치적 견해의 강요금지,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제28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수행을 공무수행으로 봄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 면책의 범위를 일반 공무수행자에 준하여 규정하였다(제29조).

6) 징계와 벌칙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고, 경징계는 직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이 취한 서면경고를 의미하고, 중징계는 직무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여 복무기간의 연장효과를 수반하는 대체복무위원회 위원장의 조치를 의미한다(제30조). 경징계사유가 일정한 정도로 누적되는 경우에는 중징계를 취할 수 있다. 징계절차를 자세히 규정하였다. 징계청문절차를 실시하고, 징계절차에 대체복무요원 대표위원이 참관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고충처리담당관은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중징계사유를 상세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징계권의 남용이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였다(제31조).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규정하였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발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였다(제32조). 대체복무요원이 근무태만을 반복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적인 대체복무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3조).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처벌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과오와 책임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남용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체복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체복무 소집명령에 불응하거나 대체복무수행중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시설에서 통틀어 30일 이상 이탈하는 대체복무거부자(완전거부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4조). 물론 처음부터 군복무에 불응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7)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절차를 중지한다(제3조). 복역중인 사람으로서 대체복무신청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대체복무에 소집한다. 대체복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 및 복역기간은 대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복역중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수행할 의사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때에만 이들을 대체복무에 소집하도록 하였다.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재판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람이 대체복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절차 없이 대체복무에 소집하도록 하였다. 병역거부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대체복무에 소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제도도입 이전 상태에서 발생한 법적인 난맥상과 공백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병역거부로 인하여 지금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전과기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별재심의 기회도 부여한다(제4조, 제5조). 연금법에서 대체복무를 군복무로 간주하여 차별을 방지하였다(제6조).

제2절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 및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

병역법 개정(안)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대체복무요원”이란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 지정시설 등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또는 대체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5조제1항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 병역준비역
5. 전시근로역
6. 대체복무역

「예비군법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대체복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예비군 중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라 대체복무편입결정 및 재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의 효력은 정지된다.

② 예비군의 대체복무 결정에 관한 사항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예비군이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에 따른 대체복무에 필요한 복무형태, 복무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군복무자와 형평을 달성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역의무와 관계)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체복무 이행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한다.

제3조(차별금지) 대체복무를 이행한 사람은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받지 아니 한다. 대체복무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나 대체복무시설의 운영자는 대체복무요원들에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체복무 위원회의 조직

제4조(대체복무위원회 및 사무처) ① 대체복무요원으로서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를 둔다.

② 대체복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대체복무신청과 대체복무역 편입에 대한 결정
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변경신청과 복무면제신청에 대한 결정
3. 대체복무요원의 징계에 관한 결정
4. 대체복무요원의 형사고발에 대한 결정
5. 대체복무요원의 권리 및 의무의 기준과 징계절차에 관한 지침의 정립
6. 대체복무 분야·형태 및 대체복무시설 등의 지정
7.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8. 대체복무제도의 운영, 관련 행정기관 간의 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대체복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④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⑥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⑦ 위원회 산하에 위원장의 지휘를 받은 대체복무요원 고충처리담당관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⑧ 사무처 및 고충처리담당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체복무위원회의 구성) ① 대체복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3인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나머지 6인은 비상임으로 보한다.

② 대체복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부처에서 1인을 넘을 수 없다.

-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4.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법무부·병무청의 4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③ 대체복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그밖에 대체복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 ①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소위원회의 의결에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

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전원위원회는 전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재심사하고,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전원위원회의 결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대체복무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 임명권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복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3장 대체복무 신청 및 심사절차

제9조(대체복무 고지의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대체복무의 신청절차 및 기간 등 대체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체복무의 신청)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중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병역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은 지체 없이 대체복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현역병 입영이나 보충역 소집, 예비군 소집은 대체복무위원회의 대체복무역 편입결정 또는 재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연기된다.

③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나 예비군으로 편입된 사람은 전 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나 예비군으로 편입된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단위부대장은 이들의 신청에 따라 집총근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신청시에는 대체복무신청서, 거부사유에 대한 진술서,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할 표준양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병무청과 대체복무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제11조(심사방법) ① 대체복무위원회는 신청서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면심사 없이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복무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시행한다.

②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신청인 또는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대체복무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결정) ① 대체복무위원회의 각하·기각 또는 편입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체복무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은 대체복무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 신청인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대체복무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다.

1. 대체복무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체복무를 신청한 경우
2. 대체복무위원회가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사람이 다시 신청한 경우

- ③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신청을 기각한다.
- ④ 대체복무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 대체복무역 편입을 결정한다.
- ⑤ 대체복무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사) ① 대체복무신청인이 대체복무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체복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 신청인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 ③ 대체복무위원회의 재심사를 위한 사실 검증·조사나 그 밖의 재심사 결정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④ 대체복무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대체복무역의 편입과 면제)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체복무역 편입 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역으로 편입된다.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영역을 결정함에 있어 대체복무요원의 희망·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대체복무역으로 편입되었거나 대체복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복무위원회에 대체복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재심사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④ 대체복무요원이 이 법 및 여타의 처벌법규에 의하여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경우에는 대체복무를 면제한다.

제4장 복무시설과 복무방식

제15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및 업무) ①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복무분야 및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아동·노인·장애인·환자 등의 보호·요양·이동·재활에 관한 보조 등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
2. 교정·소방·재난·구호·산림감시·환경감시 등의 공익 관련 업무

② 대체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업무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에 따른 경비교도대의 업무
3.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의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인명살상 등과 관련된 업무
5. 영리 활동이나 정당 활동에 주로 연관된 업무

③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영역을 확정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보건복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 병무청장, 대체복무위원회 위원장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6조(대체복무시설 등의 지정)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공공기관 및 대체복무시설 등을 지정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대체복무시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제15조에 지정된 대체복무분야에 소집한다.

② 대체복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대체복무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그밖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복무영

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소양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②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서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비율에 따라 차감하여 복무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그밖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및 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부사관 또는 장교 등의 대체복무) ① 대체복무요원으로 인정받은 부사관 또는 장교가 이미 제18조 제1항상의 대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한 때에는 대체복무를 부과하지 않고 전역조치를 취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 인정받은 부사관 또는 장교가 제18조 제1항상의 대체복무기간을 아직 채우지 아니한 때에는 잔여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법 제18조 제1항의 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전 2항의 신청인이 대체복무자로 인정받은 때에는 대체복무역에 편입한다.

④ 부사관 또는 장교나 예비군인 사람이 대체복무역에 편입된 때에는 제23조의 추가적인 대체복무를 부과한다.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①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대체복무분야에 대체복무요원을 복무하게 하고 복무에 관련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한다.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은 복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은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교육훈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2. 제15조제1항제2호의 업무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교육훈련의

경우: 법무부장관

3. 제15조제1항제2호의 업무중 교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교육훈련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③ 대체복무요원은 복무시간 외에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대체복무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합숙근무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시간 및 복무여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여건, 보수 및 합숙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통보) ①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대체복무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복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제30조에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출퇴근 근무를 하는 대체복무요원이 동거 가족의 전 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시설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체복무시설 등을 새로이 지정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6호에 따라 대체복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이 결정하고, 지체 없이 대체복무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3조(추가적인 대체복무) ① 대체복무위원회는 동원예비군의 년차 및 동원기간에 준하여 대체복무 이행자에게 공익목적의 훈련이나 활동 등의 대체복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적인 대체복무의 소집업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한다. 추가적인 대체복무의 소집을 연기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게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시근로동원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 이행자에게 이 법이 정한 대체복무분야에서 추가적인 대체복무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대체복무요원의 권리와 의무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권리) ① 대체복무요원은 일반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에 따라 대체복무의 직무상 필요성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자유시간과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 서신의 자유가 보장된다. 합숙근무시에는 취침 전 인원점검을 제외하고는 대체복무요원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설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신봉하는 해당종교의 관행에 따른 종교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④ 대체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대체복무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

⑥ 대체복무요원은 시설의 장, 고충처리담당관, 대체복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⑦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과 대체복무위원회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근무지전환 및 업무영역 재배치신청) ① 대체복무시설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해당시설내에서 복무영역을 변경하거나 해당지역 내에서 복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복무영역이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복무영역의 전환이나 근무지의 재배치를 대체복무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건의 및 대표위원) ① 대체복무요원은 해당복무시설 및 대체복무제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복무시설의 장, 지방병무청장, 대체복무고충처리담당관, 대체복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문서로 건의할 수 있다. 건의의 상대방은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해당시설별로 대표위원을 직접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 10인 미만의 시설에서는 1인을,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10명당 1인을 추가적으로 대표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대표위원은 대체복무요원의 근무환경과 고충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복무여건에 대한 회의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의 징계조치에 참관할 수 있다. 대표위원의 이러한 활동은 대체복무요원의 공무로 간주한다.

③ 해당시설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대표위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복무시설 내에 대체복무요원의 단체 활동 및 대표위원의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 고충처리담당관) ①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위원회 위원장은 대체복무요원 고충처리담당관을 임명한다.

② 고충처리담당관은 대체복무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업무
 2. 징계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의견제시
 3. 대체복무시설 및 그 복무여건의 검토 및 의견제시
 4.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침해 실태 및 고충처리 현황에 대한 정례 보고
- ③ 대체복무요원 고충처리담당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면담조사
 2. 징계절차에 대한 참여권
 3. 대체복무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
- ④ 누구든지 대체복무요원 고충처리담당관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의무) ① 대체복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지며, 그 위반시에
는 직무위반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대체복무요원은 직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하며, 직무수행
에서 얻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2.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
다.
 3. 대체복무요원은 동료와 우애로써 결합하며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동료의 권
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체복무요원은 동료의 의견건의나 진정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
해서는 아니 된다.
 5. 대체복무요원은 복무 기간중에 영리활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활동 또는
정당과 연결된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직무수행중 또
는 자유시간에 동료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6. 대체복무요원은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단체행동, 집단서명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대체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선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때에
는 선서의 문구는 중립적인 언어로 표준화되어야 한다.
- ② 대체복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의무를 구체화한 대체복무요원 행위지침과 징
계절차기준을 제정한다.

제29조(배상책임 등) ① 대체복무요원의 직무수행은 공무수행으로 본다. 대체복무 수행

과 관련하여 사망·부상·질병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대체복무요원이나 그 유족은 공무원의 직무중 사고에 준하여 처우를 받는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대체복무요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6장 징계와 벌칙

제30조 (대체복무요원의 징계) ①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한다. 경징계는 직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이 취하는 서면경고를 의미하고, 중징계는 직무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여 복무기간의 연장효과를 수반하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조치를 의미한다.

②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근무시설 또는 합숙시설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서면으로 경고한다. 경징계조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대체복무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징계가 3회 이상 누적되거나 제31조상의 중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체복무위원회 위원장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복무시설 등의 장은 제1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대체복무위원회에 통보한다. 대체복무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해당 대체복무요원과 해당시설의 대체복무요원 대표위원은 징계 절차에 참관할 수 있다.

⑤ 대체복무요원 고충처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징계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중징계사유) ①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

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징계결정을 통해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그러나 복무이탈의 일수나 정도가 제33조나 제34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결정을 통해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징계후에도 직무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징계를 취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가혹행위를 가한 경우
3.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징계결정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위원회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31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잔여 복무기간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제32조(신청시의 허위문서 제출) ① 대체복무신청자가 신청서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작하거나 발급해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대체복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 2항의 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3조(대체복무요원 등의 처벌) ①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징계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추가적인 대체복무소집에 불응한 경우
- ② 전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시설의 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체복무요원을 경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4조(대체복무거부) ① 대체복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체복무 소집 명령에 불응하거나 대체복무수행중인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체복무시설에서 통틀어 30일 이상 이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체복무요원을 경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체복무에 소집한다.

③ 이미 집행된 형기는 비율로 환산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잔여복무기간을 정한다.

제3조(절차중단과 심사절차 예외) ① 헌법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법」 또는 「군형법」을 위반으로 계속중인 형사절차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중단한다.

② 이 법의 시행 전에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을 위반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고 형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사람이 대체복무를 신청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대체복무에 소집한다.

③ 이 법의 시행 전에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이 정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대체복무에 소집한다.

④ 이 법의 시행 전에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법」 또는 「군형법」을 위

반하여 구속된 사람이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미결구금일수는 대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사면과 복권) ① 대체복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법」, 「군형법」 또는 「예비군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전과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재심) ①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하여 「병역법」, 「군형법」 또는 「예비군법」 등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중 “보충역소집”을 “보충역소집과 대체복무역소집”으로 한다.

② 「사학연금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중 “보충역소집”을 “보충역소집과 대체복무역소집”으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에 “5. 대체복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며,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제92조상의 병역의무에는 대체복무가 포함된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본 조사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서 인권보장과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국내외 인권관련기구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유엔의 인권기구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체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엔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인정은 선언과 규약의 명문에서 형식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부정의에 맞서 침략전쟁을 방지하고 정당한 주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회원국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여해야 할 권리로서 요구되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대체복무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그들이 행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징벌적인 성격을 지닌 권리침해로서 인정된다.

또한 국내 인권관련 기구 및 시민사회 의견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과 2018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이 국제인권기준의 대체복무제 도입취지와 비슷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복무기간을 군복무에 비해서 1.5배로 하고 단체합숙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안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제출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복무기간과 복무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안은 만일 대체복무 지원자가 너무 많을 시에는 제도 도입 초기 신청인원 제한(연 1천 명 수준)을 통해 현역입영 자원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취지 역시 국내외 인권기구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보장과 대안적인 안보에 기여할 목적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서 ① 새로운 안보의 실현에 기여 ②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거부 당사자의 사회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 ③ 소수자를 포용하고 관용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다양성을 높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대체복무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이

유로 부당하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심사의 곤란함은 복무기간이나 복무강도 등을 조절하여 해결하되 이 또한 징벌적인 성격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방의 의무를 고려하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확고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장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병역거부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제도 도입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진행과정에서 병무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앞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하여 병역판정대상자 527명에게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질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과 대체복무제의 심사방법, 복무기간, 복무형태, 복무영역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병역거부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2009년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여호와의증인 교단과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총 1856명의 병역거부자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그간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얻지 못했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해서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처벌을 받았던 3인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인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의 내용은 주로 병역거부 이유, 병역거부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수감 당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경험,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바라는 바 등을 주로 다루었다.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당사자 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여론을 보충적으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에 관련이 깊은 전문가 집단으로는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계(헌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공법학회, 형사법학회) 그리고 사회복지학계(한국사회복지연구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군사회복지학회)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개별 학회의 협조를 얻어서 전문가 370명에게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대체복무제 검토 기준을 정리하고 복무기간, 복무영역, 심사 및 관리·감독 등의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대체복무제 검토 기준은 2장에서 검토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국내외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성, 독립성, 형평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에 예외적으로 현역복무보다 기간을 길게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복무분야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공공성의 면에서 가장 적합하여 해외에서도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분야라는 점, 국가적·사회적 필요가 반영된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는 점, 사회서비스 업무에 대한 고정된 성역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정시설 등에서 국가행정을 보조하는 업무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당시에 수행하면서 겪었던 교정업무 보조의 문제점을 답습하거나 공익근무제도가 사회복지제도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전투군복무는 징벌적인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고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합하다.

대체복무 심사 및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대체복무 지원이 군입대 전부터 전역 후 예비군훈련 단계 중 언제라도 가능해야 한다는 점, 독립된 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성과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심사에서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지키려는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대체복무 인권보호관제도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준해서 도입한다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앞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대체복무 법안을 제시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제안했다. 법안은 「병역법」 개정안과 별도로 <대체복무법>을 신설하여 대체복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규정들을 명시하였다.

제2절 전망과 과제

본 조사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이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방법을 모색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국가가 독점한 폭력에 대해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다른 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에 맞서서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여론을 해당국가에 보여줄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나치의 유대인학살, 제국 일본의 ‘위안부’ 동원,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등 반인류적인 전쟁범죄는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전쟁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오래된 처벌역사가 보여주듯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상주의적 보장이나 소수자에 대한 예외적 배려처럼 그 의미

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형평성 요구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방부에서 대체복무 분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거론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행정보조는 행정적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감옥에 가둠으로써 그들이 사회적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처음부터 박탈할 위험이 있다. 대체복무제가 병영이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사회 바깥으로 나온다면 기대해볼 수 있는 변화가 훨씬 많다.

병역거부자들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고 치매 노인들의 곁도 지킬 수 있다면 대체복무제가 우리사회를 더 안전하고 끈끈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담겨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제한하고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를 최소화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합숙과 인원제한 등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부차적인 원칙이 최우선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의 실질적 범위가 축소되고 제도 도입 취지 역시 형해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추후에 대체복무제는 사회복무제를 긍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제도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자들은 해외에서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동기부여나 적극성의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평가가 낮은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 취지가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사회복무가 현역복무에 준하는 사회적 역할을 맡아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를 초기에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을 지향하며 도입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부록

참고문헌
설문지

참고문헌

1. 단행본

- 얼 바비, 이성용 외 옮김, 사회조사방법론 - 제13판, Cengage Learning, 2013.
- 존 크레스웰, 조흥식 옮김,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3판, 학지사, 2015.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전쟁없는세상 엮음, 병역거부-변화를 위한 안내서, 경계, 2018.
- 제임스 스프레들리, 박종흠 옮김, 문화기술적 면접법, 시그마프레스, 2003.
- 홍두승, 설동훈, 사회조사분석 - 제4판, 다산출판사, 2012.
- Berger, Stefan, ed. A Companion to Nineteenth-Century Europe 1789-1914, Blackwell Publishing, 2006.
- Nussbaum, Martha C., Liberty of Conscience: In Defense of America's Tradition of Religious Equality, Basic Books, 2008.

2. 논문

- 권형진, 저항과 타협의 사이에서: 동독의 '건설병(Bausoldaten)', 역사학연구 43, 2011.김신숙·박형준,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변동과정고찰과 변화 요인분석, 국정관리연구 제11권 제3호, 2016.
- 김춘석, 공공갈등 해결의 대안적 기제로써 公論調査(Deliberative Poll),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3.
- 류지영, 양심의 자유로서의 병역거부의 불법성, 법학논문집 40(2), 2016.
- 문재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법률실무연구 5(1), 2017.박문수, 사회복무요원 배치 효과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박권구,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찬운, 양심적 병역거부-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저스티스, 2014.
- 신상준 외,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론적 검토, 서울법학, Vol.24 No.4 2017.신영철, DMZ의 세계 평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지뢰제거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 제34호, 2013.오봉욱·이전, 사회복지사의 사회복무제도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2.이영희,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와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Vol.- No.102, 2018.
- 이재승,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민주법학 20, 2001.
- , 그리스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일감법학 15, 2009.
- , 바람직한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경인문화사, 2013.

- 장영수,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1(3), 2015.
- 정대현 외,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양심적 대체복무 선택을 추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6), 2008.
- 조홍용, 적정 병력규모/국방비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1999.
- ,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정책에 관한 연구: 의무복무 개월수별 병력규모 유지 가능 연도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394), 2017.
-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그 처벌의 위헌성, 법과 政策 21(3), 2015.
- Bredow, Wilfried vo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Dissidence That Prevailed”, in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Sacred to Secular Resistance, ed. Charles C. Moskos and John Whiteclay Chambers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Kessler, Jeremy, “The Invention of a Human Right: Conscientious Objection at the United Nations, 1947-2011”,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Vol. 44, No. 3, 2013.
- Kuhlmann, Jurgens and Lippert, Ekkehae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scientious Objection as Social Welfare”, in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Sacred to Secular Resistance, ed. Charles C. Moskos and John Whiteclay Chambers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Martin, Michel L., “France: A Statute but No Objectors”, in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Sacred to Secular Resistance, ed. Charles C. Moskos and John Whiteclay Chambers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Moskos, Charles C. and Chambers, John Whiteclay, “The Secularization of Conscience”, in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Sacred to Secular Resistance, ed. Charles C. Moskos and John Whiteclay Chambers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Seegers, Annette, “South Africa: From Laager to Anti-Apartheid”, in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Sacred to Secular Resistance, ed. Charles C. Moskos and John Whiteclay Chambers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Sorensen, Henning, “Denmark: The Vanguard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Sacred to Secular Resistance, ed. Charles C. Moskos and John Whiteclay Chambers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Gleditsch, Lils and Agoy, Nils Ivar, “Norway: Toward Full Freedom of Choice?”, in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Sacred to Secular Resistance, ed. Charles C. Moskos and John Whiteclay Chambers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3. 보고서 및 기사

- 국민안전국민건강 주제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합동, 2018.1.23.
- 국방부, 병역이행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보도자료, 2007.9.18.국방부·법무부·병무청,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집, 2018.10.4.
- 김오현 외, 사회복무제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21세기군사연구소, 2011.
- 대한변호사협회, 2017 인권보고서, 2017.보건복지부, 2018 업무보고 보도자료, 2018.1.17._____,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2018.2.
-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부처합동,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8.9.12.
-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2014.12.20.
- _____,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강연 및 토론회, 2018.3.8.
- 진석용 외,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 방안 연구, 병무청, 2008.최현수·박경희, 사회복무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교육부, 2017.12.한익희 · 최현수 · 박준연 · 박일수 · 정경미 · 노수현 · 박명훈 · 최보라 · 이재현 · 금승임,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활용 적정성 평가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
- 행정안전부, 2017 재난안전통계연보, 2017.12.
- Asbjorn Eide & Charna L. C. Mubanga-Chipoya,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U.N. Doc. E/CN.4/Sub.2/1983/30/Rev.1, U.N. Sales No. E.85.XIV.1, at 1 , 1985.
- Doc 8890 revised, 'Exercise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Rapporteur: Dick Marty, Committee on Legal Affairs and Human Rights (4 May 2001) II, B [5], 2001.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EBCO Annual Repor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2017.Stolwijk, M.,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A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Quaker Council on European Affairs, Brussels, 2005.

--	--	--	--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용 >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인식 및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결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통계법 34조에 의거, 조사내용이 연구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조사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이재승(건국대 법학과 교수)

담당자 연락처 : 이용석(공동연구원,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조사일시 : 2018년 ____월 ____일

■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두 기입해주세요)

1. 나이 :

만____세

2. 최종학력 :

- ① 고퇴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재학 포함)
④ 대학졸(재학 포함) ⑤ 대학원 이상

3. 거주지역 :

- ① 특별시, 광역시 ② 시 ③ 군(도단위 및 광역시단위 군 모두 포함)

4. 종교 :

① 없음 ② 불교 ③ 개신교 ④ 천주교 ⑤ 기타(구체적:_____)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세요.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한 가지 항목에만 표시해주세요.

1. 당신은 군복무/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전혀 부담이 없다 ② 별로 부담이 없다 ③ 약간 부담이 된다 ④ 매우 부담이 된다

. ①, ② 선택 → 3번 문항으로 이동

. ③, ④ 선택 → 2번 문항으로 이동

2. 위 1번에서 병역 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① 경력단절 및 자기계발 제한

② 부족한 봉급 및 경제활동 제한

③ 욕설, 구타, 성폭력 같은 가혹행위

④ 권위적인 병영문화

⑤ 고된 작업과 위험한 훈련

⑥ 열악한 생활환경과 사생활 미보장

⑦ 가족 및 지인과의 단절을 포함한 통신제한

⑧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

⑨ 군대 자체에 대한 거부감

⑩ 기타 (구체적:_____)

3.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 등 군과 관련된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동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600여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③ 약간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4.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몰랐다 ② 잘 몰랐다 ③ 조금 안다 ④ 매우 잘 안다

5. 대체복무제란 종교적·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군 복무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강하다

6.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대체복무 지원자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군복무자에 대한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군이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군복무자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별로 아니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7.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염려되는 점이 없음
②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대체복무가 또 다른 처벌로 작용할 수 있음
③ 젊은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음
④ 군복무자가 줄어들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⑤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음
⑥ 군복무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
⑦ 기타(구체적:_____)

8. 대체복무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
②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③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강도
④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

- ⑤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
- ⑥ 군복무자의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병행 추진
- ⑦ 기타(구체적:_____)

9. 대체복무 신청은 언제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
- ② 입대 후 복무 1/3 시점까지
- ③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
- ④ 기타(_____)

10. 대체복무 지원자를 심사하는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합리적인 범위에서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이 길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
- ② 신청서 심사 (예 : 병역거부 사유서 등)
-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예 : 종교단체 또는 평화단체 가입증명서, 보증인 제도 등)
- ④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
- ⑤ 기타(구체적:_____)

11.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예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등)
- ② 복무분야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부처(예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 ③ 심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
- ④ 제도설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
- ⑤ 기타(구체적:_____)

12.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3가지 선택해서 표시해주세요.)

-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
-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정치학·사회학·심리학·역사학·철학·법학 등을 전공한 학계 전문가
- ③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체복무기관 관계자
- ④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 ⑤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대체복무제 관련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 ⑥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계자
- ⑦ 기타 (구체적:_____)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 ①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구호·대응 지원
- ②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예방활동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소독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 ③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내 학습활동, 이동, 취식 등 활동 지원
- ④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활센터,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
- ⑤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 ⑥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지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업무
- ⑦ 산림방재, 대기, 하천, 해양 오염방지 등 환경정화 및 보호, 감시업무 지원
- ⑧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 ⑨ 기타(구체적:_____)

14. 대체복무에 적합한 복무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합숙 복무
- ② 출퇴근 복무
- ③ 배치된 기관의 필요 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숙 또는 출퇴근 복무
- ④ 기타(-----)

15.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안에 따라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병역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①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 ②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 ③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 ④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 ⑤ 기타(-----)

16.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 ②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 ③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 ④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 ⑤ 기타(-----)

17. 위 15, 16번에서 육군 병사보다 긴 기간을 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 다 ①번을 선택한 경우는 18번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 ① 군복무에 비해 국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이므로
- ② 군복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③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므로
- ④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 ⑤ 대체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위한 기간 고려

⑥ 기타(구체적:_____)

18. 군복무자는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수행한 사람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비군훈련까지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설계

②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 수행

③ 민방위로 편입

④ 기타(구체적:_____)

19. 이상의 질문내용 외에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필요하거나 건의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생활을 살펴보고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결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통계법 34조에 의거, 조사내용이 연구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조사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이재승(건국대 법학과 교수)

담당자 연락처 : 이용석(공동연구원,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조사일시 : 2018년 ____월 ____일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두 기입해주세요)

1. 나이 :

만____세 (____년생)

2. 최종학력 :

- ① 고퇴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재학 포함)
④ 대학졸(재학 포함) ⑤ 대학원 이상

3. 거주지역 :

- ① 특별시, 광역시 ② 시 ③ 군(도단위 및 광역시단위 군 모두 포함)

4. 종교 :

① 없음 ② 불교 ③ 개신교 ④ 천주교 ⑤ 기타(구체적:_____)

■ 양심적 병역거부와 수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 종교적 사유 ② 정치적 이념 ③ 개인적 신념 ④ 기타
(_____)

2.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① 입영통지서의 소집 연월 : _____년 _____월

② 구속 연월 : _____년 _____월

③ 석방 연월 : _____년 _____월

3. 수감생활을 했던 교정시설은 어디였나요?

(가장 오래 머문 시설을 기준으로 구치소나 교도소 중 하나만 선택해서 답변해주세요. 현재 시설 명칭이 변경됐다면 수감 당시의 기관명을 적어주세요.)

① _____ 구치소

② _____ 교도소

4. 수감됐던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얼마나 됐나요?

(가장 인원이 많았던 시기를 기준 삼아서 대략적인 수치를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① _____ 명

5. 수감 중에는 어느 부서에서 일을 했나요?

(가장 길게 출역했던 작업장을 하나만 선택해서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수감시설의 작업장 분류가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업무 성격상 가장 유사한 것으로 선택해주세요.)

① 보안과	② 사회복지과(구 교무과)	③ 영치	④ 의무과(간병)
⑤ 직원 이발	⑥ 재소자 이발	⑦ 구매	⑧ 취사장
⑨ 사동 청소(소지)	⑩ 미화(내.외부청소)	⑪ 세탁	⑫ 원예

⑬ 시설 관리(영선)	⑭ 일반 공장	⑮ 직업훈련소
⑯	기	타 (구체적:_____)
⑰ 출역하지 않음(사유:_____)		

. ①~⑭ : 6번 문항으로 이동

. ⑮~⑰ : 8번 문항으로 이동

6. 위 5번에서 선택한 작업장의 업무는 수행하기에 적합한 성격의 것이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잘 맞지 않았다 ③ 할 만 했다 ④ 매우 잘 맞았다

7. 위 5번에서 선택한 작업장에 출역하면서 힘들었다면 어떤 요인들이 있었나요?

(가장 문제라고 느꼈던 3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힘든 점이 없었다면 보기 ⑪번을 선택해주세요.)

① 고된 작업과 열악한 환경
② 규정과 무관한/어긋나는 작업 수행
③ 종교적·개인적 신념에 위배되는 작업 수행
④ 작업장 내 인간관계
⑤ 다른 수용자의 욕설, 구타, 성폭력 등의 가혹행위
⑥ 다른 수용자의 차별과 무시
⑦ 교도관의 욕설, 구타, 성폭력 등의 가혹행위
⑧ 교도관의 차별과 무시
⑨ 출역 자체에 대한 거부감
⑩ 기 타 (구체적:_____)
⑪ 힘든 점 없음

■ 대체복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8. 대체복무제란 종교적·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군 복무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수감될 시기에 대체복무제가 있었다면 신청했을까요?

① 전혀 아니다 ② 별로 아니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9.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대체복무 지원자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군복무자에 대한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군이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

다. 대체복무제가 군복무자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별로 아니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0.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염려되는 점이 없음
②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대체복무가 또 다른 처벌로 작용할 수 있음
③ 젊은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음
④ 군복무자가 줄어들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⑤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음
⑥ 군복무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
⑦ 기타(구체적:_____)

11. 대체복무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
②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③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강도
④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
⑤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
⑥ 군복무자의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병행 추진
⑦ 기타(구체적:_____)

12. 대체복무 신청은 언제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
② 입대 후 복무 1/3 시점까지
③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
④ 기타(_____)

13. 대체복무 지원자를 심사하는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합리적인 범위에서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이 길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

- ② 신청서 심사 (예 : 병역거부 사유서 등)
-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예 : 종교단체 또는 평화단체 가입증명서, 보증인 제도 등)
- ④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
- ⑤ 기타(구체적:_____)

14.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예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등)
- ② 복무분야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부처(예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 ③ 심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
- ④ 제도설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
- ⑤ 기타(구체적:_____)

15.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3가지 선택해서 표시해주세요.)

-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
-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정치학·사회학·심리학·역사학·철학·법학 등을 전공한 학계 전문가
- ③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체복무기관 관계자
- ④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 ⑤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대체복무제 관련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 ⑥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계자
- ⑦ 기 타 (구체적:_____)

16.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 ①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구호·대응 지원
- ②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예방활동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소독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 ③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내 학습활동, 이동, 취식 등 활동 지원
- ④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활센터,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
- ⑤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 ⑥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지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업무
- ⑦ 산림방재, 대기, 하천, 해양 오염방지 등 환경정화 및 보호, 감시업무 지원
- ⑧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 ⑨ 기타(구체적:_____)

17. 대체복무에 적합한 복무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합숙 복무
- ② 출퇴근 복무
- ③ 배치된 기관의 필요 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숙 또는 출퇴근 복무
- ④ 기타(_____)

18.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안에 따라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병역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①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 ②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 ③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 ④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 ⑤ 기타(_____)

19.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 ②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 ③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 ④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 ⑤ 기타(-----)

20. 위 18, 19번에서 육군 병사보다 긴 기간을 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 다 ①번을 선택한 경우는 21번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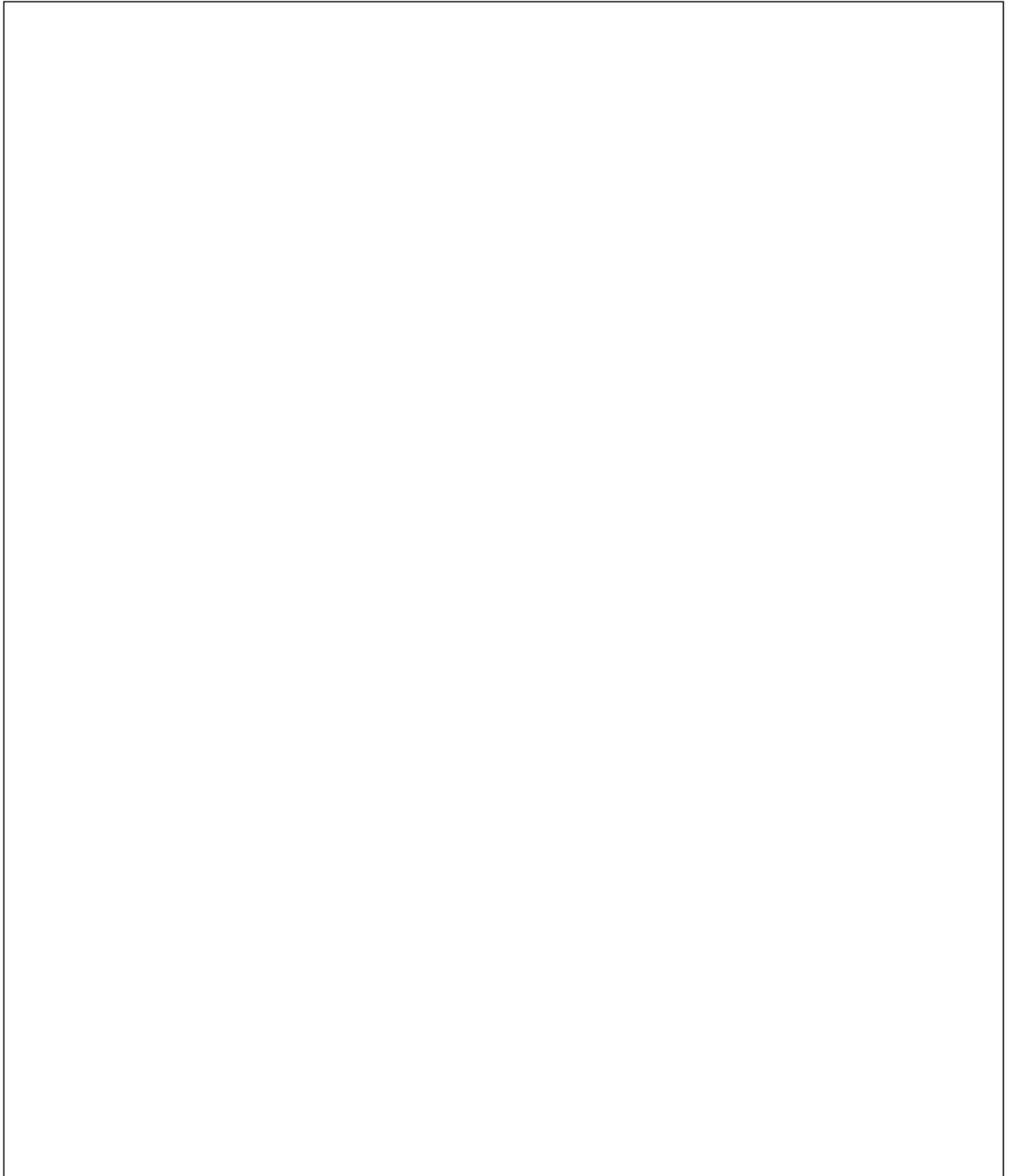
- ① 군복무에 비해 국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이므로
- ② 군복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③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므로
- ④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 ⑤ 대체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위한 기간 고려
- ⑥ 기타(구체적:-----)

21. 군복무자는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수행한 사람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비군훈련까지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설계
- ②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 수행
- ③ 민방위로 편입
- ④ 기타(구체적:-----)

22. 이상의 질문내용 외에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필요하거나 건의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전문가 대상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결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통계법 34조에 의거, 조사내용이 연구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조사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이재승(건국대 법학과 교수)

담당자 연락처 : 이용석(공동연구원,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조사일시 : 2018년 ____월 ____일

■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두 기입해주세요)

1. 나이 :

만____세 (____년생)

2.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_____)

3. 종교 :

① 없음 ② 불교 ③ 개신교 ④ 천주교 ⑤ 기타(구체적:_____)

4. 학위 : (학계 전문가만 해당)

① 박사 ② 박사과정 ③ 석사 ④ 석사과정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세요.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한 가지 항목에만 표시해주세요.

1. 군복무가 입대자들에게 부담이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 ① 경력단절 및 자기계발 제한
- ② 부족한 봉급 및 경제활동 제한
- ③ 욕설, 구타, 성폭력 같은 가혹행위
- ④ 권위적인 병영문화
- ⑤ 고된 작업과 위험한 훈련
- ⑥ 열악한 생활환경과 사생활 미보장
- ⑦ 가족 및 지인과의 단절을 포함한 통신제한
- ⑧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
- ⑨ 군대 자체에 대한 거부감
- ⑩ 기타 (구체적:_____)

2.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 등 군과 관련된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동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600여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③ 약간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3.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몰랐다 ② 잘 몰랐다 ③ 조금 안다 ④ 매우 잘 안다

4. 대체복무제란 종교적·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군 복무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지원자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군복무자에 대한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군이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군복무자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별로 아니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5.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염려되는 점이 없음
②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대체복무가 또 다른 처벌로 작용할 수 있음
③ 젊은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음
④ 군복무자가 줄어들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⑤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음
⑥ 군복무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

⑦ 기타(구체적:_____)

6. 대체복무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
②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③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강도
④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
⑤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
⑥ 군복무자의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병행 추진

⑦ 기타(구체적:_____)

7. 대체복무 신청은 언제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
- ② 입대 후 복무 1/3 시점까지
- ③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
- ④ 기타(-----)

8. 대체복무 지원자를 심사하는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합리적인 범위에서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이 길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
- ② 신청서 심사 (예 : 병역거부 사유서 등)
-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예 : 종교단체 또는 평화단체 가입증명서, 보증인 제도 등)
- ④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
- ⑤ 기타(구체적:-----)

9.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예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등)
- ② 복무분야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부처(예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 ③ 심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
- ④ 제도설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
- ⑤ 기타(구체적:-----)

10.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3가지 선택해서 표시해주세요.)

-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
-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정치학·사회학·심리학·역사학·철학·법

학 등을 전공한 학계 전문가

③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체복무기관 관계자

④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⑤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대체복무제 관련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⑥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계자

⑦

기

타(구체

적:-----)

11.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①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구호·대응 지원

②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예방활동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소독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③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내 학습활동, 이동, 취식 등 활동 지원

④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활센터,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

⑤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⑥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지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업무

⑦ 산림방재, 대기, 하천, 해양 오염방지 등 환경정화 및 보호, 감시업무 지원

⑧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⑨ 기타(구체적:-----)

12. 대체복무에 적합한 복무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합숙 복무

② 출퇴근 복무

③ 배치된 기관의 필요 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숙 또는 출퇴근 복무

④ 기타(-----)

13.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안에 따라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병역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①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 ②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 ③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 ④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 ⑤ 기타(-----)

14.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 ②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 ③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 ④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36개월=3년)
- ⑤ 기타(-----)

15. 위 13, 14번에서 육군 병사보다 긴 기간을 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 다 ①번을 선택한 경우는 16번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 ① 군복무에 비해 국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이므로
- ② 군복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③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므로
- ④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 ⑤ 대체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위한 기간 고려
- ⑥ 기타(구체적:-----)

16. 군복무자는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수행한 사람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비군훈련까지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설계

②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 수행

③ 민방위로 편입

④ 기타(구체
적:_____)

17. 이상의 질문내용 외에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필요하거나 건의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 인쇄일 | 2018 년 10 월 15일

| 발행일 | 2018 년 10 월 15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정책과 02)2125-9824

| FAX | 02)2125-0918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작 | 미당문화인쇄 02)6014-0889

ISBN : 978-89-6114-641-8 93390 비매품